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389-10

www.kipo.go.kr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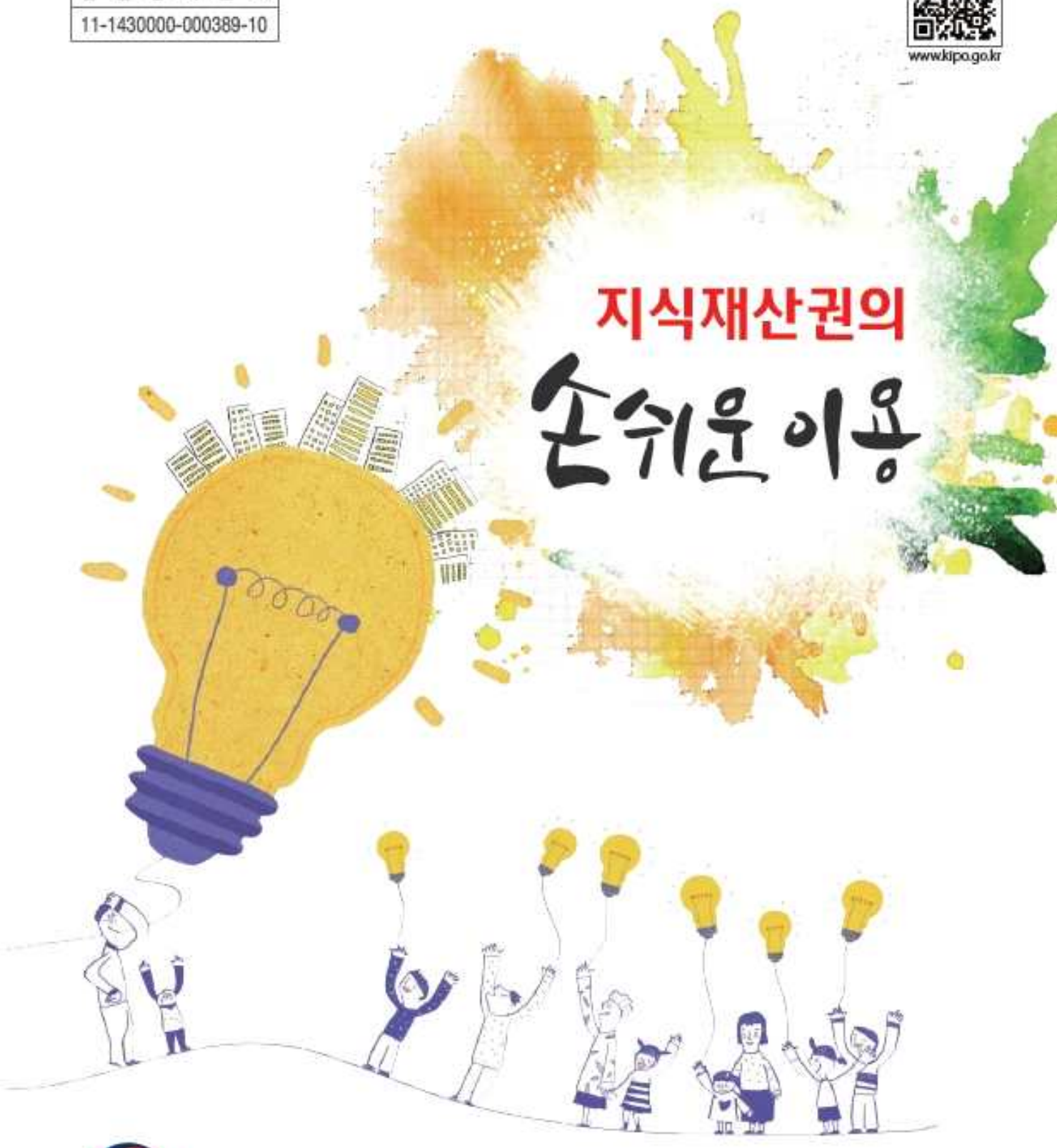

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이 책은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활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contents 목 차

제1장 기초다지기	7	
Ⅰ. 지식재산권의 기초	10	0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2	Tip. 상표의 구분
	14	02. 우리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	01.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23	02.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25	03. 새롭게 시행되는 국선대리인 제도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26	
Ⅰ.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29	01. 선행기술 정보란?
	30	02. 정보 요청 및 검색은 이곳에서
	32	03. 특허정보 보급·활용 안내
Ⅱ. 출원 따라하기	35	01.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하기
	39	02.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41	03.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42	04. 분할출원·변경출원 및 출원 보정
	45	05. 특허·상표·디자인의 국제출원
	66	06. 출원 관련 문의
Ⅲ. 심사 알아보기	69	01.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75	02. 상표 심사 절차 및 제도
	79	03. 디자인 심사 절차 및 특유의 제도
	83	04. 맞춤형 심사제도
Ⅳ. 등록 신청하기	89	01.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90	02. 기본 등록 신청
	94	03. 변동 등록 신청
	99	04. 등록보정제도
	101	05. 등록 관련 문의
Ⅴ. 심판절차 밟기	103	Tip. 특허분쟁의 첫걸음, 경고장 바로알기
	103	특허(상표)침해분쟁 바로알기
	104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기본 판단법
	105	01. 특허심판이란?
	106	02. 특허심판의 종류
	108	03. 특허심판 이용안내
	112	04.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113	05. 특허심판 기간연장 관련 절차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26

Ⅵ. 수수료 납부하기

116 01. 수수료 일람표
119 02. 기타 출원 관련 수수료
122 03. 기타 등록 관련 수수료
123 04. 기타 심판 관련 수수료
124 05. 각종 서류의 등·초본 발급신청료 등
125 06. PCT 국제출원 수수료
126 07.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127 08.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등
128 09. 출원료 등의 감면안내
138 10.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139 11.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141 12. 지식재산포인트 제도

제3장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144

Ⅰ. 지식재산고객 서비스 업무

147 01. 특허청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운영
148 02.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Ⅱ.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지원 사업

151 01. 지식재산 창출 지원
151 1.1. IP(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
152 1.2. IP(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153 1.3.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154 1.4. 지재권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155 1.5. 글로벌 기술혁신 IP(지식재산) 전략개발
156 1.6. 생활발명코리아
157 1.7.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서비스

159 02.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역량강화
159 2.1.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지원
160 2.2.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161 2.3.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162 2.4.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Ⅲ.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사업

164 01. 지식재산 금융 지원
164 1.1. IP(지식재산) 담보대출 회수지원
165 1.2. IP(지식재산) 금융 연계 평가지원

166 02.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166 2.1. IP(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167 2.2. IP(지식재산) 거래지원

contents 목 차

제3장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144

Ⅳ.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지원 사업

169 01. 국내 지원 사업
169 1.1.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170 1.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171 02. 해외 지원 사업
171 2.1.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172 2.2.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173 2.3.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 붙임 >

175 01. 자주 문의하는 서식 리스트 및 작성예제
188 0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195 03. 특허청 지원기관 현황
197 04.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198 05. 주요 국가 특허청 인터넷 주소
199 06.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201 07.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202 08. 지원시책별 문의전화 안내 일람표
209 09. 출원·등록·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01

기초다지기

Ⅰ. 지식재산권의 기초 9
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9

본 책자는 무료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01

기초다지기

Ⅰ. 지식재산권의 기초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0

Tip. 상표의 구분 12

2. 우리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14

01 지식재산권의 기초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 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 정보 ·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

"지식재산권" 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지식 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저 작 권	저작권 /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 산업저작권 / 정보재산권 / 기타

》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가능

특허분쟁의 예방 및 권리보호

자신의 발명 및 개별기술을 적시에 출원하여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 가능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

》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함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정 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사 례 (전화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전화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상호·마크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 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구법 적용 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특허 원천, 핵심기술	실용신안 Lif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디자인 물품의 외관	상표 상품의 명칭
엔진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도어 의자높낮이 조절장치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자동차명칭 (제네시스, 그랜저 등) 제작사 명칭 (현대, 도요타 등)

Tip

》 상표의 구분

구분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
정의	자기의 상품(서비스를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동종업자의 법인이 단체 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이 특정한 품질 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	국내에서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사례	CJ	남해죽방멸치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1 세계일류상품	BAEKJE
등록번호	40-0605404	44-0000033	47-0000011	42-0003607
권리자	씨제이 주식회사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출원번호 예시** 40-2016-0000150
  - 40 ▼ 권리
  - 2016 ▼ 연도
  - 0000150 ▼ 일련번호

- **등록번호 예시** 40-0256534-00-00
  - 40 ▼ 권리
  - 0256534 ▼ 일련번호
  - 00 ▼ 구분
  - 00 ▼ 구분

》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 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함.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구 분	저 작 권	저 작 인 접 권
정의	·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예시	·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등	·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
보호기간	·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 해부터 70년간 ·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 실연의 경우의 그 실연을 할 때부터 70년간 · 음반의 경우에는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70년간 ·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부터 70년간

》 신지식재산권이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의미함

02 지식재산권의 기초
우리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1. 선출원주의

①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부여해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 선발명주의 : 먼저 발명한 자에게 부여

② 시기적 기준(日기준)

- 다른 일자 출원 :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같은 일자 출원 : 협의
  (협의 불성립 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특허법 제36조제2항)

③ 주체의 동일성

- 타인 간은 물론 동일인 간에도 적용

2. 제출 서류의 효력 발생 시기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가에 관해 도달주의와 발신주의가 있음

① 원칙 : 도달주의 (특허법 제28조 제1항)

-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 등 서류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② 예외 : 발신주의 (특허법 제28조 제2항)

- 도달주의에 의할 경우 특허청과 당사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 특허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따르고 있음. 즉,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봄. 그러나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발신주의를 따르지 않고, 그 서류가 특허청에 실제로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3. 속지주의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4. 특허 결정 요건

거절 결정 — NO

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
②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
③ 새로운 발명인가 ?
④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
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⑥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⑦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특허 결정 — YES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특허법 제32조)
-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특허법 제41조)

▣ 신규성

① 신규성이란?

특허 요건 중 하나로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

②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 : 특허출원 시(시 · 분 · 초)
- 지역
  - 공지 및 공연 실시 : 국제주의(2006. 9. 30. 이전 출원은 국내주의)
  -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국제주의

③ 신규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과 동일한지 여부

종래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④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예외)

-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대 상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해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

2006. 3. 2. 이전 출원	2006. 3. 3. 이후 출원
공지예외 대상을 1) 발명의 시험 2) 간행물에의 발표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4)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으로 발표 5)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디자인은 대상에 제한이 없음)로 제한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
    : 출원일과 무관하게 모두 공지예외 대상에 포함됨
- 요 건(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
  - 공지일로부터 12개월('12. 3. 15. 이후 출원. 단, '12. 3. 14. 이전 출원은 6개월) 이내 출원
  -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 취지 기재
  -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출원 시에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정기간 또는 설정등록 이전의 기간에 공지예외 주장을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15. 7. 29.부터 시행)

▣ 진보성

① 진보성이란?

- 특허 요건 중 하나로서, 종래발명에 비해 진보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

② 진보성 판단기준

- 시기, 지역 : 신규성 판단기준과 동일

③ 진보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으로부터 해당 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산업상 이용가능성

① 의의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나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

②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의료행위
-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영구기관 등)

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01

기초다지기

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20

2.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23

3. 새롭게 시행되는 국선대리인 제도 25

01 알아보면 유익한 정보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1. 포괄위임등록(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함
  * 특허로>오른쪽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
-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 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 효과

2. 직무발명

- 의의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함
- 보상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3. 이용발명

- 의의 :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하여 새로운 특허(A+a)를 받았더라도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함
- 효과 : 선 특허권자는 후 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 특허권자는 선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만 후등록 특허(A+a)를 실시할 수 있음

4. 컴퓨터 S/W 보호

▣ 컴퓨터 S/W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 저작권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
-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 방지에 효과적이나 S/W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S/W 기술은 보호 불가능

▣ 컴퓨터 S/W의 「특허」에 의한 보호

- S/W에 사용되는 기술(예 : 인터넷상 동영상기술 , 데이터압축 기술 등)은 다른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단, 하드웨어와 결합되어야 함)
- 특허에 의한 보호는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강력한 권리보호 가능

▣ 영업방법(BM) 관련 발명

-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말함

5.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 정의 :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 보호법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권리의 발생 및 효력 :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 등록을 신청하면, 특허청은 등록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 후 설정 등록함
  - 배치설계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에 위배되거나 창작성이 결여된 경우에 권리의 등록이 취소됨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함

6.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 보호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안 때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 가능.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 등록된 이후에 행사 가능

▣ 특허권(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 형사상 보호(특허침해죄)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

※ 특허권 등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 없이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7. 저촉관계

▣ 관련 법령

-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음

▣ 저촉관계의 유형

(1) 특허권과 디자인권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보호객체가 상이하여 선원주의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호 권리 간에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선출원 디자인권의 창작의 대상이 일정한 형상, 모양을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와 후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구성을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 양자는 상호 저촉관계에 해당함

(2) 특허권과 상표권

물품자체의 형상을 표시하는 입체상표가 상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물품의 형상에 관한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특허권과 상표권의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02 알아보면 유익한 정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1.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완화(2019. 10. 24. 시행)

▣ 도입 배경

- 이전에는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보니 소재불명, 이민, 파산 등으로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갱신을 원하는 상표권자는 별도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었음
- 만약 제3자가 먼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었고, 상표권이 소멸되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개정 내용

- 상표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갱신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음

2.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신속 심사 처리(2020. 1. 1. 시행)

▣ 도입 배경

- 특허청에서는 '98년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제도를 운영하여 디자인의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디자인등록 가능한 31개의 물품 종류 가운데 총3개류 ≪의류, 직물지, 문구류≫ 출원에 적용하며 선행디자인 조사 없이 출원의 방식사항과 창작성에 대한 심사만 실시

-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의 통지는 출원일로부터 60일('19.10월 기준) 수준으로 심사등록출원과 비교시 상당히 빠른 편임에도 패스트 패션의 유행과 같이 제품주기가 더욱 짧아지는 업계의 현실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 추진 내용

- 우선권 주장, 신규성상실예외주장 등의 신청이 없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방식상의 하자가 없는 일부심사등록출원건에 대해서는 10일 이내(기존 60일)로 1차 심사 결과 통보함

3.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임시 명세서 제출 허용(2020. 3. 30. 시행)

▣ 도입 배경

- 신기술분야의 기업들은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회의 참석 중 실시간으로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등 세계적으로 원천 · 표준특허의 출원일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 국제 경쟁의 시대에 우리 기업의 신속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한 논문 · 연구노트 등을 명세서로 제출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필요

▣ 개정 내용

- 기존에는 특허 · 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했으나, '20. 3. 30. 이후 출원시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경우에는 서식에 따르지 않는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 전자출원시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PDF, JPG 등 자유로운 첨부파일 형식을 허용함(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정)

기 존	개 선
명세서 기재요건 (별지 제15호서식 제출 필수) **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생략 가능)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발명의 내용 - 해결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생략 가능)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생략 가능)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기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생략 가능)	**형식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명세서 제출 가능** (별지 제15호서식 불필요)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 **원본 그대로 제출 가능**

03

알아보면 유익한 정보

새롭게 시행되는 국선대리인 제도

1.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2019. 7. 9. 시행)

▣ 도입 배경

- 지식재산권 분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사회 · 경제적 약자에게 큰 부담이므로, 사회 · 경제적 약자가 심판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개정 내용

구 분	내 용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 사회·경제적 약자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지원대상자	•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청년 창업자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
심판수수료 감면	•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료를 무료로 감면 • 자신의 특허권 등을 정정한 경우 정정청구료를 무료로 감면

▣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특허심판원장은 사회 · 경제적 약자의 요건을 갖춘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음

※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사건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음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4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 신청 시기·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시기	• 신청인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일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신청인은 특허심판원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와 함께 자신이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
국선대리인 선임 절차	

02

출원에서 등록까지

Ⅰ.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28
Ⅱ. 출원 따라하기	34
Ⅲ. 심사 알아보기	68
Ⅳ. 등록 신청하기	88
Ⅴ. 심판절차 밟기	102
Ⅵ. 수수료 납부하기	115

본 책자는 무료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

02

출원에서 등록까지

Ⅰ.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1. 선행기술 정보란? 29
2. 정보 요청 및 검색은 이곳에서 30
3. 특허정보 보급·활용 안내 32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첫 단계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나보다 먼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권리화해 놓았는지 알아봐야겠지요!

01 출원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선행기술 정보란?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등이 게재된 정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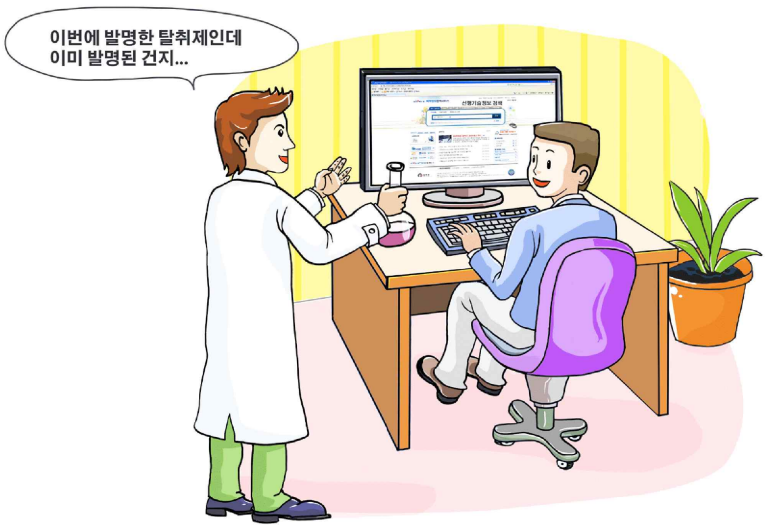

Q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의 유용성은?

A 특허정보자료를 목적에 맞게 상호 연관시켜 수집·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 권리취득 및 기업경영 등 각 단계의 의사결정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02 출원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정보 요청 및 검색은 이곳에서

1. Internet 이용 국내·외 정보 검색

▣ 특허정보넷 KIPRIS 검색서비스

2000. 1.부터 KIPRIS를 통해 국내 · 외 특허정보의 무료 제공

- 국내 :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서지와 전문
- 해외
  - 서지·전문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WIPO 특허 등 12개국(기관)
  - 서지·초록 : 대만, 스페인 등 13개국(기관)
- 특허청 행정처리정보, 등록정보 및 심판정보 조회서비스
- 해외이용자를 위한 영문홈페이지 및 검색 인터페이스
- KIPRIS 나의 관심특허 메일링서비스 및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 초보자도 쉽게 원하는 특허정보 검색이 가능한 KIPRIS 문장 검색서비스 제공
- 해외 공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한, 일→한, 한→영 및 중→한 자동번역서비스 제공

▣ 국내 검색 사이트

기 관	주 소	구분
한국특허정보원(KIPI)	http://www.kipris.or.kr	무료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http://www.ndsl.kr	
윕스(WIPS)	http://www.wipson.com	유료
위즈도메인(WISDOMAIN)	http://www.wisdomain.com	
줌테크놀러지[브랜드워치]	http://www.brandwatch.co.kr	
마크프로	http://www.markpro.co.kr	

▣ 해외 산업재산권 검색 사이트

기 관	주 소		구분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국제특허	http://patentscope.wipo.int	무료
	국제상표	http://www.wipo.int/branddb/en	
	디자인	http://www.wipo.int/designdb/en	
Cambia (Patent Lens)	https://www.lens.org/lens		
Google (Google Patents)	https://www.google.com/patents		
Questel	https://www.orbit.com/		유료
THOMSON REUTERS	http://thomsonreuters.com		
LEXISNEXIS	http://lexisnexis.com/totalpatent/		

외국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을 검색하시려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지식재산권제도 → 해외 주요사이트 → 국제 특허검색DB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요청

▣ 특허청 도서관

직접 방문과 전화에 의한 지식재산권 정보자료의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

- 특허문헌(공보 등 특허서류) 검색 및 열람, 복사서비스
  - ☎ 042)481-5347, FAX 042)472-1394
- 비특허문헌(학술지, 지식재산권 자료 등) 검색 및 열람, 복사서비스
  - ☎ 042)481-5130, FAX 042)472-3462
  -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둔산동)

  ※ 복사료 : 일반우편 1page당 100원/FAX 1page당 300원

▣ 서울사무소

- ☎ 02)568-6221, FAX 02)557-8414
- 우)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4~5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빌딩)

▣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자료열람실

▶ <붙임 03> 참고

03 출원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특허정보 보급·활용 안내

1.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특허청이 개방중인 국내외 특허정보를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Bulk Data, Open API, LO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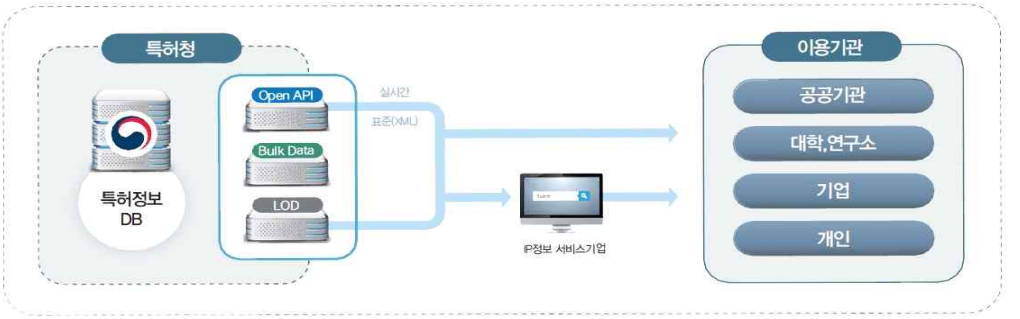

▣ 데이터 제공 방식

- Bulk Data : 특허정보를 FTP, HDD 등을 통해 대용량 파일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
- Open API : 특허청 DB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응답 받아 자체 DB구축 없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방식
- LOD(Linked Open Data) : 네트워크로 연결된 DB에서 서로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특허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는 방식

▣ 데이터 제공 범위

- 국내 공보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국내 지식재산권 공보
- 행정 정보 : 법적상태정보,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등 국내 행정정보
- 부가 정보 : 특허기술용어 번역사전, 시소러스, KPA 등 부가정보
- 해외 공보 : 미국, 일본, 유럽, 대만 등 해외 지식재산권 공보

▣ 서비스 이용 신청

- KIPRIS*Plus*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상품 리스트 열람 및 서비스 신청

2. 특허정보 활용 분야 및 체계

지식재산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금융권, IT 중소기업 등에서 IP서비스, IP거래, IP평가 분야에서 데이터 가공을 통해 연구 및 상업용으로 서비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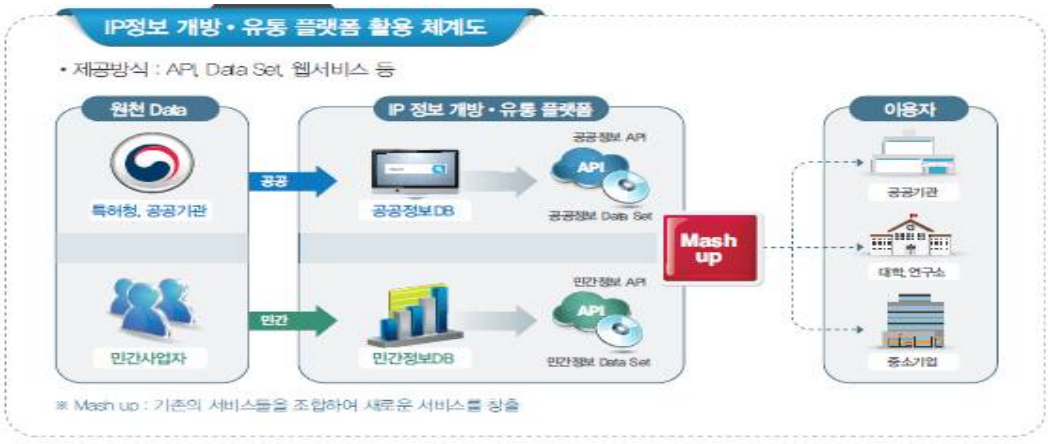

특허정보활용서비스 이용 문의

- KIPRIS*Plus* 홈페이지 : http://plus.kipris.or.kr/
- KIPRIS*Plus* 고객센터 : ☎ 02)6915-1432

02

출원에서 등록까지

Ⅱ. 출원 따라하기

1.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하기 35
2.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39
3.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41
4. 분할출원·변경출원 및 출원 보정 42
5. 특허·상표·디자인의 국제출원 45
6. 출원 관련 문의 66

01 출원 따라하기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하기

1. 온라인 출원하기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❶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 ❷ 공인인증서 사용등록 ▶ ❸ 사용자등록신청 결과조회 ▶ ❹ 전자출원SW 다운로드

①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 출원인의 고유번호로,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출원인은 사전에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온라인 특허고객번호 신청 시에는 미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의 이미지(JPG 포맷)를 준비하여 특허고객번호 신청 시 첨부해야 함
-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 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 기재 란에 반드시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여야 함(미기재시 반려)

※ 특허고객번호 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좌측 → 전자출원 시작하기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좌측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에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별지 제 4호 서식)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제출인란 작성방법

①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으로 신청

②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출원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 대한민국(소속기관장),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
④ 출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⑤ 출원인이 사립학교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학교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⑥ 출원인이 국·공립대학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시 명칭표기 방법 예시
① 중앙행정기관 : 대한민국(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대한민국(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
③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④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시·군·구) :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북도 진안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전광역시 서구[구는 자치구에 한정]
⑤ 국립대학교 : XX대학교 산학협력단(2005.7.1일부터 전담조직으로 출원)
⑥ 광역교육자치단체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교육감), 충청남도(충청남도 교육감)
* 지방자치단체법률 36조 근거 하급 교육행정기관은 법인이 아니어서 출원인 적격이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명으로 하여야 함
⑦ 국·공립 고등학교 : 대한민국(경남항공고등학교장), 충청남도(공주고등학교장)

② 공인인증서 사용등록

특허고객번호 부여가 완료된 후에는 지정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출원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특허청에 등록 후 산업재산권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PCT 국제출원은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 등록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좌측 → 전자출원 시작하기 → 인증서사용등록"에서 할 수 있음

※ 2013. 1. 1. 특허청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특허청 사설인증서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공인인증서(은행용, 전자거래범용, 특허청전용)로 단일화

※ PCT에 따른 국제출원 시 WIPO 인증서는 직접 WIPO홈페이지에서 발급 (특허청 인증서 → WIPO 인증서 변환 서비스 중지)

③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전자출원 SW 설치에서 다운로드

※ 전자출원 SW 종류
- 서식작성기, 통합서식작성기: 서식작성 SW로 출원서, 심판청구서, 보정서 등 각종 법정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통합명세서작성기 : 특허·실용신안의 명세서, 디자인 도면, 심판청구의 취지와 청구 이유, 의견 내용 등 법정서식에 첨부하는 별지 등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 전자출원 절차(특허로-출원신청-'전자출원 매뉴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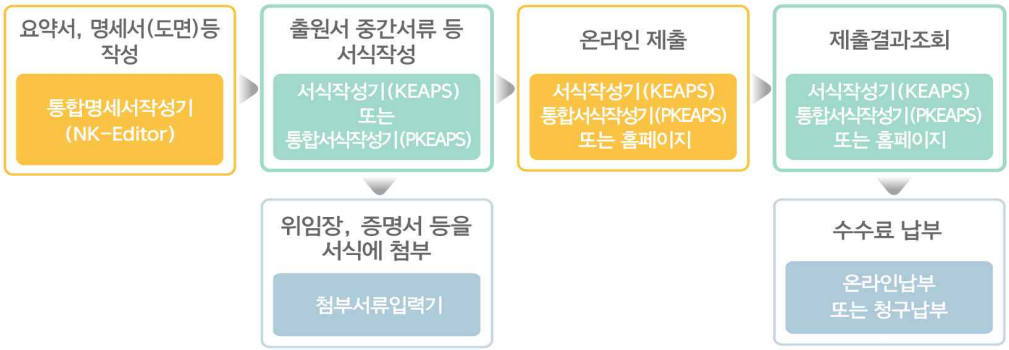

④ 서식/명세서 작성

전자출원SW를 이용하여 출원 관련 문서(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서 등)를 작성

※ 첨부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첨부서류 입력기를 이용하여 해당 문서를 스캔한 후 서식작성기에 첨부

⑤ 온라인 제출

작성된 전자문서를 특허청에 온라인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자번호), 출원번호, 심판번호 등을 부여받는 단계

⑥ 제출결과 조회

- 특허청에 제출한 문서의 처리결과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
-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행사항과 제출된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My특허로 → 제출결과조회에서 인증서를 통해 접속

서식작성기 없이 웹출원하기(Easy 출원)

서식작성SW를 사용할 필요 없이 웹에서 간편하게 출원서, 중간서류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음

※ 명세서작성기에서 작성한 명세서 파일 이외에도 상용워드(훈글, MS-Word)로 작성된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음(개인 출원인). 명세서 양식 다운로드와 자세한 설명은 특허로 페이지 'Easy 웹출원' 코너에서 확인

※ 인터넷 출원가능 시간

기 간	시 간
평 일·토요일·주중공휴일	00:00 ~ 24:00
일요일	10:00 ~ 24:00

2. 서면 출원하기(우편, 방문 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좌측 하단 → 전자출원 → 민원서식다운로드

▣ 방문 접수

- 특허청 고객지원실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층(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이후에는 특허청 당직자 또는 무인접수기('20. 9월 설치 예정)를 통해 24:00까지 제출가능
- 특허청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4~5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빌딩)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이후에는 특허청 당직자 또는 무인접수기('20. 9월 설치 예정)를 통해 24:00까지 제출가능

▣ 우편 접수

-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단, PCT,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됨(제출서류가 출원 이후에 제출하는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만 발급)
  ※ 접수된 서류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서류라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안내서를 이용하여 서류접수 다음날까지 납부
  -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출원서 등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

02 출원 따라하기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1.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발명이 물품(기계, 기구, 장치)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으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함
- 특허·실용신안에서 권리로 보호받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청구범위는 특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상표등록출원 시 기재하는 지정상품은 출원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기재해야 함.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기재할 경우, 심사 시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상표권 설정 등록 후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을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2010. 1.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디자인 업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3DM 파일을 2013년부터 추가함

※ 출원 가능한 3D 모델링 파일형식 :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3DM(3 Dimensional Modeling)

※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출원한 경우 도면(참고도 포함) 보정 시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디자인등록출원 시 화상 디자인의 움직이는 궤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참고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파일 용량이 1출원당 200MB가 넘지 않아야 함

※ 제출 가능한 동영상 파일형식 : SWF(Small Web Format),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 (Graphics Interchange Format)

※ 도면이 2D 이미지파일로 제출된 경우 동영상 파일 형식 또는 동영상 파일형식과 2D 이미지파일의 혼합으로 참고도 제출이 가능하며,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참고도 제출이 불가능함

2. 출원에 필요한 서류

<table>
<tr><th colspan="2">구분 \ 권리</th><th>특허·실용신안</th><th>디자인</th><th>상표</th></tr>
<tr><td rowspan="2">전자
문서
출원</td><td>ON-LINE</td><td>1. 출원서 :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 1통
※ 특허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도면 생략 가능하나, 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해야함</td><td>1. 출원서 : 1통

2. 도면* : 1통
※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 제출 가능
* 도면은 가로16.5cm* 세로23.7cm 초과할 수 없음
사진은 최대 가로10cm* 세로15cm이하, 최소 가로 7cm* 세로 10cm이상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td><td>1. 출원서 : 1통

2. 상표견본 : 1통(A4규격 21cm×29.7cm 이내)
※ 출원하는 상표가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2장 이상 5장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

3. 상표에 대한 설명서 : 1통
※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상표의 설명」란 기재로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td></tr>
<tr><td>FD</td><td colspan="3">• 1장과 FD 제출서를 함께 제출</td></tr>
<tr><td colspan="2">서면출원</td><td colspan="3">•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td></tr>
<tr><td colspan="2" rowspan="2">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td><td colspan="3">•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td></tr>
<tr><td colspan="2">•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td><td colspan="2">•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 출원 시)
•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1통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 출원 시)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통
(업무표장등록 출원 시)</td></tr>
</table>

※ 출원서 등 작성요령은 특허청 고객지원실, 서울사무소,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주로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좌측 하단 → 전자출원 → 민원서식다운로드
- 특허 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 예제는 '특허출원서'를 선택하신 후 '작성 예제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03 출원 따라하기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1. 출원자격

특허(실용신안)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디 자 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
상 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Q 외국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2. 출원일자

출원방법	출원일자
전자출원	'서류제출'을 클릭 후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날 ※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 바로 접수번호 창이 열리거나 특허로에서 확인 가능
직접제출	특허청 제출일
우편접수	우체국 소인일자(단, PCT, 마드리드, 헤이그 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이 출원일이 됨)

※ 산업재산권은 동일한 내용인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출원 따라하기
분할출원·변경출원 및 출원 보정

1. 분할출원(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상표법 제45조)

①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로 출원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

② 효과 :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일로 소급함

③ 기간

- 특허, 실용신안

2009. 7. 1. 이전 출원	2009. 7. 1. 이후 출원	2015. 7. 29. 등록결정 이후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단,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로 한정)		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 및 송달한 후 3개월(단, 설정등록 이전)까지
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②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①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②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③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5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와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 상표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2. 변경출원(특허법 제53조·실용신안법 제10조(2006.10.1.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하는 변경출원부터), 상표법 제44조)

① 대상 : 1) 특허와 실용신안 간

2) 상표 ·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 간

3)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가능

(단,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변경 불가)

② 효과 : 변경출원은 원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③ 기간

- 특허 · 실용신안 : 원출원이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
- 상표 :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3. 출원 보정

▣ 보정서 종류

① 제출 원인에 의한 분류

- 통지에 의한 보정 : 특허청이 보정통지를 한 사항에 대한 보정
- 자진보정 : 특허청의 보정통지와 상관없이 출원인이 스스로 명세서 등을 보정

② 제출 내용에 의한 분류

- 출원서 등 보정 : 제출한 서류의 ① 서지 부분의 정정 ②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③미납된 수수료 납부 ④ 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⑤ 상표 지정 상품 보정 등
- 명세서 등 보정 : ① 발명의 명칭 ② 요약서 ③ 명세서 ④ 청구범위 ⑤ 도면 등의 보정
- 단독디자인과 관련디자인 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 일부심사 간 상호 출원변경을 하기 위한 보정

▣ 보정서 제출시 주의점

- 명세서 등 보정과 출원서 등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보정서 사용
- 출원인 및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서명,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 신고서를 이용
- 명세서 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 서면출원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전
    : 〈식별번호〉 단위 보정은 불가능하며 [식별항목] 단위의 서면 보정만 가능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후
    :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보정 모두 가능

▣ 보정의 정도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 <붙임4>의 '2. 보정기간' 참고

〉〉〉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

■ **특허고객번호를 이중부여 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특허고객번호 정정]에 정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정정내용 증명 서류 : 사유서(양쪽 고객번호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동일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정보
  - 외국인 : 성명과 주소로 확인
  - 외국법인 : 명칭과 주소로 확인하며 대표자 정보도 동일하면 더 정확함

  ※ 양쪽 고객번호 상 정보가 다르면 출원인정보변경으로 정보를 일치시킨 후 특허고객번호 정정하는 것이 좋음

■ 설정등록 이후 하나의 특허고객번호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2008. 1. 1. 이전 등록된 건
  - 설정등록된 이후 특허고객번호 정정은 불가능

- 2008. 1. 1. 이후 등록된 건
  - 아직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신청을 하지 않은 건인 경우,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 신청시 앞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정정 가능

05 출원 따라하기
특허·상표·디자인의 국제출원

1. PCT 국제특허출원

▣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상 각국의 특허권은 서로 독립적으로 설정 등록되고, 등록된 국가에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이러한 특허독립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국제출원방법과 PCT에 따른 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됨

▣ 해외 출원 방법은?

① 전통적인 국제출원방법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함.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② PCT에 따른 출원방법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음

> **※ 특허, 실용신안에 한정**
> 발명과 고안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 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마드리드 의정서와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하여야 함

해외 직접출원과 PCT 국제출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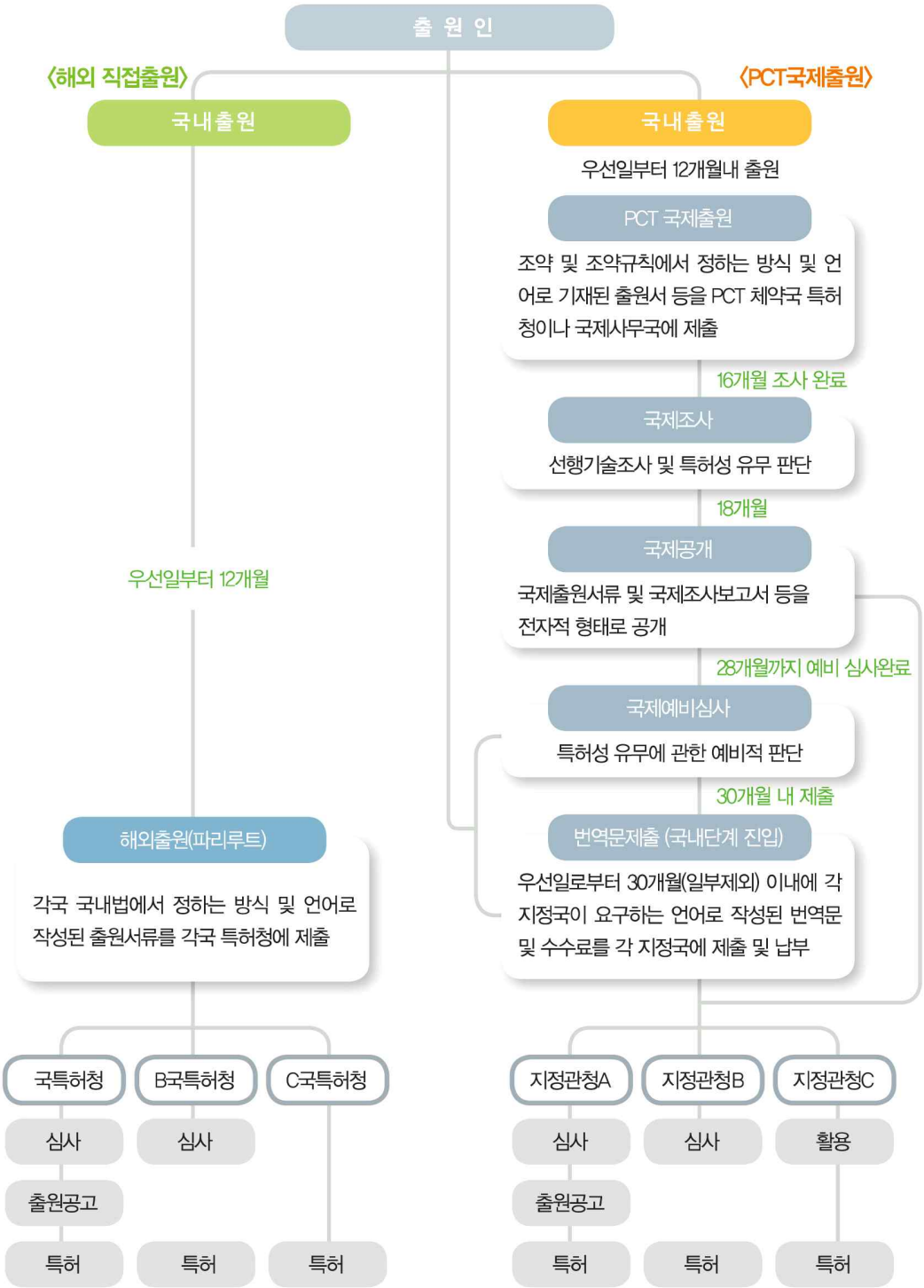

▣ PCT 국제출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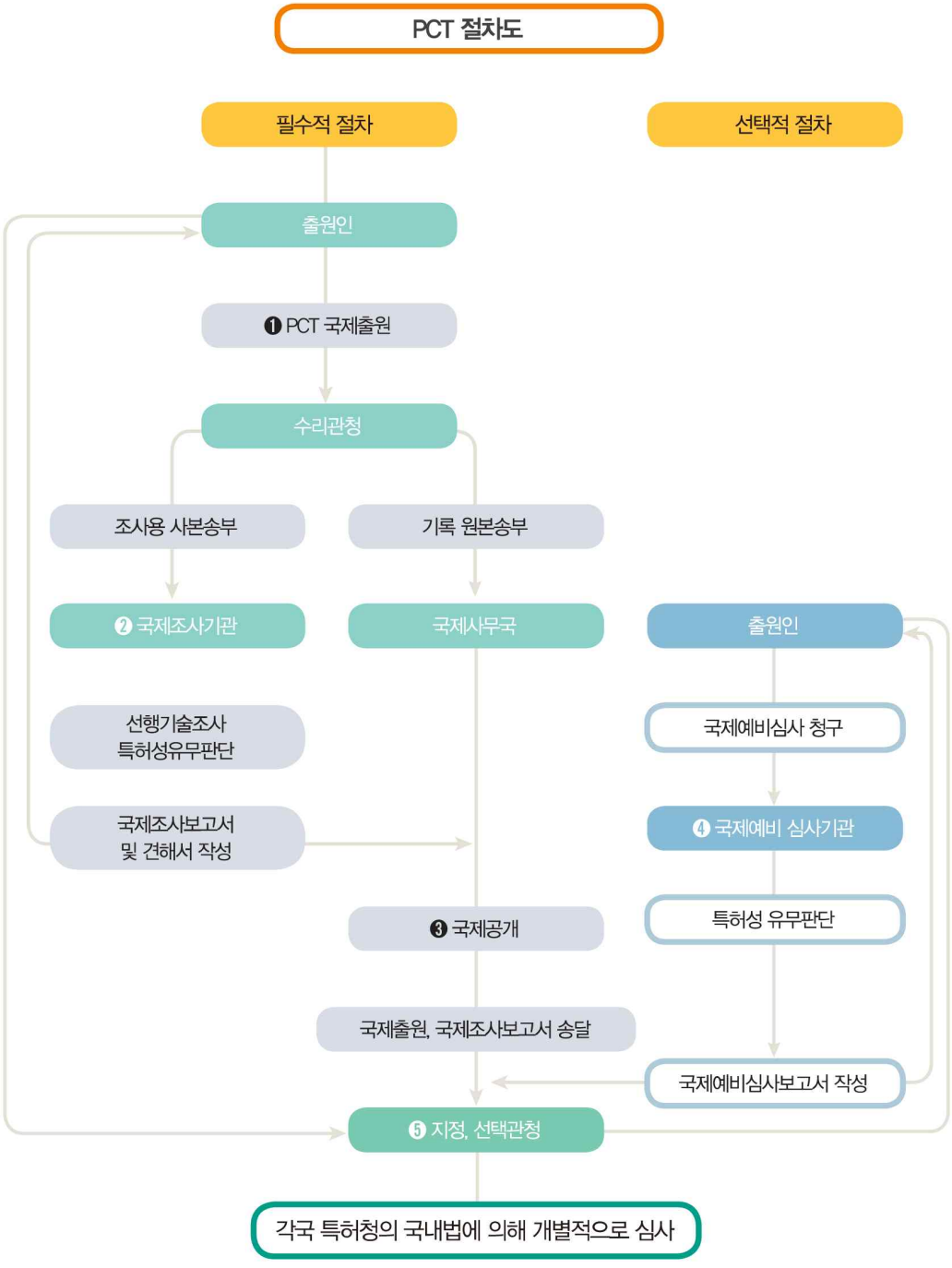
PCT 절차도
필수적 절차
선택적 절차
출원인
❶ PCT 국제출원
수리관청
조사용 사본송부
기록 원본송부
❷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출원인
선행기술조사
특허성유무판단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국제예비심사 청구
❹ 국제예비 심사기관
특허성 유무판단
❸ 국제공개
국제출원, 국제조사보고서 송달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❺ 지정, 선택관청
각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심사

① 국제출원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수리관청은 서류작성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를 함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함

-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 법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출원하는 외국인,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 국제출원서류

  i)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서열목록(필요한 경우), 수수료계산서, 위임장(필요한 경우)

    ※ 명세서도 PCT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해야 함

  -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에는 미생물 기탁증을 명세서의 일부로 작성 · 제출하여야하고, 유전공학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록한 전자매체를 함께 제출
  - 우선권증명서류 : 1부

    ※ 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거나 특허청에 송달 신청해야 함

  ii) 제출방법

  - 서면출원 : 국제출원서류 3부를 수리관청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PCT-SAFE를 이용한 전자출원

    ※ PCT-SAFE에 의한 출원서 작성 및 제출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PCT 국제출원을 통해 작성 및 제출

  - ePCT를 이용한 전자출원

    ※ e-PCT에 의한 출원서 작성 및 제출은 WIPO ePCT 웹사이트(https://pct.wipo.int/ePCT)에 접속하여 로그인, 인증, 출원서 작성, 전자서명 후 저장한 패키지파일을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에서 제출

  iii) 배부처

  - 특허청 고객지원실, 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WIPO 홈페이지(www.wipo.int/pct/en)

- 수수료 납부
  -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를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보정요구(가산료 부과)서가 발송되며, 그 보정 기간 내에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됨
- 국가지정
  - 출원서의 제출은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음. 다만,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 소위 "자기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국제조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일본어 출원에 한함)
-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판단을 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참조하여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③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출원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

- 국제공개 시기
  - 일반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 조기공개 :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
- 국제공개 형식
  -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는 안내서를 발송하며 각 지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송부
- 국제공개 언어
  -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10개의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됨

※ 2009. 1. 1.부터 기존에 한국어 출원인 경우 제출하던 국제공개용 영어번역문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④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함.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국제예비심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국제조사절차를 일본특허청에서 행한 경우에 한함)
- 국제예비심사 청구기간
  -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전(2004. 1.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개정된 조약에 의한 국내단계 진입기간(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단 우리나라는 31개월)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룩셈부르크, 우간다, 탄자니아(2016. 9. 1.))에 대하여 통상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청구 시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요약서는 해당되지 않음)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출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 착수(PCT규칙 69.1)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⑤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출원인이 국내단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정국에 대하여는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룩셈부르크는 20개월, 탄자니아는 21개월)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국내출원 절차를 밟아야 함

- 번역문 미제출의 효과
  -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PCT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 심사의 진행
  -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부여 여부를 결정

※ 각국별 국내단계 진입기한 :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체약국별 국내단계 진입기간 확인 가능
(http://www.wipo. int/pct/en/texts/time_limits.html)

>>> 국제단계(internaional phase)와 국내단계(national phase)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 절차'라 한다.

PCT 국제출원의 주요 기간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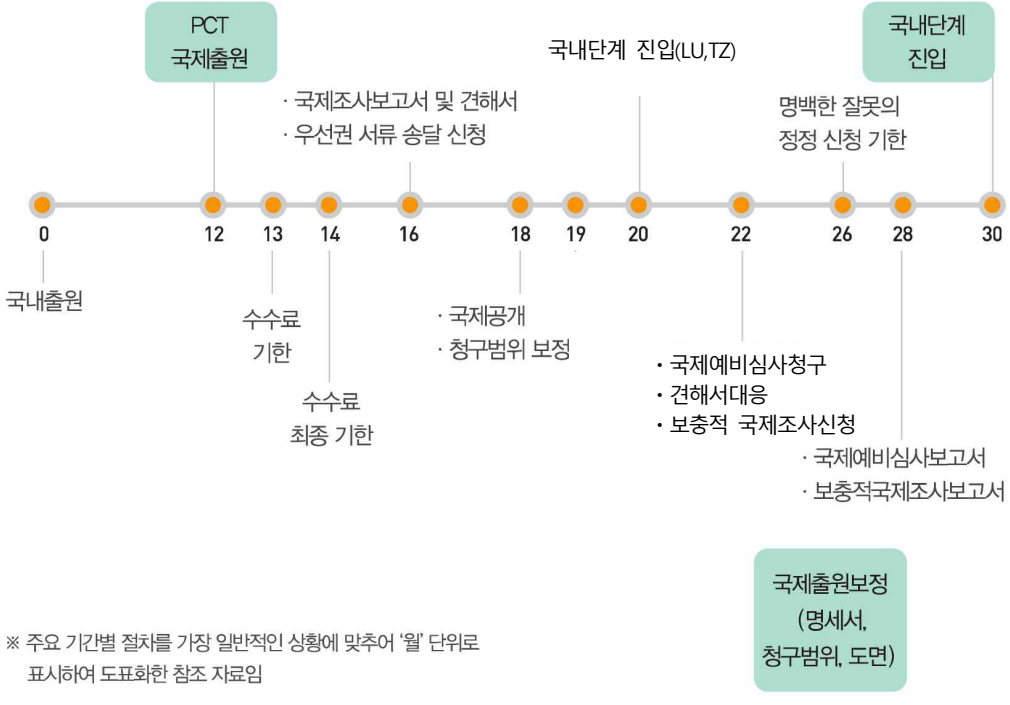

※ 주요 기간별 절차를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월' 단위로 표시하여 도표화한 참조 자료임

▣ PCT 국제출원의 장·단점

구 분		PCT 국제출원	해외 직접출원(파리루트)
PCT 장점	출원일 인정	1회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 → 간편함	개별국가마다 직접 해외출원
	특허 가능성 제고	지정국가 진입 전에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절차를 통해 특허성 유무를 사전에 판단 → 유리	개별국가의 법률이 정한 특허요건에 따라 특허성 유무를 판단
	출원서류 작성	하나의 언어(우리나라 : 국어, 영어, 일어 중 택일)로 출원서류를 제출 → 용이	개별국가가 허용한 언어로만 출원서류 작성
	무모한 해외출원 방지	지정국에 진입(우선일부터 30개월 내)하기 전에 특허 획득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하여 국내절차 진입여부를 결정 → 불필요한 비용지출 / 무모한 해외 출원 방지	개별국가로 해외출원 전에 출원인이 직접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획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수수료 감면	PCT 국제출원을 통한 국내단계 진입 시 자국의 특허 수수료를 일부 감면 → 일부 비용절감	수수료 감면은 자국 법률의 기준에 해당(중소기업, 장애인 등)하여야 하므로 외국인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음
PCT 단점	국제출원비용	PCT 국제출원 비용* 추가발생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 시에는 개별국 출원과 동일한 비용 소요) < 국제출원 비용 > * 국제출원료 + 조사료 등 : 202 ~ 278만원 * 국제단계 대리 비용 : 미정	개별국가의 출원 비용만 소요 → 비용절감(국제출원 비용 없음) ※ 국제출원단계의 비용 없음
	이중적 심사절차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은 후 국내진입 후 지정국에서 새로이 심사(2회)를 받아야 하므로 이중적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	개별국가의 심사절차만 거침(1회) → 심사절차 간편함 ※ 국제출원단계의 심사절차 없음
	기간의 엄격성	PCT 국제출원단계에서 준수기간(수수료 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길 경우 불이익 발생	개별국가 진입 후의 기간 준수의무는 PCT와 동일 ※ 국제출원단계의 절차 없음

▣ 용어해설

①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기관

②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실체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③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 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④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특허청)

⑤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⑥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지정관청 중에서 예비심사결과가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특허청

▣ 참고사항

① **도달주의 채택**

PCT 국제출원은 국내 출원과 달리 우체국 소인 확인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인정

② **지정국의 추가 또는 삭제 가능 여부**

- 지정국의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
  - 지정국의 삭제는 "지정취하서"의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04. 1. 1.이후 국제출원부터는 국제출원 시 특정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하지 않는 한 국제출원일 당시의 모든 체약국이 지정국이 되는 자동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지정국을 추가하는 제도는 폐지됨

③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을 국어로 제출한 경우 우리나라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국내단계 진입기한 이내에 출원인의 성명 ·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 주소,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특허법 제203조)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의 효과

  출원인은 일반심사에 비해 신속한 심사로 해외에서 조기에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은 외국의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심사품질 향상 및 심사 부담 경감

- 우리나라의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실시 현황

  우리나라는 14개국(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오스트리아)과 시행중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통한 우선심사

  (대상) 제1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1청 출원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을 갖고있는 제2청 출원 ⇒ 우선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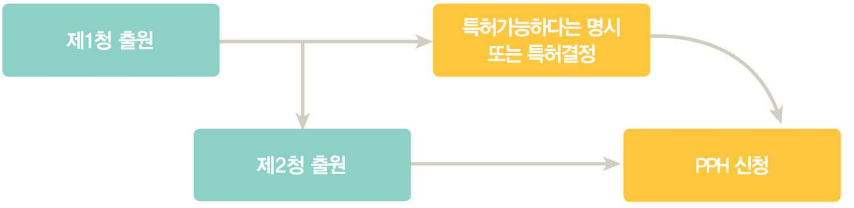

2.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그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함

▣ 외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면?

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구분하면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파리협약에 근거하여 각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임

개별국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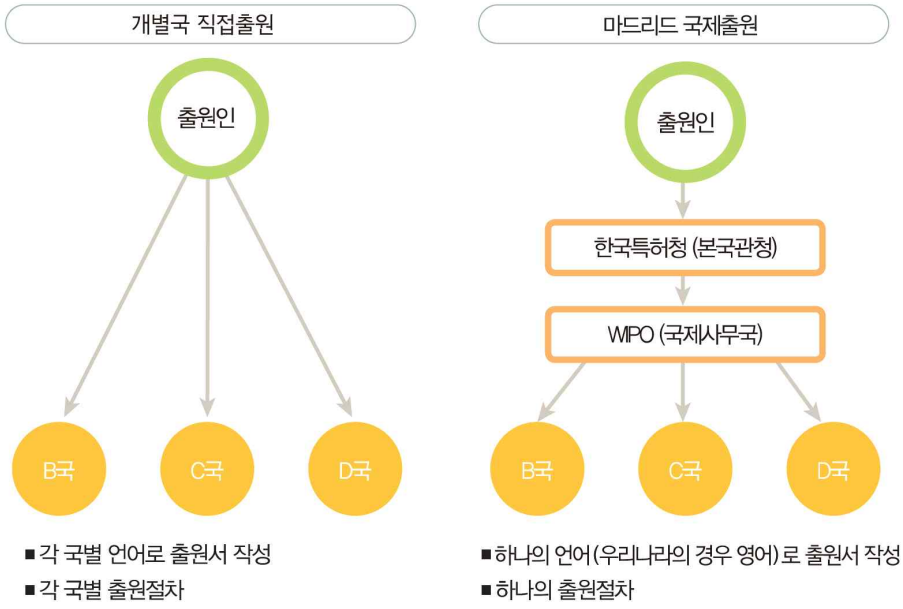

▣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및 효과

① 기초요건

i) 대상이 되는 표장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특허청(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출원상표(기초출원) 및/또는 등록상표(기초등록)의 표장과 엄격히 동일하여야 함

ii) 지정 상품(서비스)의 범위

국제출원에서 지정 가능한 상품은 기초 출원(등록)의 지정상품과 동일/또는 그 범위 이내여야 함

② 출원인(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진 자)

i)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계속 중인 자기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자기의 등록상표를 가진 자

ii)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③ 국제출원의 언어

i) 국제출원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본국관청이 정함

ii) 대한민국 특허청은 영어를 선택함

④ 국제등록

i)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이 의정서 상의 요건에 합치한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국제등록부에 등록

ii)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한 때에는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iii)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iv) 국제사무국은 당해 국제등록 사실을 지정국관청 및 본국관청에 통보하고 출원인에게 증명 서면을 송부

⑤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i)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ii) 국제사무국에 한 번의 갱신 신청으로 지정국 모두에 대하여 갱신 가능

⑥ 지정국관청 심사

지정 통지를 받은 각 지정국관청은 보호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일정기간(1년 또는 18개월)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은 그 표장을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함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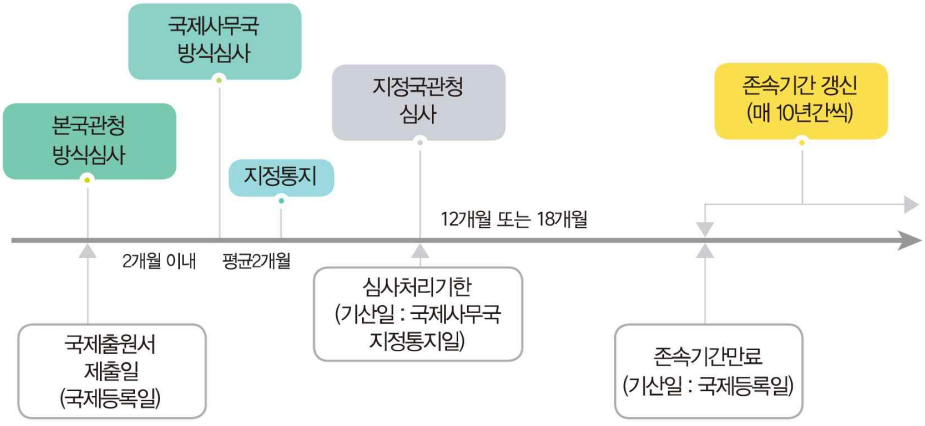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장점 및 종속성

① 장점

i) 간편한 해외상표출원 절차
본국관청(대한민국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됨

ii) 편리한 상표권 관리
각 나라마다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국제사무국에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됨

iii) 사후지정에 의한 보호 확장의 가능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최초 국제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국제출원 시에 특정 국가에 대하여 상품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국제등록의 범위 이내라면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을 사후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② 종속성

i)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거절 · 포기 · 무효 등이 된 경우(아래의 제3자에 의한 집중공격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와 기초출원인의 자진 감축 보정, 기초등록권자의 존속기간 미갱신 등 스스로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킨 경우 모두 포함)

ii) 국제출원에 의한 지정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결과로 모든 지정국에서 국제등록의 효과도 국제등록이 취소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되는 것을 말함

iii) 집중공격(Central Attack)
본국관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기초출원(등록)을 일정한 기간내에 소멸시키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상표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본국관청의 기초출원(등록)을 집중공격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면 지정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모두 무효시킬 수 있음

▣ 용어해설

① 국제상표등록출원

i)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표장(상표)을 보호(등록)받기를 원하여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출원

ii)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출원'으로 간주함

② 국제출원

좁은 의미로는 국내 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하여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기위해 각 국가를 지정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출원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국제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모두 일컬어 국제출원이라고도 함

③ 국제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

i)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출원

ii)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이 된 이후 각 지정국에 상표가 출원되었음을 통보하고 각 지정국은 이때부터 심사를 하게 되므로 각 지정국에서의 국내등록과는 구별됨

④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서는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국내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국관청에 이미 등록된 국내 등록상표가 있어야만 국제출원이 가능함. 이 때 전자를 기초출원, 후자를 기초등록이라고 하고 기초출원 및 또는 기초등록은 둘 이상일 수 있음

⑤ 본국관청(office of origin)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계속 중인 국가의 특허청

⑥ 지정국관청(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출원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 국제출원서 제출 등

①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서 제출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MM2) 1부를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 (전자출원과 서면출원 모두 가능)

※ 위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해외상표출원 > 국제출원절차 > 서식작성요령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금액을 스위스프랑으로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

▣ 체약당사자(가입국) 현황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가입국)는 2020년 9월 기준 106개(122개국)

▣ 참고자료

- 특허청 마드리드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지식재산제도 > 해외상표출원
-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 : http://www.wipo.int/madrid/en
- 국제등록부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3.wipo.int/madrid/monitor/en/
- 국 · 영문 상품명칭 검색 서비스 : 특허로 > 고객지원 > 참고자료 > 분류코드 > 상품분류코드
- NICE 분류 영문명칭 검색 : https://www.wipo.int/classifications/nice/en/
- WIPO 인정목록 검색 : https://webaccess.wipo.int/mgs/
- 국제출원 수수료 계산 : https://www.wipo.int/madrid/feescalculator/

3.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서 획득한 디자인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해도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

▣ 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①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 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함

② 정부간 기구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국가 간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진 국가인 경우 이들 기구에 출원하는 방법으로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지식재산청(EUIPO),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가 있음

③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법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정부간 기구인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로 가입함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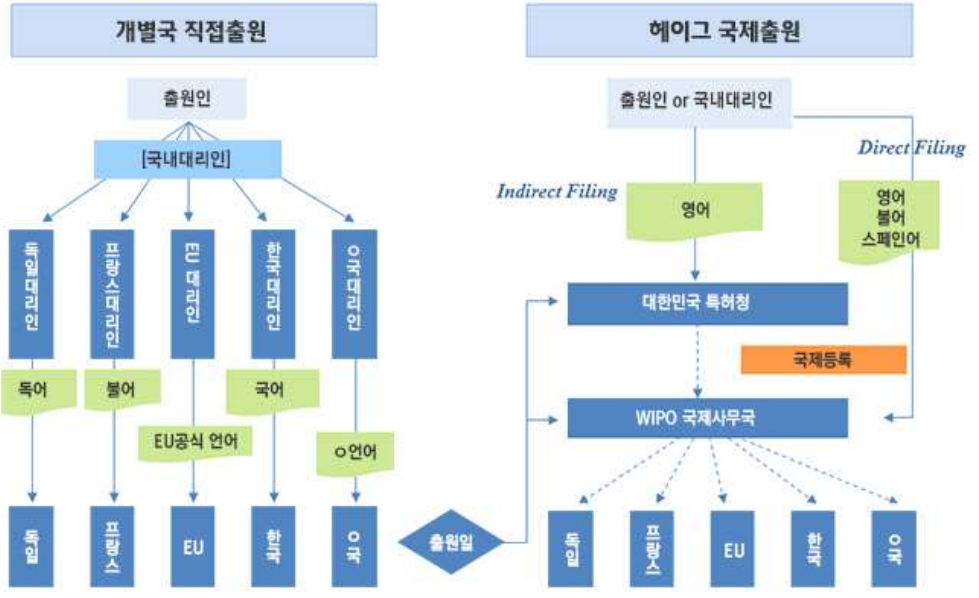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의 비교

개별국 직접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 다수의 국가에 출원서 ▪ 다수의 언어 ▪ 다수의 통화(수수료) ▪ 다수의 등록 ▪ 다수의 갱신절차 ▪ 다수의 변경등록 절차 ▪ 다수의 대리인(출원시)	▪ 하나의 출원서 (DM/1(E) 서식) ▪ 하나의 언어 (영어) ▪ 하나의 통화 (CHF) ▪ 하나의 국제등록 (국제등록부) ▪ 하나의 갱신절차 (WIPO 갱신료) ▪ 하나의 변경등록 절차 (WIPO) 이전, 성명주소변경, 감축, 포기 등 ▪ 대리인 선임 불필요 ⇒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시 필요

▣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개요

① 헤이그시스템의 이용자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협정에서는 헤이그 출원 자격을 가진다고 표현함

첫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둘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가지거나

셋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

다만, 1999년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지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이므로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이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음

② 국제출원의 언어

국제출원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출원인이 선택한 언어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를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청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출원서 등의 작성에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③ 국제출원서 제출 방법

i) WIPO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출원인이 WIPO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 WIPO에 제출할 때는 WIPO에서 제공하는 E-Hague를 이용하거나 서면출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E-Hague는 WIPO에 출원을 위한 사용자 계정을 만든 이후 사용할 수 있음

ii) 우리나라 특허청을 경유한 출원

우리나라를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를 영어로만 작성할 수 있으며 국내법에 정한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국제출원은 다음 2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

첫째, 특허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청 수수료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 등 형식 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정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국내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국제출원 수수료(기본료, 공개료, 지정수수료)는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④ WIPO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협정 등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따르고 있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등록 또는 하자통지의 대상이 되며, 국제사무국은 오직 형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신규성 또는 다른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하지 못함

⑤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형식요건을 만족하는 국제출원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공개연기가 신청된 출원이 아니라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며, 이러한 공개는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도면 등 국제등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함

⑥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i) 국제등록에 대한 심사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그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거절 여부를 WIPO에 통지할 수 있음. 다만, 관청은 국제등록의 형식요건에 관한 이유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수 없음

ii) 심사결과의 통지

일반적으로 보호거절 여부는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되어야 하나, 체약당사자 관청은 6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12개월의 거절통지기간으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각 관청의 거절통지 기간은 WIPO 홈페이지 참조)

iii) 거절통지에 대한 대응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가지고, 권리자가 거절을 다투는 경우 후속절차는 그 국내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불복청구 등은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정한 조건과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iv) 보호부여기술서(또는 등록결정서)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결과에 따라 관청은 보호가 부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WIPO에 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관청이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절통지 기간 이내에 보호거절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은 당연히 보호됨

v) 보호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함(총 15년의 보호기간)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가능하며 각 체약당사자의 최장 보호기간은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의 주요 기간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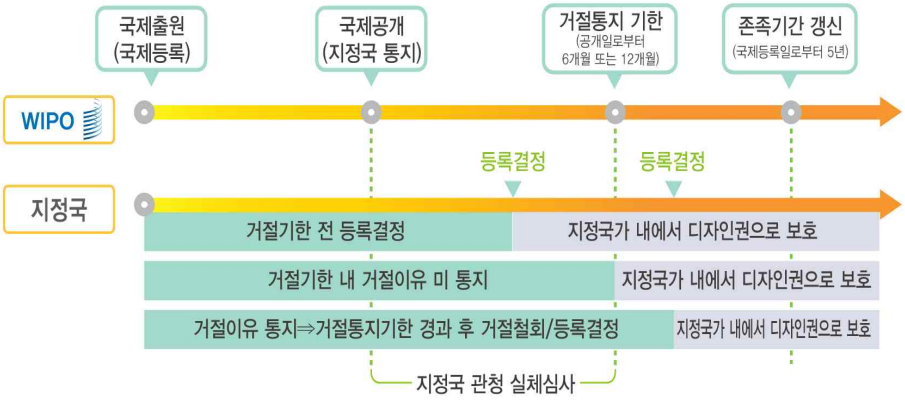

▣ 참고사항

① 국제출원의 하자

국제출원이 WIPO 접수 당시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WIPO는 하자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권고하며, 일부 하자는 국제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하자이므로 이러한 하자통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하자보정서의 제출은 WIPO에 직접 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하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수수료는 기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함

② 선언사항의 확인

헤이그시스템은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가 공개연기, 디자인의 단일성, 출원인에 대한 특별요건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선언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출원을 통하여 특정한 체약당사자를 지정하려는 출원인은 해당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을 확인하고 국제출원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별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의 내용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③ 국제등록의 변경

국제출원 이외의 소유권 변경, 권리자의 이름 및 주소 변경 등 각종 변경 신청서는 관청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고 권리자가 WIPO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④ 국제등록의 갱신

국제등록은 최초 5년간 효력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서(DM/4)를 WIPO에 직접 제출하고 갱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⑤ 체약당사자(가입국) 현황

헤이그 협정 체약당사자(가입국)는 2020년 9월 기준 74개(91개국)

▣ 용어해설

① 국제등록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실행된 디자인의 국제등록을 말하며, 국제등록이 지정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체약당사자 관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등록은 아님

② **체약당사자**

헤이그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 간 기구

③ **국제분류**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라 정해진 분류로 로카르노 분류의 최신판은 2019년 제정된 12판이며 32류, 237군, 5,219개의 물품 목록을 포함

④ **보호거절**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은 그 영역 내에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거절통지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지정관청의 심사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를 기재하여 거절을 통지하는 것을 말함

⑤ **보호부여기술서**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국제사무국에 보내는 통지서

⑥ **수리관청**

헤이그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특허청)

⑦ **지정국관청**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출원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⑧ **국제사무국**

국제등록, 국제공개 등 헤이그 절차 업무를 담당하는 WIPO의 소속 기관

▣ 헤이그 관련 사이트

- 특허청 헤이그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지식재신제도 > 해외 디자인 출원
- WIPO 헤이그 홈페이지 : http://www.wipo.int/hague/en/
- WIPO 전자출원(E-Hague) : https://www.wipo.int/hague/en/e-filing.html
- 국제 등록부 조회 : http://www.wipo.int/designdb/hague/en/
- 국제 공보 조회 : http://www.wipo.int/haguebulletin/?locale=en
- 국제출원 수수료 계산 : http://www.wipo.int/hague/en/fees/calculator.jsp
- 로카르노 분류 영문 검색 :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nivilo/locarno10/in-dex.htm?lang=EN
- 로카르노 분류 한글 검색 : http://www.kipo.go.kr/ > 지식재신제도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

06

출원 따라하기

출원 관련 문의

문의처	연락처
특허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 1544-8080
특허청 출원과 (국내출원)	☎ 042) 481-5541
특허청 국제출원과 (PCT·마드리드·헤이그)	☎ 042) 481-5208, 5206, 8552

특허청

02

출원에서 등록까지

Ⅲ. 심사 알아보기

1.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69
2. 상표 심사 절차 및 제도 75
3. 디자인 심사 절차 및 특유의 제도 79
4. 맞춤형 심사제도 83

01 심사 알아보기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1.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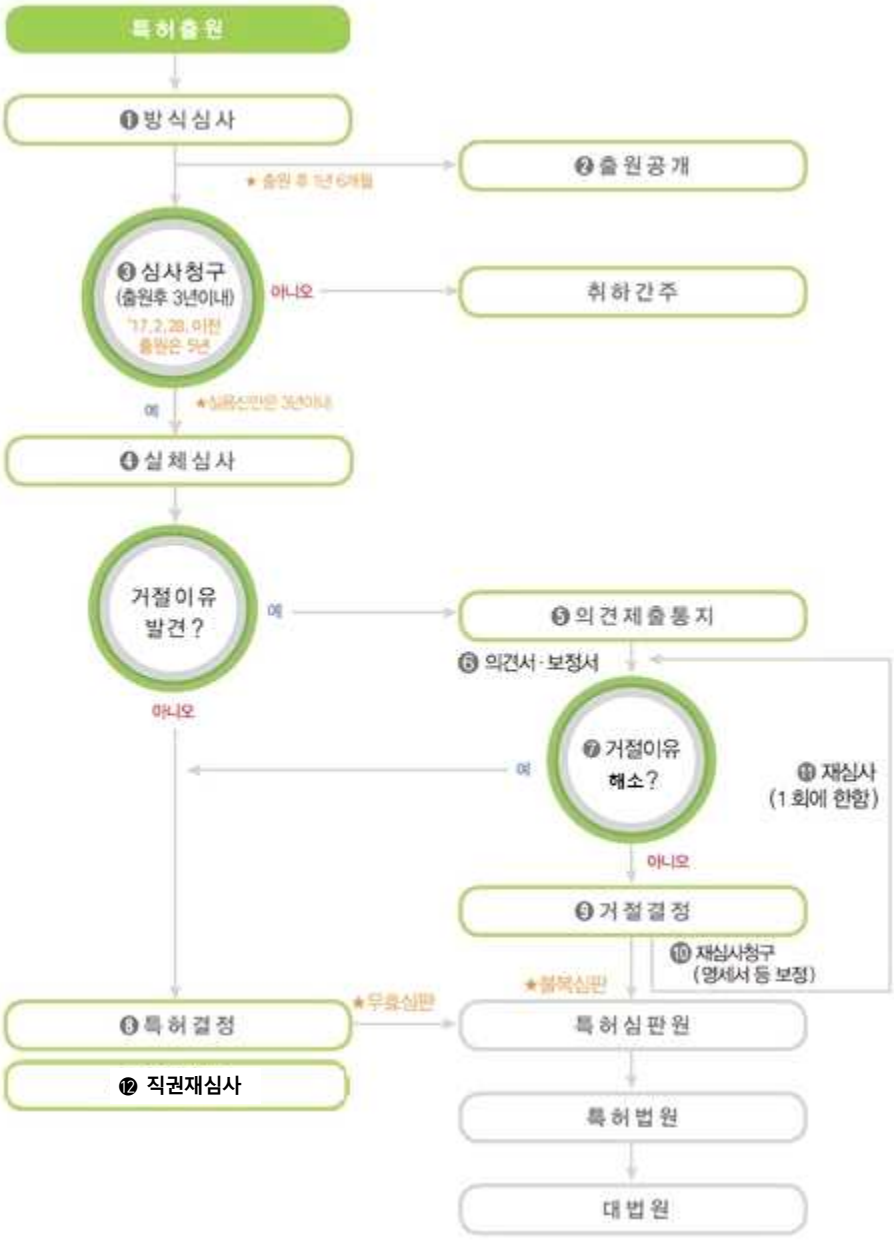

①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반려될 수 있음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월임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② 출원공개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출원을 제외하고 계속 중인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조약우선권*이나 국내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그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보에 공개됨

조약 우선권주장(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는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파리협약에 의한 동맹국, TRIPS 협정에 의한 회원국 및 양자 간 조약에 의한 조약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 우선권주장 절차
우리나라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출원 국가(제1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국내 우선권주장(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에 대하여 통상의 출원절차로 출원할 경우 자신의 선출원과 동일발명으로 거절되게 되거나 또는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이들 발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사항 추가 등에 의하여 거절결정 될 수 있음.
국내 우선권주장 제도는 이와 같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선출원일에, 추가된 발명은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출원내용을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제도

- 공개의 효과
  - 서면 경고 가능, 보상금청구권 발생
- 출원인은 출원공개(외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내 서면제출, 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제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가능
-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때부터 특허권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발생
- 다만, 보상금 청구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 가능

※ 정보 제출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 계속중이면 누구든지 해당발명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음

※ 상표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출원공고 전에도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한 경우에는 가능)

③ 심사청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심사함.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2017. 2. 28. 이전 출원은 5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

>>> 심사청구제도

- 심사청구제도는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 등이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하여만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
-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내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특 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2017. 2. 28. 이전 출원은 5년 이내)
실 용 신 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디자인·상표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④ 실체심사

심사착수는 심사청구 접수 순서대로 하며,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하는지 등을 심사함

※ 심사청구일 기준 평균 약 11.0개월 후에 심사를 실시하게 됨(2019년 평균)

⑤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

-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92.0 % 정도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등록결정률은 약 68.1%로 나타나고 있음

※ 특허, 실용신안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지정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더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⑥ 의견서/보정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

⑦ 심사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를 반영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함. 만약,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도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함

⑧ 특허결정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함.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 직권보정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직권 보정된 사항은 특허결정등본과 같이 출원인에게 통지됨. 출원인은 설정 등록을 위한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음

⑨ 거절결정

심사관은 의견서 및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함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⑩ 보정/재심사청구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날부터 30일(법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때까지)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되었거나 거절결정에 관한 불복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⑪ 재심사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전에 했던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통상의 출원심사와 같이 보정서를 반영하여 다시 시작함

>>> 재심사청구 요건

① 특허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 무효, 취하된 출원은 재심사 대상이 아님
-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단,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다시 재심사청구 시 반려함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없을 것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는 반려대상임

③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청구할 것

- 명세서 등 보정서에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짐

⑫ 직권 재심사(등록결정 단계 이후)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음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함

02 심사 알아보기
상표 심사 절차 및 제도

1.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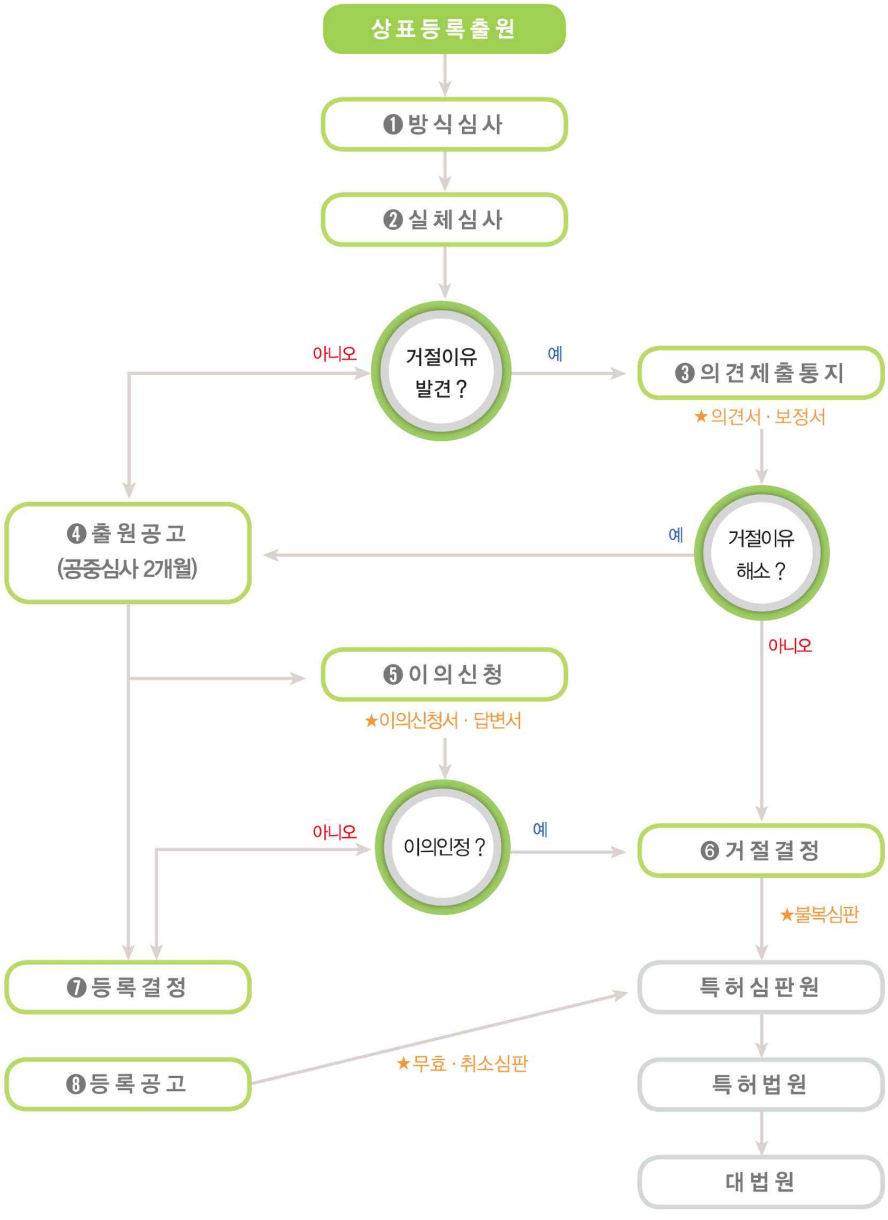

①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음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월임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② 실체심사

심사는 출원 순서대로 하며 지정상품이 속한 분류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 7.5개월이 소요(2020. 4. 기준)

※ 출원의 실제 심사 진행사항은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음

③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음

※ 상표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상표와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4회(매회 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 연장 가능(2개월씩 일괄신청 가능)

④ 출원공고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거나, 의견서 등을 통해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공고함

※ 출원공고제도는 상표법 제57조에 따라 출원상표를 최종 등록 결정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고(2개월간)하여 이의신청기회를 주는 제도임(공중심사)

⑤ 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함

⑥ 거절결정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함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음

⑦ 등록결정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함

⑧ 등록공고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이 되면 상표등록공고를 함

▣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표장이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제33조), 상표 부등록 사유(제34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식별력이 없는 상표(제33조)

구 분	사 례
보통 상표	불소치약(치약), 호두과자(과자류), 호마이카(가구류), 초코파이(과자류), JEEP(승용차) 등
관용 표장	정종(청주), ~TEX(직물류), ~깡(스낵류), NAPOLEON(코냑), NET(통신업), LON(섬유류)
성질 표시	• 산지 : 초당(두부), 금산(인삼), 이동갈비(소고기등) 등 • 품질 : SUPER, 순정 • 원재료 : SILK(블라우스) • 효능 : 강력(본드), Flex Control(전기면도기) • 용도 : KICKERS(축구화) • 기타 : 형상, 수량, 가격, 사용방법, 가공방법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	종로학원, 한강모피, 장충동왕족발, CORIAN, JAVA, 프랑세스 베이커리 등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LEE, 윤씨농방, PRESIDENT, Best Company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	3M, 9V, BETA, E- PRINT(프린팅프레스), 등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MR. 토스트, 이게 웬떡이냐, DRINK IN THE SUN, it's MAGIC 잇스매직 등

주요 상표 부등록 사유(제34조)

※ 아래는 주요 부등록 사유를 정리한 것이며, 전체 부등록 사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을 참고

- 국기 등 공공기관의 감독·증명용 인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
-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저명상품이나 저명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

2.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① 비전형상표제도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 · 동작상표, 소리 · 냄새상표 등을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② 다류 1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가지 류 이상일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1출원서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간편해짐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함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제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03 심사 알아보기
디자인 심사 절차 및 특유의 제도

1.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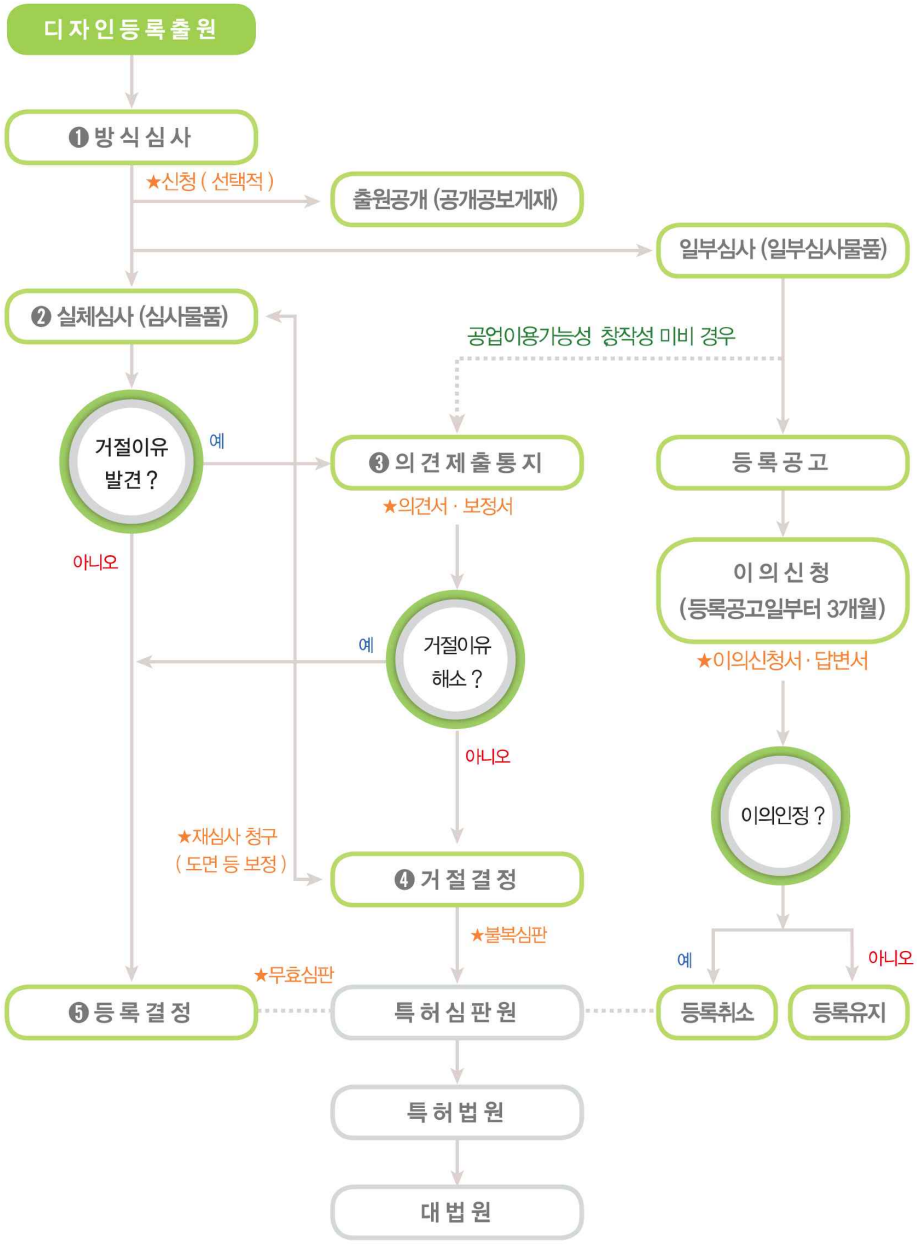

①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음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월임(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② 실체심사

심사착수는 출원 순서대로 하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금 출원된 건은 1차 결과 통지까지 평균 약 5.3개월 소요(2019. 4. 기준)
※ 출원의 실제 심사 진행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③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심사가 계속됨
-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47% 정도가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디자인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4회(매회 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 연장 가능(2개월씩 일괄신청 가능)

④ 거절결정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함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재심사에 의한 재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재심사청구 요건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 무효, 취하된 출원은 재심사 대상이 아님
-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단,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다시 재심사청구 시 반려함

②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없을 것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는 반려대상임

③ 도면 등의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청구할 것

- 도면 등 보정서에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짐

⑤ 등록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하며,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설정등록하고 등록공고함

▣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

직물지, 포장지 및 의복 등과 같이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하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기본요건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창작성 여부만을 심사(선행 디자인 조사는 하지 않음)하여 등록시킴으로써 조기에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

※ 디자인일부심사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 직물류), 19류(문장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등)

①-1 일부심사 출원에 대한 기본요건 심사

-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 순서에 따라 공업상 이용 가능성 및 용이 창작성 여부를 심사

②-1 일부심사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심사를 받게 됨
- 일부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함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함

2.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① 관련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기본디자인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은 별도로 존속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며,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과 동일
-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시기 제한 :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②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한 벌의 다기 세트, 한 벌의 응접세트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

③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 출원 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 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개의 출원서에 1개의 디자인을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에 출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제도

⑤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⑥ 글자체디자인제도

글자체[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04 심사 알아보기 맞춤형 심사제도

1.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심사 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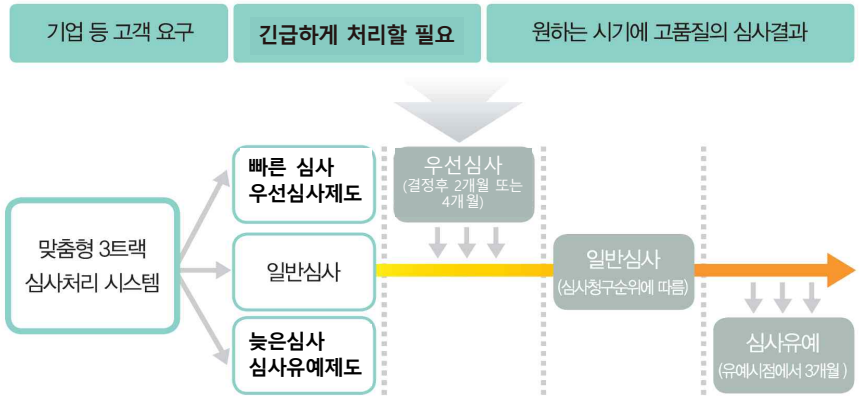

① 우선 심사

우선심사 신청 요건에 해당하거나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② 늦은 심사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 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 (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 신청 시기 및 절차 등 : 심사청구 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 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 늦은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출원인의 희망에 따라 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③ 일반심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청구 후 평균 10.8개월 이내('19.12월 기준)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음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제도

① 우선심사제도란?

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② 처리기간

우선심사 신청 건은 우선심사 신청서 접수부터 우선심사여부결정 및 심사착수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한 우선심사신청출원 또는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5개월) 소요됨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기타 보정요구가 되는 등 절차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 기간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제공됨

③ 신청대상

-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5조)

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공통 : 12개 분야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과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고안,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출원
-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와 출원된 발명(고안)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나. 특허출원 : 6개 분야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특허/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다. 실용신안등록출원 : 1개 분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출원(단, 특허·실용신안만 해당)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특허/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라. 디자인등록출원 : 2개 분야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
- 인공지능 또는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3. 상표 우선심사제도

① 정의

원칙적으로 상표심사는 출원 순서에 의하나(상표법 제53조제2항), 권리관계의 확정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 상표출원 순서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② 처리기간

우선심사 신청 시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1차 심사가 이루어짐

③ 신청대상(상표법 시행령 제12조)

-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 법 제167조제1호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체표장인 경우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02

출원에서 등록까지

Ⅳ. 등록 신청하기

1.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89
2. 기본 등록 신청 90
3. 변동 등록 신청 94
4. 등록보정제도 99
5. 등록 관련 문의 101

01 등록 신청하기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등 특허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의 총칭

※ 특허청장이 지식재산권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공적장부를 등록원부라 하고,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인정된 사항을 등록사항이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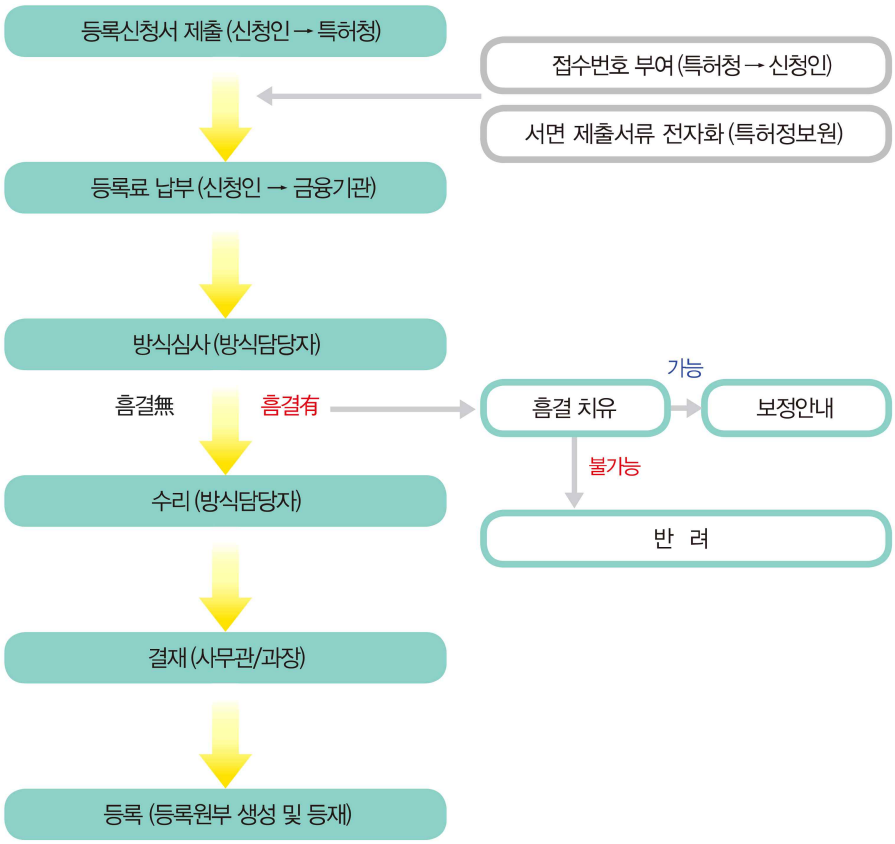

02 등록 신청하기
기본 등록 신청

1. 신규설정 등록

① 정의

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등록결정(또는 심결)이 된 경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

② 구비서류

- 납부서(구분항목: 설정등록료) 1부
  - 등록료가 면제인 경우에도 신규설정을 위해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하단 → '민원서식 다운로드' 코너에서 납부서 조회 후 다운로드
- 감면·면제사항 증빙서류(감면·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함)
  - 납부서에 감면 · 면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③ 납부방법

-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우체국은 납입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
- 인터넷에서 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가능
- 납부서 제출을 통한 신규설정 등록료 납부
  - 우편 :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출력 · 작성하여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발행)와 함께 우편발송
  - 방문 : 특허청 본청(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를 제출한 후 은행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설치된 PC 이용)
  - 온라인 : 특허로 사이트(http://www.patent.go.kr)에서 서식작성기를 통해 납부서 제출 후 설정등록료 납부
    ※ 수수료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서의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에 신청한 계좌번호를 기재

④ 납부기간(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등록)료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음
  (단, 월마다 3%씩 가산율이 적용됨. 1개월-3%, 2개월-6%, 3개월-9%, 4개월-12%, 5개월-15%, 6개월-18%)

예시) 설정등록료 납부기간

- 상표

  상표등록료(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 상표등록은 추가 납부 기간이 없음

※ 상표 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분할납부제도

- 상표권 2회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2010. 7. 28. 시행)되면서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10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5년분을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음

  i) 납부서의 '납부회차' 항목에 '1회차'라고 기재한 후, 1개류마다 132,000원씩의 설정등록료와 1개류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개마다 1,000원씩의 가산료를 합산하여 기재, 등록세는 1회차에만 납부하므로 1회차 납부 시에는 등록세 9,120원을 납부서에 함께 기재하여 납부

  ii) 1회차 납부 후 2회차 등록료 납부가능 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말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고, 만약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권 소멸

  iii) 만약, 2회차 설정등록료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지 않고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서의 '납부대상의 표시' 항목에 출원번호가 아닌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납부회차'를 '2회차'로 기재,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상기 ii) 의 절차와 동일

2. 연차등록료 납부

① 정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설정등록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

※ 존속기간(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내에서 최초설정등록(3년분) 이후 매년 권리 유지 여부를 권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② 구비서류

- 납부서(구분항목: 연차등록료) 1부

  ※ 서식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하단 → '민원서식 다운로드' 코너에서 납부서 조회 후 다운로드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 의뢰서를 통해 납부서 없이 등록료 납부 가능

- 감면·면제사항 증명서류(감면·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함)

  - 납부서에 감면·면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③ 납부방법

-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의뢰서와 함께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우체국은 수납의뢰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특허로 →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에서 재발급 가능

- 인터넷에서 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가능

- 납부서 제출을 통한 연차등록료 납부

  - 우편 :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출력·작성하여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발행)와 함께 우편발송
  - 방문 : 특허청 본청(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를 제출한 후 은행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설치된 PC 이용)
  - 온라인 : 특허로 사이트(http://www.patent.go.kr)에서 서식작성기를 통해 납부서 제출 후 연차등록료 납부

  ※ 수수료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서의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에 신청한 계좌번호를 기재

- 연차등록료 매년 자동납부(등록한 계좌번호에서 정납 만료일에 자동이체)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자동납부에서 신청

④ 납부기간

등록료가 납부되어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다음 연도의 특허료를 미리 납부

※ 납부기간 경과 후 추납기간(6개월) / 회복기간(3개월)

예시) 4년차 연차 등록료 납부기간(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연차등록료의 납부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4년차가 시작하기 전날까지
-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음
  (단, 1개월 이내에 3%, 2개월 이내 6%, 3개월 이내 9%, 4개월 이내 12%, 5개월 이내 15%, 6개월 이내 18% 가산된 금액을 납부)
-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는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권이 정상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봄(특허법 제8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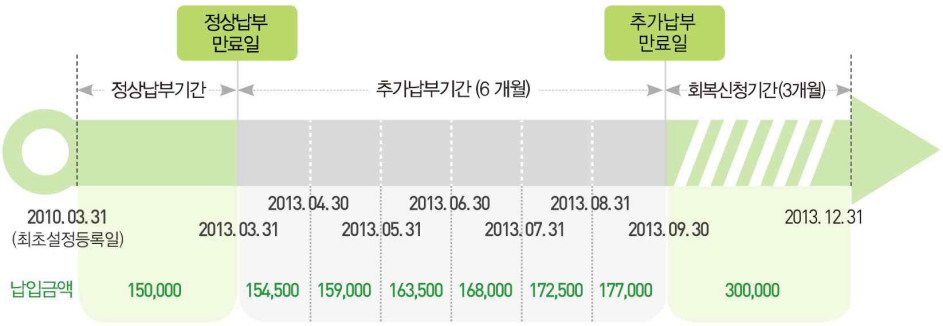

3.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① 정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하기 위한 등록

※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권의 갱신 제도 변경 (2010. 7. 28.)
: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② 신청·납부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서 제출일 다음날까지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

※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수수료자동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서의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에 신청한 계좌번호를 기재

〉〉〉 등록료 보전제도

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단, 보전에 의하여 특허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당초의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포함)을 경과한 경우에 그 보전은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소멸권리회복제도(특허 · 실용 · 디자인)

특허(등록)료 추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한 경우 실시중인 권리에 한하여 추가 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신청하고 정상특허(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제도

03 등록 신청하기 변동 등록 신청

1. 권리 이전 등록

① 정의

- 특허권 등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
- 특허권 등의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함

※ 다만,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청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② 주요 등록원인별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등 록 원 인	첨 부 서 류
권리 이전 등록	**[대상권리]**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양도	① 양도계약서 ②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속	①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②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속포기심판서정본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①,②,③ : 등록원인 상속과 동일 ④ 협의분할서(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성립)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법인 합병	① 피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분할	① 분할 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분할 후 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분할계획서 (공증된 계획서) - 공증된 계획서가 사본인 경우 공증 ④ 권리승계확인서
		법률규정	① 조직 통·폐합 등의 근거가 된 법률

공통사항	①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서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 ④ 판결에 의한 경우는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원 ⑤ 외국인에 의한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국적증명서, 공증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

2. 실시(사용)권 설정

① 정의

-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전용실시권(사용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사용권)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적 권리가 아님

② 구비서류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예시 :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허락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부(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말소등록

① 정의

말소등록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사용)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명의인의 승낙, 판결 등의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것

② 구비서류

- 말소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포기서 등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은 법인증명서) 1부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 6월 이내)
  -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 1부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통(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근)질권 설정

① 정의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시기나 조건이 불명확하고 최고의 한도액만을 정해놓은 경우)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권리를 말함

질권이란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설명] KIKI가 친구인 POPO에게 돈을 일천만원 빌렸는데 KIKI가 당장 돈을 상환(변제)하지 못할 경우, KIKI가 가지고 있는 일천만원 상당의 보석을 POPO가 보관하면서 돈을 갚는다면 보석을 주기로 계약하는 경우를 질권 설정에 비유할 수 있다. 만약 KIKI가 채무를 변제하는 않는다면 POPO는 합법적으로 그 보석을 처분해서 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특허권자(질권설정자) : KIKI　　질권자 : POPO　　특허권 : 보석

② 구비서류

- 질권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예 : 질권설정계약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은 법인증명서) 1부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 6월 이내)
  -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 1부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부(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유질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

변동등록시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구 분		공유자	특허권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특허권자	이전	o		x	x	x
	질권설정	o		x	x	x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o		x	x	x
	통상실시(사용)권 허락	o		x	x	x
	포기	x		o	o	o
전용실시권자	이전	o	o		x	x
	질권설정	o	o		x	x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o	o		x	x
	포기	x	x		o	o
통상실시권자	이전	o	o	o		x
	질권설정	o	o	o		x
	포기	x	x	x		o

04 등록 신청하기
등록보정제도

1. 정의

보정이란 절차적 사항에 관한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정기간 이내에 신청인이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절차

2. 도입 배경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미한 흠결로 인해 신청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므로 2012. 7. 1.일자로 등록보정제도를 도입·시행

3. 주요 내용

▣ 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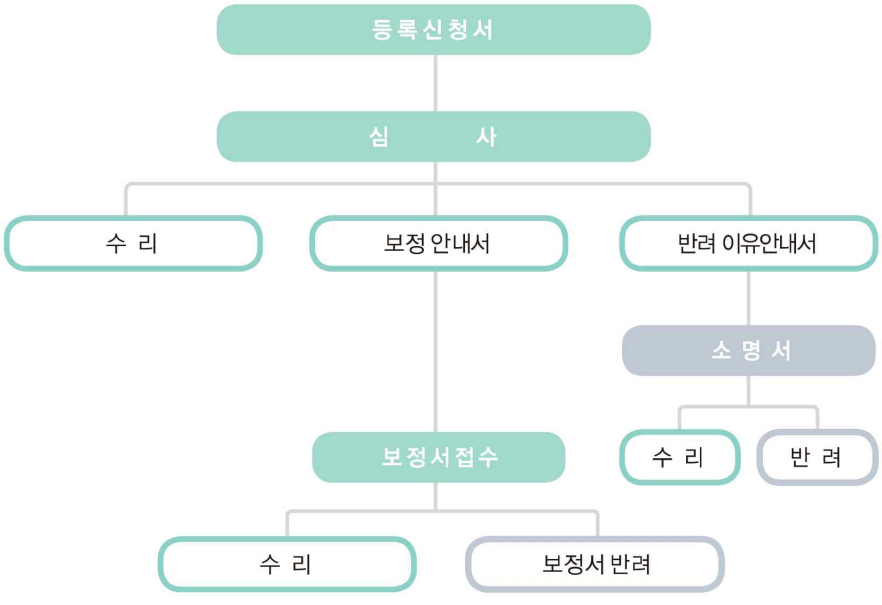

담당자 • 흠결 있는 서류 발견 시, 당해 흠결이 치유 불가능한 흠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정기회를 부여(보정안내서 발송)

신청인 • 보정안내서 발송일(발송주의)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 보정서를 제출. 보정서로 흠결이 치유될 경우 즉시 수리

담당자 • 치유 불가능한 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이유안내서를 발송. 반려이유안내서에 대해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통해 의견 제출 가능

▣ 주요 내용

• 등록보정서의 기능

구 분	내 용
신청서 수정	• 신청인의 주소, 특허고객번호, 등록원인, 실시권의 내용 등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 가능
첨부서류의 제출	• 계약서, 판결문, 위임장 등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을 다시 제출가능
등록 수수료의 납부	•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 가능

• 등록보정 방법

구 분	내 용
서 식	• 등록보정서(특허권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를 통해 제출. 신청서 수정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등록보정서에 기재하고 제출서류는 등록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
기 간	• 등록보정서는 보정안내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특허청에 도달하여 접수되어야 함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인 경우, 2개월
기 타	• 보정기간 이내에는 보정횟수의 제한이 없음
보정료	• 없음

05 등록 신청하기
등록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 특허청 등록과 ☎ 042)481-5244

〉〉〉 등록신청시 주요 흠결 사유

- 신규설정등록
  - 설정 등록료 미납, 등록료 부족 납부(보전기간 경과 후 불수리)
  - 출원번호 오기재
  -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가 다른 경우 등
- 변동등록
  - 등록의무자 주소 등이 등록원부와 달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명칭(성명) 및 주소변경
>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해야 하며 '07.12.31. 이전에 설정등록되었으나 통합관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명의인표시 통합관리신청도 함께 신청

  -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에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는 경우
- 연차등록료 납부
  - 납부기간 경과
  - 납부연차 및 등록번호 오기재
  - 연차등록료 중복납부(예: 공동권리자가 각자 납부한 경우)

    ※ 유의사항 :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1명만 납부
  - 연차등록료를 전년도에 납부했던 계좌로 잘못 납부

    ※ 유의사항 : 계좌번호는 일회성이므로 반드시 납부할 계좌를 정확히 확인하여 납부해야 함

02

출원에서 등록까지

V. 심판절차 밟기

Tip. 특허분쟁의 첫걸음, 경고장 바로알기 103
특허(상표)침해분쟁 바로알기 103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기본 판단법 104
1. 특허심판이란? 105
2. 특허심판의 종류 106
3 특허심판 이용안내 108
4.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112
5. 특허심판 기간연장 관련 절차 113

Tip

▣ 특허분쟁의 첫걸음, 경고장 바로 알기

■ 특허 심판/소송 관련 정보 QR7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

1. 실시제품이 특허출원/특허발명과 동일함
2. 특허등록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지급해야 함
3.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 함
   ※ 공개/등록 공보, 등록원부 첨부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1. 경고장 발송 전, 충분한 증거수집
2. 특허권 침해가 아님에도 침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경고장의 내용 중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록원부를 통해 특허권의 유효여부 확인
2. 청구범위에 실시제품이 포함되는지 판단
3.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이 공지되었는지 확인

경고장 검토 후 조치 사항

1. 청구범위에 실시제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확인 가능
2.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특허권(상표)침해분쟁 바로 알기

침해가 의심될 때 권리자의 대응방법

1. 침해한 실시자(사용자)에게 주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 발송
2.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3. 손해배상소송 등을 법원에 청구
4. 특허권(상표권) 고의로 침해시 침해죄로 검찰, 경찰에 고소
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경고장을 받았을 때 실시자(사용자)의 대응방법

1.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2.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침해분쟁 관련 소송의 종류

1. 손해배상
2. 특허(상표)권 침해금지
3.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금지
4. 신용회복 등

침해분쟁 관련 심판의 종류

1.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3. 무효심판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기본 판단법

특허발명	실시제품
등록공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ex) a+b+c 로 구성된 의자	실시제품의 기술적 특징 ex) a+b+c+d 로 구성된 의자

대비 판단

특허발명의 특징(a+b+c)이 실시제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여부

Yes → 침해	NO → 비침해

등록디자인	실시디자인
출원서, 도면, 도면에 기재된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	실시제품의 미적외관

대비 판단

일반 수요자가 등록 디자인과 실시 디자인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혼동 우려가 없더라도 두 디자인 사이에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Yes → 침해	NO → 비침해

등록상표	사용상표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와 지정상품	사용표장과 사용상품

대비 판단

두 상표가 서로 동일하거나, 외관 · 호칭 · 관념 면에서 유사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

Yes → 침해	NO → 비침해

01 심판절차 밟기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의 거절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확인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

(※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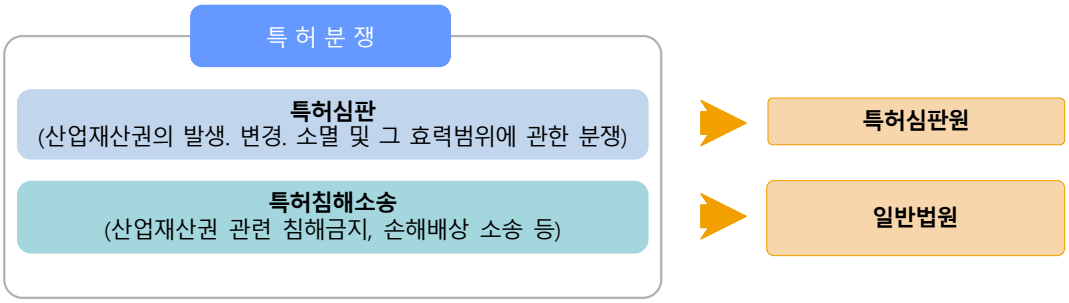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 특허소송 제기기간
  - 특허법원 :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가기간 지정시 연장)
  - 대 법 원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02 심판절차 밟기 특허심판의 종류

1. 결정계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심판의 종류	내용	청구기간	관련규정
거절결정 불복심판	출원에 대한 특허(등록)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법 제116조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디자인, 상표) ※ 특허·실용신안은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폐지	보정이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보정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정정심판	특허(실용신안)권자가 특허(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이후 특허발명/등록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정정하고자 청구하는 심판	설정등록 후 청구가능 (소멸 후에도 가능, 심결에 의해 무효가 확정된 이후에는 불가)	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2. 당사자계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심판의 종류	내용	청구기간	관련규정
무효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를 근거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 시키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 또는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발명 / 등록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무효심판 절차 에서의 정정,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 /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 또는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4조, 실용신안법 제31조의2
상표등록 취소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권에, (불사용, 부정사용 등) 취소사유 발생 시 그 상표권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심판	일부 취소사유(부정사용 등)는 소멸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표법 제119조, 제120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특허발명 등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가능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특허발명 등이 선행 타 특허권 등과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 허락을 구하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가능 (현존 권리간의 실시 저촉해결 목적)	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03 심판절차 밟기 특허심판 이용안내

1. 심판청구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심판서류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취지】 작성 시 유의사항

- 출원(등록)대상 청구의 취지 기재 시 권리구분과 출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예) "단체표장등록 제43-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O)
  "상표등록 제43-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X)
  "단체표장등록 제40-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X)

- 결정계 심판

  - 청구대상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전체이어야 하며, 출원 중 일부 청구항(일부지정상품)이 되어서는 안 됨

  예) "원결정을 취소한다. 2020년 특허출원 제00호는 등록결정한다." (O)
  "원결정을 취소한다. 2020년 특허출원 제00호의 청구항 제1항을 등록결정한다." (X)

- 당사자계 심판

  - 청구대상은 ① 전체 청구항(지정상품) 또는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고, ② 【청구의 취지】 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지정상품)의 개수와 【청구의 이유】 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지정상품)의 개수는 동일해야 함

- 심판종류에 따른 청구의 취지 작성예시

구 분		작성예시
결정계	거절결정 불복심판	"원결정을 취소한다. 2016년 특허(상표)출원 제00호는 특허(등록)결정한다"
	정정심판	"특허 제00호의 명세서(도면)를 청구서에 첨부한 명세서(도면)와 같이 정정한다.

구 분		작성예시
당사자계	권리범위 확인심판	• 적극적 - "확인대상발명 ○○은 특허 제00호 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일부) - "확인대상발명 ○○은 특허 제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전체) • 소극적 -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등록 제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무효심판	"특허 제00호의 청구범위 제1항, 제2항을 무효로 한다."(일부) "특허 제00호를 무효로 한다."(전체)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 제00호의 청구범위 제1항, 제2항을 무효로 한다."(일부) "특허 제00호를 무효로 한다."(전체)

2.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의 이용

- 심판청구서를 비롯한 심판서류를 특허심판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받아볼 수 있음
- 심판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사전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전자출원 S/W(KEAPS : 서식작성기 등)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접수할 수 있음

※ 이전에 온라인 출원한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 필요 없음

-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간

평일 · 토요일 · 주중공휴일	00:00 ~ 24:00
일요일	10:00 ~ 24:00

※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시 의문사항은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속 · 우선심판

심판사건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관련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

* 신속심판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소신청 가능

구분	신속심판	우선심판
처리기간	통상 3개월	통상 6개월
도입시기	'09. 7. 1	'98. 3. 1
근거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1항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1항
대상	1. 특허법 제164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제3항, 상표법 제151조제3항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제외 1의2.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제외 1의3.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 (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으로서 우선심판신청 (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 (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7.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 (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9.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 (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10.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다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자기 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에는 제외

	4.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 (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4의2.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5.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 (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6.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중소기업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 (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7.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 (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은 제외 12.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서 특허분류가 A61K 또는 C07K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A61K 6(치과용 제제) 및 A61K 8(화장품 제제)은 제외)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 (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04 심판절차 밟기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1. 결정계 심판 절차도

※ 심사전치제도(2009.6.30. 이전 출원)는 특허 · 실용 신안 · 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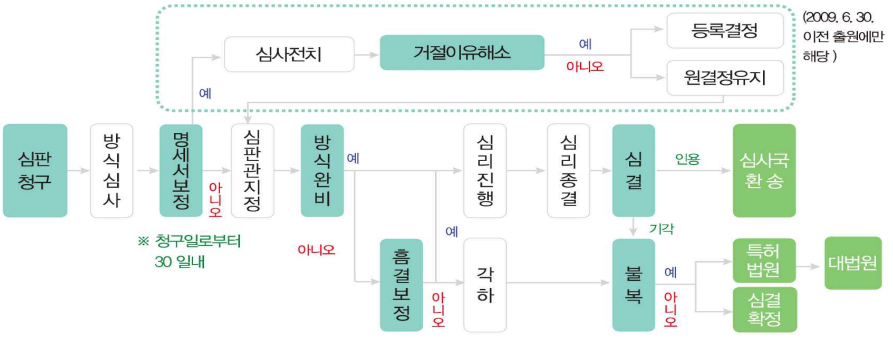

>>>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2009년 7월 1일 시행)

- 심사전치제도 하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 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 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 결정된 출원 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음

2.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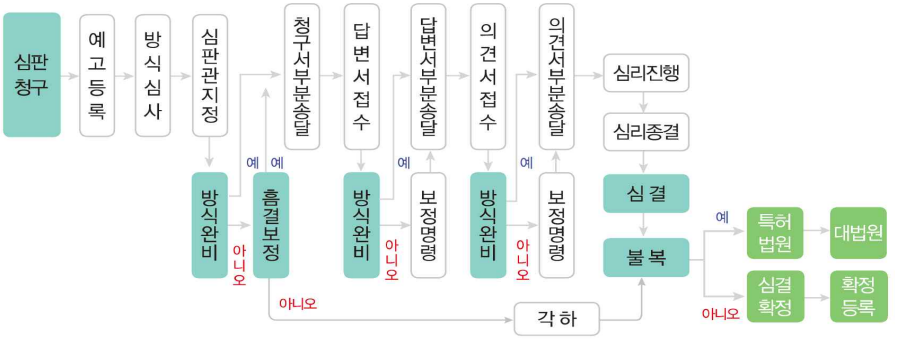

05 심판절차 밟기 특허심판 기간연장 관련 절차

1. 지정기간연장 및 기일변경 신청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술심리 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2.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 법정기간연장신청은?
  - 거절결정서 등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을 1회 30일에 한하여(재외자에 한해 1회 30일 추가 연장 가능) 연장 신청하는 것을 말함
- 지정기간연장신청은?
  - 심판절차를 밟고 있는 심판당사자(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가 서류의 제출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것을 말함
- 부가기간지정신청은?
  -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 특허법원에 대한 소제기 기간을 1회에 한하여(내국인 20일, 재외자 30일) 연장 신청하는 것을 말함

〉〉〉 기간연장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1) 법정기간연장신청서(재심청구 or 불복심판청구 목적)는 반드시 특허청에 제출해야함(디자인 제외)

▸ 특허심판원으로 제출할 경우 법정기간연장신청서는 반려됨

2) 심판청구에 대한 최초 답변서 제출을 제외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승인 될 수 있음

3) 아래의 서류에 대하여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연장신청서는 반려됨

▸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상표/디자인/기술 설명회개최통지서 등

4)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불변기간(소제기 기간) 종료일 4일전까지는 특허심판원에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해야 함

▸ 부가기간의 지정이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특허법원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있음

3. 심판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481-5583

02

출원에서 등록까지

VI. 수수료 납부하기

1. 수수료 일람표 116
2. 기타 출원 관련 수수료 119
3. 기타 등록 관련 수수료 122
4. 기타 심판 관련 수수료 123
5. 각종 서류의 등·초본 발급신청료 등 124
6. PCT 국제출원 수수료 125
7.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126
8.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등 127
9. 출원료 등의 감면안내 128
10.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138
11.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139
12. 지식재산포인트 제도 141

01 수수료 납부하기
수수료 일람표

(2020. 06. 30. 기준)

특 허

• 출 원 •

전 자	국 어	46,000원 (56,000원*)
	외국어	73,000원
서 면	국 어	66,000원 + 가산료**
	외국어	93,000원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심사청구 •

143,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44,000원

• 등 록 •

설정등록 (1~3년)		매년 15,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3,000원
연차등록	4~6년	매년 4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7~9년	매년 10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38,000원
	10~12년	매년 24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5,000원
	13~25년	매년 36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5,000원

실용신안

• 출 원 •

전 자	국 어	20,000원 (25,000원*)
	외국어	32,000원
서 면	국 어	30,000원 + 가산료**
	외국어	42,000원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심사청구 •

71,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

• 등 록 •

설정등록 (1~3년)		매년 12,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4,000원
연차등록	4~6년	매년 25,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7~9년	매년 6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4,000원
	10~12년	매년 16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원
	13~15년	매년 24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원

• 심 판 •

전자	거절·무효·정정·권리범위 등	매건 15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면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매건 17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 매건 11,000원(2017.03.0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무효심판청구료 : 매건 11,000원(특허 : 2006. 10. 1. ~ 2017.02.28. 기간동안 설정등록된 경우 / 실용신안 : 2006. 10. 1. 이후 출원되어 2017.02.28.까지 설정등록된 경우)

*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는 2001. 7. 1.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 7. 1.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해 적용

디 자 인

• 출 원 •

전 자	심 사	1디자인마다 94,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45,000원*
서 면	심 사	1디자인마다 104,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55,000원

* 첨부서류 중 도면을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매건 99,000 / 50,000원)

• 등 록 •

설정등록 (1~3년)		심 사	매년1디자인마다 25,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25,000원
연차등록	4~6년	심 사	매년1디자인마다 35,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7~9년	심 사	매년1디자인마다 70,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10~12년	심 사	매년1디자인마다 140,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13~20년	심 사	매년1디자인마다 210,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 심 판 •

전자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1디자인마다 240,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면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1디자인마다 260,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상 표

• 출 원 •

전 자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서 면	1상품류 구분마다 72,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지정상품가산금 : 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그 지정상품을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등 록 •

설정등록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13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존속기간갱신	• 정상납부 : 1상품류 구분마다 31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194,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갱신추납 : 1상품류 구분마다 340,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213,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심 판 •

전자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면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1상품류 구분마다 260,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전자) 매건 250,000원 / (서면) 매건 270,000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의 감면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1)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등록료

- 전액(100%)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만 6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군인 등
- 85% 감면 : 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
- 70% 감면 : 개인, 소기업, 중기업
- 50% 감면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특허, 실용신안의 출원료·심사청구료만 해당)
- 30% 감면 : 중견기업(4~9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의 경우 30% 감면)

2) 4년차 ~ 존속기간 특허료 및 등록료

- 50% 감면 :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3) 4~6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추가감면

- 추가 20% :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2022.2월 말일까지)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4) 우선심사신청료

- 70% 감면 : 소기업, 중기업(2024.12.31.까지)

* 사업개시일 3년 이내

5)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

- 70% 감면 : 개인, 소기업, 중기업
- 50% 감면 : 전담조직

02 수수료 납부하기
기타 출원 관련 수수료

1. 변경·분할 출원 수수료 등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원(실용신안 150,000원)
- 변경출원료
  - 특허 ⇔ 실용신안 :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 ⇔ 단체표장 ⇔ 증명표장 : 매건 전자 9,000원 / 서면 10,000원
-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5.1.1. 이후 출원)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적용
    ① 동일(심사 / 일부심사) 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 1디자인마다 10,000원 / 서면 20,000원
    ②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 1디자인마다 59,000원 / 서면 69,000원
  - 단, 다류지정상품등록출원(상표)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우선권 주장 신청료 / 추가료 : 전자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 서면 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 재심사 청구료 : 특허 10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원 / 실용신안 5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
- 우선심사 신청료
  - 특허 200,000원
  - 실용신안 100,000원
  - 디자인 1디자인마다 70,000원
  - 상표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2. 보정료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 · 도면 · 견본 등)보정서 제출
  : 전자 매건 4,000원 / 서면 매건 14,000원
- 외국어 특허 · 실용신안출원 오역정정료(외국어 국제특허 · 실용신안출원 포함)
  ① 전자문서 제출 : 특허 71,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 실용신안 35,000원 + 청구범위1항마다 9,000원
  ② 서면 제출 : 특허 91,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 실용신안 45,000원 + 청구범위1항마다 9,000원
- 디자인변경 보정료
  - 단독 ⇔ 관련 동일(심사 / 일부심사)출원 보정은 상기 보정료와 동일
  - 일부심사 ⇒ 심사변경보정 : 전자 53,000원 / 서면 63,000원
- 디자인 재심사 청구 보정료
  - 동일(심사 / 일부심사) 출원 보정 : 전자 30,000원 / 서면 40,000원
  - 일부심사 ⇒ 심사 변경 보정 : 전자 79,000원 / 서면 89,000원
- 상품류구분, 지정상품 및 이외 보정료 : 전자 매건 4,000원 / 서면 14,000원
  - 단, ①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제출시 62,000원 가산, 서면 제출시 72,000원 가산
    ② 2012.4.1. 이후 출원부터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 가산

3. 기타 수수료

- 보완료
  - 특허(실용신안)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고안) 주장 보완료 : 전자 18,000 / 서면 20,000
  - 상표등록출원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 보완료 : 매건 10,000원
  - 디자인출원 절차보완료 : 전자 4,000원 / 서면 14,000원

- 출원인 변경 신고료
  - 전자 매건 11,000원 / 서면 매건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인 경우(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전자 매건 5,000원/ 서면 6,500원
  -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법정기간 또는 기일변경 신청료
  - 1회 : 매건 20,000원
  - 2회 : 매건 30,000원
  - 3회 : 매건 60,000원
  - 4회 : 매건 120,000원
  - 5회 이상 : 매건 240,000원
-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1개월 이하 : 20,000원
  -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 30,000원
  -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60,000원
  -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 120,000원
  - 4개월 초과 : 240,000원
- 외국어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 20,000원(1회 / 1개월에 한함)
- 비밀디자인청구료 : 전자 1디자인마다 18,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20,000원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전자 1디자인마다 21,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24,000원
-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1상품류구분마다 50,000원

03 수수료 납부하기

기타 등록 관련 수수료

- 권리이전 등록료(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특허권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 40,000원, 디자인권 : 매건 40,000원, 상표권 : 매건 1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또는 인지세
    가.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나.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추가

- 실시권(사용권)·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 실시권·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 전용 매건 72,000원, 통상 매건 43,000원
- 질권설정등록·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단, 국가기관, 법원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지번변경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제외)·취소·말소·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 신탁등록·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04 수수료 납부하기
기타 심판 관련 수수료

- 정정청구료 : 전자 매건 3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 서면 매건 4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의 경우
  : 전자 매건 26,000원 /서면 매건 36,000원

  ※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려는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한 경우 : 면제

-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 전자 매건 142,000원 / 서면 매건 150,000원
  - 보조참가 : 전자 매건 16,000원 / 서면 매건 18,000원
-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신청료 : 전자 매건 1,000원 / 서면 매건 1,500원
-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 매건 4,000원 / 서면 매건 14,000원

05 수수료 납부하기
각종 서류의 등·초본 발급신청료 등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 및 우송료(첨부물 복사 가산료 : 매면 100원)
- 등록원부 사본·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온라인으로 교부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 : 무료
  - 서면 수령 : 매건 500원 및 우송료(10면을 초과하는 경우 매면 100원 가산)
  - 모사전송 수령 : 매건 500원(10면을 초과하는 경우 매면 300원 가산)
- 출원관련 서류, 등록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및 우송료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 특허(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료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교부 신청료 : 전자 매건 7,000원 / 서면 매건 9,000원
- 온라인 특허(등록)증 발급 : 무료(2013. 7. 1.부터 시행)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및 우송료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 특허(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료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교부 신청료 : 전자 매건 7,000원 / 서면 매건 9,000원
- 온라인 특허(등록)증 발급 : 무료(2013. 7. 1.부터 시행)

06 수수료 납부하기
PCT 국제출원 수수료

1. 국제출원 수수료

종 류		납부액(원)	납부기간	납부처
국 제 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CHF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 초과 시 1매당	*초과매수X15 CHF		
조 사 료	한 국	영어 : 1,200,000		
		국어 : 450,000		
	오스트리아	2,334,000		
	호 주	1,643,000		
	일 본	783,000		
	싱 가 포 르	1,955,000		
송 달 료		45,000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 (CD-R 또는 온라인)로 출원시 국제출원료 할인액 : 300 CHF

※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 선택시)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 수수료 계산시 주의 : 적색부분은 환율변동으로 수시로 변동

심사기관	납부액(원)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 소
한 국	심사료	450,000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4동 특허청, 고객지원실 우)35208
	취급료	255,000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749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좌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183		
일 본	심사료	JPY 26,000 (일본어 출원) JPY 58,000 (영어 출원)	송금은행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WIFT Code : SMBC JP JT) 계좌명 : JAP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096-173377	Japanese Patent Office(IPEA/JP)4-3 Kasumig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취급료	JPY 21,500		
호 주	심사료	AUD 590(820)*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좌명 : BSB 082-296 계좌번호 : 868711229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AUD 354		
싱 가 포 르	심사료	SGD 830	송금은행 :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Ltd 수신자 명칭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계좌번호 : 003-900067-7 (SWIFT Code : DBSSSGSG)	Paya Lebar Link, #11-03, PLQ 1 Paya Lebar Quarter, Singapre 408533
	취급료	SGD 297		

* 호주의 경우 ( )안의 금액은 국제조사보고서를 호주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07 수수료 납부하기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종 류				수수료	납부처
본국관청 출원 (한국 → 해외)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전자출원	매건 5,000원	한국특허청
			서면출원	매건 15,000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전자출원	매건 3,000원	
			서면출원	매건 13,000원	
	국제출원 (A+B+C 또는 A+D)	기본수수료 (A)	흑백표장	653 CHF	국제사무국
			색채표장	903 CHF	
		추가수수료(B)		1개류 당 100 CHF (3개류 초과 시)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 CHF	
		개별수수료(D)		각 국가별 수수료	
	사후지정신청 (A+C 또는 A+D)	기본수수료(A)		300 CHF ※ 표장의 색채구분 없음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 CHF	
		개별수수료(D)		각 국가별 수수료	
	국제등록존속기간 갱신신청 (A+B+C 또는 A+D)	기본수수료(A)		653 CHF ※ 표장의 색채구분 없음	국제사무국
		추가수수료(B)		1개류당 100 CHF (3개류 초과 시)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 CHF	
		개별수수료(D)		각 국가별 수수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177 CHF (국제등록 1건 당)	
지정국관청 출원 (해외 → 한국)	위임장 보정			서면 : 매건 4,000원 전자문서 : 매건 14,000원	한국특허청
	단체/증명 표장의 정관 보정				
	지정상품 보정			매건 10,000원	
	법정기간 연장 및 지정기간연장			1회차 20,000원	
				2회차 30,000원	

* 지정국가 각각의 선언에 따라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를 부과하고, 개별수수료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수수료 대신에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가 부과됩니다.

08 수수료 납부하기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등

1. 국제출원 수수료

종 류		납부액(원)		납부처
송달료		전자출원	5,000원	한국 특허청
		서면출원	15,000원	
기본료		최초 1디자인	397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19CHF	
공개료		1 도면 마다	17CHF	
		도면이 표현된 첫 면을 초과하는 면마다(서면출원 경우)	150CHF	
추가수수료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1단어 당	2CHF	
지정 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금액	표준지정수수료 (1수준)	1 디자인	42CHF	
		추가 디자인 마다	2CHF	
	표준지정수수료 (2수준)	1 디자인	60CHF	
		추가 디자인 마다	20CHF	
	표준지정수수료 (3수준)	1 디자인	90CHF	
		추가 디자인 마다	50CHF	
	개별지정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2. 국제등록 갱신료

종 류		납부액(원)		납부처
기본료(A)		최초 1디자인	200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17CHF	
지정 수수료	표준지정 수수료	1 디자인	21CHF	
		추가 디자인 마다	1CHF	
	개별지정 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3. 국제등록 변경 신청

종 류	금 액		납부처
명의변경	144CHF		국제사무국
권리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	1국제등록	144CHF	
	추가 국제등록 마다	72CHF	
국제등록의 포기	144CHF		
국제등록의 감축	144CHF		
국제등록의 초본 신청	144CHF		
견본 사진 신청	57CHF		

09 수수료 납부하기 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

(2020. 6. 30 기준)

1. 감면 및 면제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스타트업), 4~6년분의 특허(등록)료(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4~9년분의 특허(등록)료(중견기업), 4년 ~ 존속기간분의 특허(등록)료(개인<면제대상자 포함>,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료(개인<면제대상자 포함>, 중소기업, 전담 조직에 한함)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방법

반드시 출원 · 심사청구 · 우선심사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등록 시에 면제 ·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3.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면 제 대 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 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5. 만 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없음
6.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12. 4. 1. 이후 출원·심사청구·설정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복무증명서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2.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4.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다만, 2012. 4. 1. 이후 복수디자인 출원하는 것부터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수는 3개 이하이며, 2016. 1. 1. 이후 1출원에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임

4. 85%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 면 대 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만 65세 이상인 자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2.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5. 7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개 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맞을 것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3년 제출유예 인정 서류 -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3.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맞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
2.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3.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4.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 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법인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 해당 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3.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 없음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2.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7.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9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감면대상 아님

8. 4~6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22.2.28.까지)

- 중소기업(70% 감면), 중견기업(50% 감면)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2.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 「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9. 4년~존속기간 분의 특허(등록)료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개 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맞을 것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3.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맞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4.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법인·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 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 해당 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5.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 없음

10. 4년~존속기간 분의 특허(등록)료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기술신탁 관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증명서류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은행	• 「은행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 '24.12.31.까지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증명서류 - 「은행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특허)우선심사신청료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24.12.31.까지)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2. ①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②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③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④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⑤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⑥ 참전유공자(본인)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4. 학생(초 · 중 · 고의 재학생에 한함) 5. 만 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6.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12. 4. 1. 이후 출원·심사청구·설정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 100% 감면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면제·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7.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8. 만 65세 이상인 자 ※ 85% 감면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면제·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9. 개인 10. 소기업 11. 중기업 ※ 70% 감면		1.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13. 공공연구기관 14. 전담조직 ※ 50% 감면		1.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15. 중견기업 ※ 30% 감면		
1. 소기업 2. 중기업 ※ 70% 감면	•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법인의 경우)

*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가능

12.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

출원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출원 등을 할 당시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 서식(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면제분 또는 감면 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관계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

* 구비서류 :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1통,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대리인이 대리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 통장계좌사본1통

10 수수료 납부하기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 · 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1. 출원료·등록료·수수료 납부요령

-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서류 접수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http://www. giro.or.kr)로 납부
- 우편으로 요금 납부 시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 · 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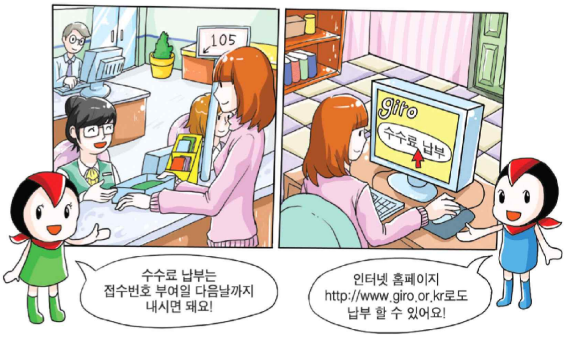

※ 상표등록료 2회 분할납부제 도입(2010. 7. 28.) 그간 상표등록료는 10년분을 납부하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제 상표권의 설정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에 5년분의 등록료를 내고,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나머지 5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음

2.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① **반환사유발생 통지 :** 납부자에게 과 · 오납, 무효심결확정등록 등 반환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

- 반환받을 계좌 사전등록*시 별도 반환신청 없이 정정신청 기한(1년)이 지난 다음날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반환
  1) 온라인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 반환신청 > 반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

② **납부자 등의 반환신청**

-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특허료 ·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를 제출(신청 시에는 반환신청인의 예금 계좌사본을 첨부)
  1) 온라인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2) 서 면 – 특허로 > 오른쪽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 서면신청 > 서식다운로드
  3) 팩 스 - 팩스(042-472-3453)접수 가능
- 반환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③ **반환(계좌이체지급) :** 반환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11 수수료 납부하기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1. 수수료 자동납부제도의 의미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 심판청구료 등 각종 특허 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는 대신 특허청에 사전 등록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시키는 제도

2. 수수료 자동납부 대상 수수료

- A Type(1회 자동납부)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 심판청구료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등 1회에 한하여 해당 절차의 특허료 · 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 B Type(매년 자동납부) :
  제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 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우

3. 수수료자동납부 절차

- 사전절차 : 「특허로」를 통해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사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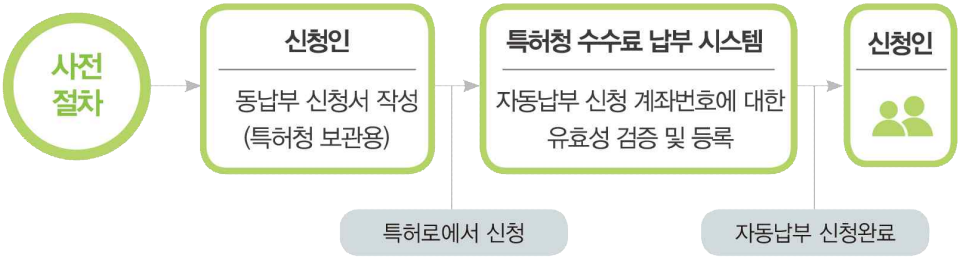

- A Type(1회 자동납부) 특허 수수료의 납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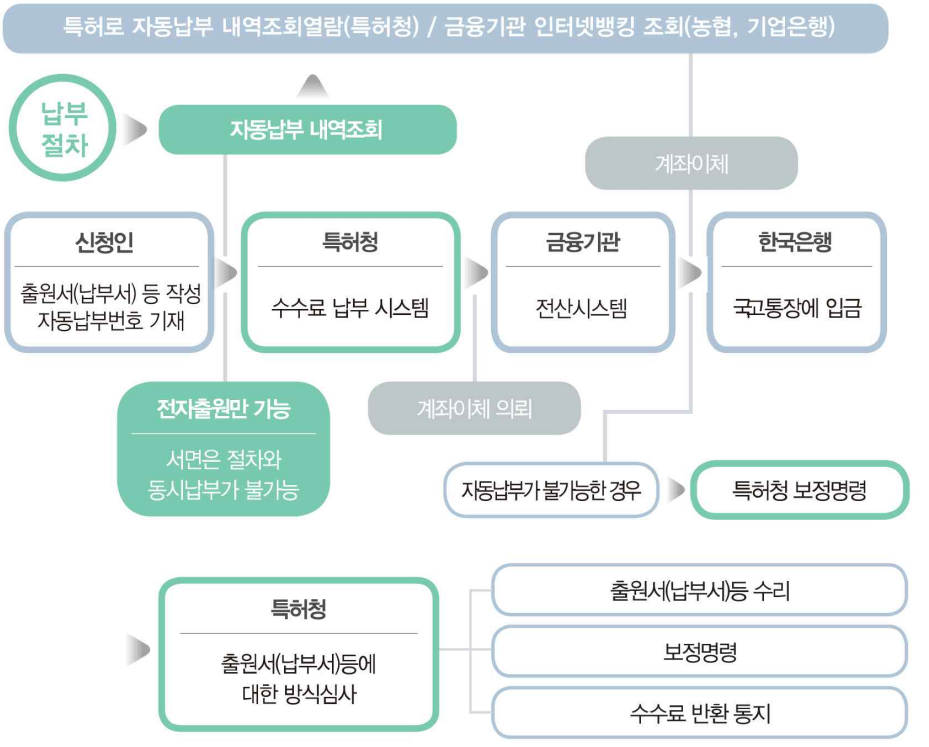

※ 잔고 부족시 전액인출하지 않음

- B Type(매년 자동납부) 연차등록료의 납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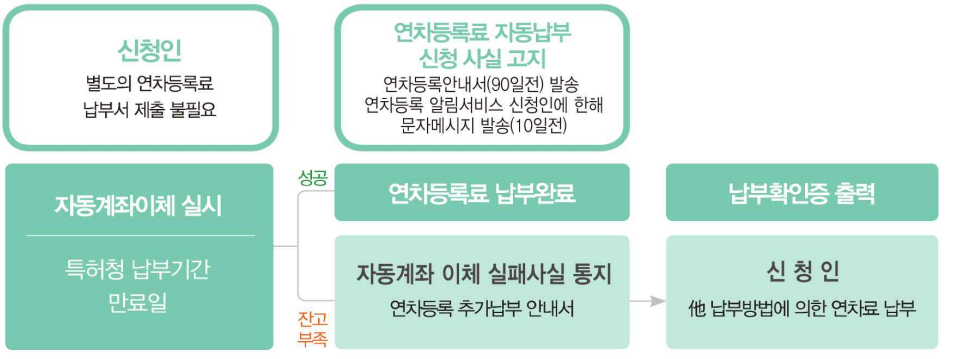

※ 잔고 부족시 전액인출하지 않음
※ 연차등록료의 경우 매년 자동납부(B Type)이외에 납부서 제출에 의한 1회 자동납부(A Type)도 선택가능

12 수수료 납부하기 지식재산포인트 제도

1. 지식재산포인트제도의 목적

-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창출 · 활용을 장려 및 지원하여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비율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한 자

무상개방 형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비율/포인트
중소 ·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특허 등의 실시권 설정	납부한 특허료·등록료의 50%
중소 · 중견기업에 특허 등 무상 이전	(특허) 30만 포인트/건(1회) (실용·디자인) 5만 포인트/건(1회)

※ **다음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등을 통해 무상 개방된 건

나. 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고, 권리 제공자와 「국세기본법」제2조 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실시권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실시기간은 3년 이상이고,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 연도분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존속기간이 실시권의 실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마. 실시권 또는 권리이전사항이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 함

② 특허키움 리워드(전년도 특허창출비용*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소기업, 중기업)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

부여대상	특허창출비용 구간	부여비율
개인 소기업 중기업	30만원 초과 ~ 100만원이하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 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10
	100만원 초과 ~ 200만원이하	100분의 20
	200만원 초과 ~ 400만원이하	100분의 30
	400만원 초과 ~ 800만원이하	100분의 40
	800만원 초과	100분의 50

③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은 사람(대리인 제외), 소기업, 중기업이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최초 1회 부여 / '23.12.31.까지)

④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은 사람(대리인 제외), 소기업, 중기업이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 자동납부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23.12.31.까지)

자동납부 횟수	3회	5회	10회	비고
지식재산포인트	1만	2만	3만	'20.7.1. 이후, 신규 자동납부 개시건 대상 (최초 1회 부여)

⑤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특허로를 통해 모바일 연차등록 안내서비스(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안내서비스 포함)를 신청하면서, 우편안내문 발송을 취소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최초 1회 부여 / '23.12.31.까지)

⑥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대리인 제외)이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중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최초 1회 부여 / '23.12.31.까지)

⑦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부여대상	적용 기준	비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전년도에 납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의 특허(등록)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40	'24.12.31.까지 선정된 기관으로 한정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대상)
	전년도에 납부한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등록)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20	

⑧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

부여대상	부여 대상 수수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부여비율	유의사항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 (개인, 법인)	출원료	100분의 30	국제출원 제외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외)
	심사청구료	100분의 30	-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100분의 30	-
	4년차분부터의 특허(등록)료	1년분 특허(등록)료의 100분의 30	수 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국제조사료	100분의 75	중소기업이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하면서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
	기간경과 구제신청료	전액	구제신청이 승인된 경우에 한정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청도, 경산, 봉화) / 대 상 기 간 : '20. 3. 15. ~ '21. 3. 14.

3. 신청 방법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 · 비율」 중 ①에 해당하는 신청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서에 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중소 ·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로를 통해 신청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특허료, 등록료가 납부된 건에 한해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 · 비율」 중 ② ~ ⑦에 해당하는 신청
  - 별도신청 불필요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 · 비율」 중 ⑧에 해당하는 신청
  - 출원시(국제출원의 경우 수수료납부시), 심사청구시, 권리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때 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납부시에 신청서*를 제출

  * 특허로(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지식재산포인트 > 지식재산포인트 신청 > 제8조(특별재난구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신청란 체크
  - 출원서(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서), 심사청구서,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의 취지 기재시 신청서 제출 생략가능
  -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자가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포인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특허료·등록료·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4. 지식재산포인트 사용 방법

- 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로부터 5년이며, 적립된 포인트로 특허료, 등록료 및 기타 수수료 납부 시 사용 가능(단, 국제출원료는 제외)

  1) 1포인트는 1원 : 특허료 등 수수료 납부 시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 금액만큼 차감

  2)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 사용절차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납부」 → 「온라인 납부」 코너의 '납부대상 검색'에서 '특허 수수료'를 선택한 후 마일리지 사용(이용방법안내 참조)

5.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587
- 특허청 국제출원과 ☎ 042)481-5208, 5206, 5206(PCT · 마드리드 · 헤이그 수수료)

03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Ⅰ. 지식재산고객 서비스 업무 146

Ⅱ.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지원 사업 150

Ⅲ.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사업 163

Ⅳ.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지원 사업 168

본 책자는 무료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

03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Ⅰ. 지식재산고객 서비스 업무

1. 특허청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운영 147
2.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148

01 지식재산고객 서비스 업무
특허청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운영

1. 주요업무

- 출원·등록 관련 서류 접수(심판 관련 서류접수는 특허청 심판정책과, 서울사무소에서 가능)
- 등록증·우선권증명서류 등 교부, 각종 제증명·복사서류 발급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상담

2. 주소 및 대표전화

- 특허청 고객지원실
  - 주소 :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층(둔산동)
  - 대표전화 : ☎ 042)481-5200, 5226
- 특허청 서울사무소
  - 주소 : 우)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5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대표전화 : ☎ 02)3458-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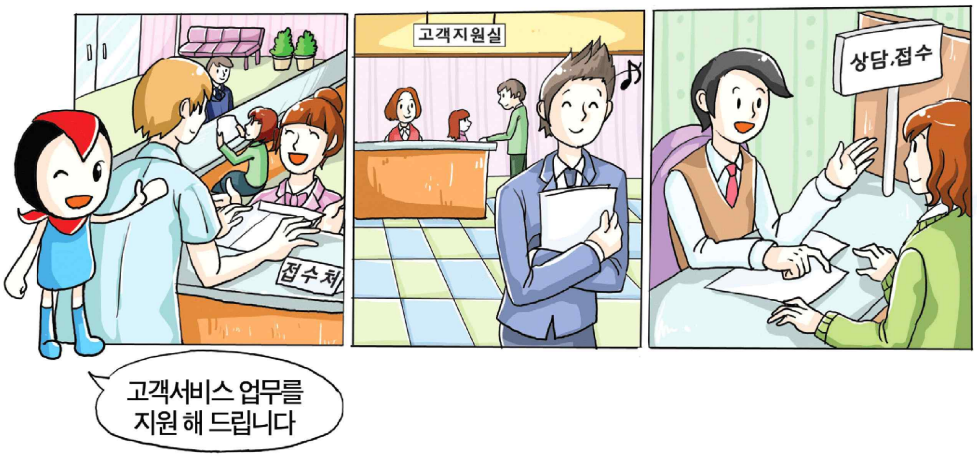

02 지식재산고객 서비스 업무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1. 설립목적

특허넷 시스템 및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권리 창출 및 권익보호 지원

※ 2010. 3. 특허고객 콜센터를 특허고객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2. 주요업무

- [수신] 대표번호(1544-8080) 상담
  - 국내 지재권 제도 및 절차 상담
  - 국제출원(PCT, 마드리드 국제상표, 헤이그) 제도 및 절차 상담
  - 특허넷 및 전자출원 SW 사용방법에 대한 상담
- [발신] PC원격지원 상담, 해피콜 상담
  - 전자출원 오류 해결을 위해 고객의 PC화면을 같이 공유하며 안내하는 PC원격지원 상담
  - 상담완료 후 처리여부 확인 및 추가정보 제공을 위한 해피콜
- [기타] 채팅상담, 전화상담예약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한 1:1 채팅상담
  - 업무 외 시간이나 상담사 연결이 지연될 경우, 고객이 예약한 전화번호로 상담사가 직접 연락하는 전화상담예약 서비스

3. 상담문의

-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 상담시간 : 9시~18시(토, 공휴일 제외)
- 홈페이지 : www.kipo.go.kr/kcall/MainApp?c=1000

특허청

03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Ⅱ.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지원 사업

1. 지식재산 창출 지원 151
2.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역량강화 159

01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1.1. IP(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

사업개요	■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사업아이템으로 고도화하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프로그램
지원자격	■ 예비창업자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아이디어 건당 출원비용 150만원 * 개인분담금(20%) : 아이디어 건당 30만원(IP창업Zone 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창업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특허컨설팅을 통해 IP권리화 및 사업아이템 도출 ① 아이디어 기초상담 : 아이디어의 IP권리화 및 창업을 위한 기초상담 ② IP기반 창업교육 : 사업아이템 연구, 사업계획서 작성,선행기술조사 실습 등 교육 ③ 아이디어 고도화 : 아이디어의 특허기술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고도화 ④ 아이디어 권리화 : 사업아이템의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출원 및 등록 ⑤ 3D프린팅 모형설계 : 아이디어 형상화 컨설팅, 사업아이템 모형 제작 등 ⑥ 창업 컨설팅 : 창업자금 확보, 보육센터 입주 등을 위한 연계 컨설팅, 기창업자 네트워크 및 외부전문가 멘토링 지원 ⑦ IP후속지원 : IP디딤돌 수혜자 중 우수 창업자 선정 지원 (사업아이템의 PCT 해외출원, 신규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수시 접수(1~11월) ■ 지원절차
지원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042)481-8660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 02)3459-2838, 2823 ■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www.ripc.org 참조

1.2. IP(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사업개요	■ 창업기업 및 전환창업 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업력이 7년 이내이거나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 전환창업의 경우 전환창업 시점이 문서상 증빙이 되어야 함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총 사업비 2500만원, 정부지원금 1800만원 이내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70% + 기업분담금 30%(현물15%,현금15%) 단, 매출이 없거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 비율은 현물20%, 현금10% ■ 지원기간 : 총 100일 이내, 8회의 업무회의 진행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IP 역량 강화를 위한 IP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제공 • (IP기술전략) 보유기술에 따라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예방 전략 제시,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등 맞춤형 기술 컨설팅 제공 • (IP경영전략) 기업 Needs와 세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IP 경영에 부족한 부분대해 IP 자산구축, IP 사업화 전략 제시, IP 브랜드/디자인 경영전략 제시 등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연 2회 접수(2월, 6월) ■ 지원절차
지원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042)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 02)3459-2833 ■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www.ripc.org 참조

1.3.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사업개요

- 해외 수출(예정)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IP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산업재산권 획득, 맞춤형 특허맵,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등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3년간 지식재산 서비스 종합지원

지원대상

- 해외 수출 및 수출(예정)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수출 (예정)	• 최근 3년 간 수출증명 서류(계약서, 업무협약 등) 또는 수출 계획서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연간 70백만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현물 10% + 현금 20%, 해외권리화의 경우 현금 30%)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	출원비용 지원	•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심사 중간대응(OA), 등록비용 지원	• 해외 개별국에서 심사 중 발생하는 중간대응에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등록 관납료 지원
특 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심화)	•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맵(일반)	
디 자 인	디자인맵(심화)	•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디자인맵(일반)	
	제품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화상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디자인 목업은 제품디자인 개발 산출물에 대하여 후속으로만 지원
	제품디자인 목업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	
브 랜 드	신규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 지원
기 타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 중소기업의 글로벌 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 특허·디자인 창출 전략 수립 및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지원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 제품디자인 또는 브랜드개발에 포장디자인, 마케팅, 목업 등 융합개발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경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현장실사 ▶ 발표심사 기업선정 ▶ 지원 ▶ 사후관리

지원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042)481-5171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 02)3459-2827
-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www.ripc.org 참조

1.4. 지재권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리 중소기업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특허 중심의 맞춤형 · 밀착형 전략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연구조직을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확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중소기업 R&D 현장에 지재권 전략 전문가[1]와 지재권 분석 전문기관(협력기관)[2]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 R&D 단계별 맞춤형 · 밀착형 IP-R&D 전략을 지원(3~5개월) • 제공전략 : 핵심특허 대응, IP 창출, R&D방향 ,특허인프라 구축 등 제시 • 제공형태 : IP-R&D 전략보고서[3] 일체 1)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으로 R&D와 IP경력 12년 이상의 전문가(박사, 변리사 등) 2) 특허사무소, 특허정보 분석기관 등 3)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특허분석 DB 등
지원절차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 481-8562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혁신팀 ☎ 02) 3287-4238, 4221 / ippro@kista.re.kr

1.5. 글로벌 기술혁신 IP(지식재산) 전략개발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IP(특허·디자인·브랜드·서비스)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밀착형 R&D 전략수립 지원

지원대상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예비중견기업)
  - (우대가점) 대일 무역수지 역조품목, 4차산업혁명 핵심분야 기술, 직무발명 보상 우수 기업 인증, 글로벌 IP 스타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 기업, 특허 공제 가입 기업, 타 부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전문가(전문위원)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특허·디자인·상표 분석기관, 제품디자인·UX/UI디자인·브랜드 개발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구 분	내 용
제품-서비스 융합형	•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특허 등)·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한 제품특허·디자인(브랜드) 개발 전략 및 서비스방법특허·UX/UI디자인 개발 전략 지원(5~7개월)
신제품 창출형	• 제품 관련 기술(특허 등)·시장·경쟁사 분석 기반 제품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 전략 지원(5~7개월)
신제품 개발형	•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한 제품·기술 관련 R&D 방향, 핵심특허 선제 대응, 강한 특허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특허 전략 지원(5개월)

지원절차

참여신청서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지원대상 기업선정 ▶ 수행 협력기관 선정 ▶ 사업시작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8562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융합성장팀 ☎ 02-3287-4369, 4338 / iprndinfo@kista.re.kr

1.6. 생활발명코리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여성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을 발굴하고 출원,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여성창업을 촉진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구 분	내 용
부문 1	• 지식재산권으로 출원되지 않은 아이디어
부문 2	• 제품 관련 기술(특허 등)·시장·경쟁사 분석 기반 제품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 전략 지원(5~7개월)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작 50건(부문1, 부문2 통합)

■ 생활발명 발굴·지원

구 분	내 용
부문 1	•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전문가 멘토링 제공 및 아이디어 연구개발 지원 • 공개심사 순위에 따라 정부시상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각 부처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부문 2	•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 • 전문가 멘토링 제공, 아이디어 연구개발 지원 • 창업, 판로, 마케팅 등 사업화 맞춤 컨설팅 제공

신청기간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2~4월

※ 생활발명코리아 홈페이지 확인, http://www.womanidea.net

■ 지원절차

① 온라인심사 → 선행기술조사 → 대면심사를 통해 아이디어 선정(5~6월)

②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7~11월)

③ 지원결과물 온·오프라인 공개 및 현장발표·심사 후 시상식 개최(11월)

지원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042)481-8498

■ 한국여성발명협회 ☎ 02)538-2710, http://www.womanidea.net

1.7.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 · 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 · 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

지원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건이내
- 기업분담금 : 30%(현물 10% + 현금 20%, 해외권리화의 경우 현금 30%)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해외 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특 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일반)	•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디 자 인	디자인맵(일반)	•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보고서 제작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목업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화상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디자인 목업은 제품디자인 개발 산출물에 대하여 후속으로만 지원)
브 랜 드	신규브랜드 개발 리뉴얼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지원절차
  - 온라인(http://www.ripc.org)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접수
  -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결과에 따라 과제 지원여부 결정

기업 접수및 발굴 ▶ 상담 (현장방문 등) ▶ 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기업 선정·통보 ▶ 사업수행자 선정 및 진행

• 지역지식재산센터 주소 및 연락처

지 역	센터명	주 소	전 화
서 울	**서울지식재산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3층	02) 2222-3860
인 천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032) 810-2882
경 기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031) 500-3043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031) 244-8321
	부천지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070) 7094-5483
강 원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033) 749-3326
	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보듬관 403호	033) 264-6580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033) 552-4779
	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033) 643-4413
충 북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043) 229-2732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043) 843-7005
충 남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 559-5746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 (서산상공회의소)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서림빌딩 4층	041) 663-0041
세 종	**세종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세종지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402호	044) 998-1000
대 전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선화동), Doo-Station 15층	042) 251-2897
경 북	**경북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33	054) 274-5533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054) 454-6613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054) 859-3093
경 남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055) 210-3085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5	055) 762-9411
대 구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053) 242-8079
부 산	**부산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3층	051) 645-9683
울 산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052) 228-3087
전 북	**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전북지부)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 TP 벤처지원동	063) 252-9301
전 남	**전남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 242-8587
광 주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7층	062) 954-3841
제 주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벤처마루 6층 603호	064) 755-2554

지원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042)481-5171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 02)3459-2822
-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www.ripc.org 참조

02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역량강화

2.1.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의 자율적인 지식재산 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
지원대상	▪ 지식재산 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 및 대학원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지원	• 대학당 연 1.8억원 이내, 5년간 지원 • IP정규강좌 연간 6강좌 이상 개설, IP교육 전담교수 확보를 비롯한 교육 인프라 구축, 우수 교육모델 창출·확산할 수 있는 대학을 지원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 대학당 연 3.6억원 이내, 5년간 지원 • 단과대학이나 대학원 내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운영, 총 5개 대학이 운영 중이며 현재 동국대 지원 중('19년~) * KAIST, 홍익대, 고려대, 단국대(자체운영 중), 동국대('19년~)

지원절차

지원사업 공고 ▶ 사업 설명회 ▶ 서류 및 발표심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수행

지원문의

-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042)481-3572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 02)3459-2808
- ▪ 홈페이지 www.kipa.org

2.2.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의 특허 데이터 활용 · 분석교육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

경진부문

구 분	내 용
발명사업화 부문	• 기업·연구소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관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제품 아이디어와 디자인·경영전략 등 발명사업화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
특허전략 부문	• 기업·연구소 등의 기술주제에 대해 국내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R&D 전략 제시 및 특허획득 방향 수립

수상자 특전

■ 대회 참가자 대상 특허 검색·분석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 기회 부여

구 분	내 용
온라인 교육	• 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메뉴' 확인
오프라인 교육	• 대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수상자 취업 인센티브 제공(취업 우대 기관)

※ 상세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 "취업지원 서비스" 메뉴 참조

■ 수상자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관리

• 수상자 대상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PL : Young Intellectual Property Leaders)'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주요활동 : CEO 초청 강연 등 세미나, 산업체 및 연구소 현장 방문, 우수 수상사례 발표, 체육대회 및 소모임 운영 등 지원

참가자격

■ 국내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가, 지도교수 1인(복수팀 지도 가능) 필요

* 다양한 전공 학생들 간에 팀 구성을 권장

※ 경쟁 부문 복수신청 가능

지원절차

■ 심사절차

■ 주요일정 : 홈페이지(www.kipa.org/cpu)를 통해 확인

■ 신청서 등 제출방법

구 분		내 용
온라인 신청접수		•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pdf, jpg파일) 업로드
답안제출형식	발명사업화 부문	• '아래아한글', 'MS-WORD', 'PPT' 형식(온라인 제출)
	특허전략 부문	• '아래아한글', 'MS-WORD' 형식(온라인 제출)

참가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 02)3459-2813

■ 홈페이지 : www.kipa.org/cpu

2.3.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 공공연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하여 정부 R&D 특허성과 제고

지원대상

- 대학, 공공연이 수행 중인 정부 R&D 또는 기관고유 과제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대학·공공연에서 수행 중인 R&D 과제를 대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대응 및 R&D 방향 설정 등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

구 분		과제 수	지원 기간	과제당 사업비	참여기관 부담금	
					현금	현물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	중대형	60	20주	130백만원	26백만원	39백만원
	소형	10	12주	70백만원	14백만원	21백만원

지원절차

모집공고 ▶ 선정평가(서류·발표) ▶ 지원과제 선정 ▶ 협력기관 선정 ▶ 사업 수행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8562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협력팀 ☎ 02)3475-8588
- 홈페이지: http://biz.kista.re.kr, http://www.kista.re.kr

2.4.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정부 R&D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우수특허를 창출하는 경쟁력있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에서 특허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

지원대상

- 정부 R&D 단계 중 연구·기획(중·대형과제) 및 선정·평가(단기·소형과제) 대상 과제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맞춤형 특허분석 제공 및 분석 목적과 지원기관에 따른 매칭비용 적용 (기본 5:5 매칭)

사업구분		분석기간	실부담금	지원 R&D 단계	지원형태	지원방법	사업지원 시기
특허동향조사	A타입	3개월	1.500만원	연구 기획	특허맵	사전 수요 조사 우선 지원 (공문)	연중 (상시)
	B타입	2개월	1.000만원				
	C타입	1개월	500만원				

- 주요 타입 별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A타입	• 핵심특허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장벽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R&D 방향 도출
B타입	• 연구과제 세부 기술별 연구개발 활동 패턴 및 특허점유율 분석
C타입	• 기획대상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각 주체별 기술개발 활동추이와 기술경쟁력 현황분석(정량분석 제공)

지원절차

수요조사 (전년도) ▶ 사업 지원요청서 접수 및 협약 ▶ 과제 수행기관 선정 ▶ 특허분석 진행 ▶ 최종 보고서 제공 후 완료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8562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동향팀 ☎ 02)3475-8547, 1363
- 홈페이지: http://biz.kista.re.kr, http://www.kista.re.kr

03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Ⅲ.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사업

1. 지식재산 금융 지원 164
2.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166

01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사업
지식재산 금융 지원

1.1. IP(지식재산) 담보대출 회수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부족한 특허기반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의 회수 위험 완화 필요 ■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은행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고 이를 활용
지원대상	■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사업재원 : 37.5억원('20년 기준 정부 예산)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예비평가	• 특허의 가치를 예비평가하여 회수지원 여부를 결정
가치평가 리뷰	• 특허가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손실보전율 결정
담보특허 매입	•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담보특허를 매입
매입특허 활용	• 매입한 담보특허를 수요기업에 매각·라이선싱

지원절차

지원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 02)3459-2938, 2936 ■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의 각 영업점(지점)에서 상담 및 접수 가능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1.2. IP(지식재산) 금융 연계 평가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 벤처캐피탈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허청이 일부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대출·투자 등을 시행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 : 등록 특허·실용신안권의 성능분석, 기술인증, 거래, 사업화 등을 위해 특허권자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특허기술 평가보고서 제공

지원대상

- 지식재산 보유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금융·투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특허청이 지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기관이 대출, 투자 등 시행

구 분	내 용
보증연계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500만원의 60% 지원
대출연계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500만원의 50% 지원
투자연계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80%(최대 12백만원) 지원

※ VAT는 신청인 부담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성능분석,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사업화 및 활용 촉진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 1건당 평가비용 70% 지원

※ VAT는 신청인 부담

지원절차

- **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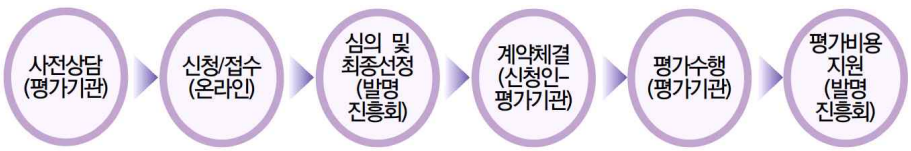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042)481-5920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947(보증연계), 2944(대출연계), 2945(투자연계), 2953(사업화연계)
- 홈페이지 : www.kipa.org

02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사업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2.1. IP(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품질 및 기술적 난제, 신제품 발굴 등 사업화 애로사항을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IP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77개 과제 내외 ▪ **지원방식** : 과제당 최대 8개월 이내 심층 IP 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과제당 최대 12천만 원(기업부담금 10~40%) 이내에서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컨설팅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 ▪ **세부지원내용** • **특허제품혁신** : 타 분야 특허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장치, 공정포함)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한 지원 또는 고객지향 혁신제품 개발기획지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 기업선정 (서류 발표심의) ▶ 사업 수행사 선정 ▶ 계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 IP활용 전략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 사후 관리
지원문의	▪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 ☎ 042)481-5566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 02)3459-2937 ▪ 홈페이지 : www.kipa.org ※ 로그인 → 사업화지원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2.2. IP(지식재산) 거래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특허기술 도입 등을 희망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 신규 사업 진출 등을 위해 외부로부터 특허기술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활용하여 라이선싱, 매매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 업종별 협회, 단체 등 시스템적 협업 수요조사, 시장 및 기술 분야 분석, IP-Market 구매등록, 기술 ·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수요 발굴 ■ 수요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경영진단과 수요 특허기술 분석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 전략 수립 등 인터뷰 실시 ■ 적정 공급기술 발굴·매칭, 거래 희망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기술미팅 등 특허거래 중개 협상 및 계약체결 진행 ■ 거래 이후의 사업화를 위해 IP금융, IP활용전략, 부처 사업화(R&BD) 등 지원 사업 연계 알선 및 사업성과 분석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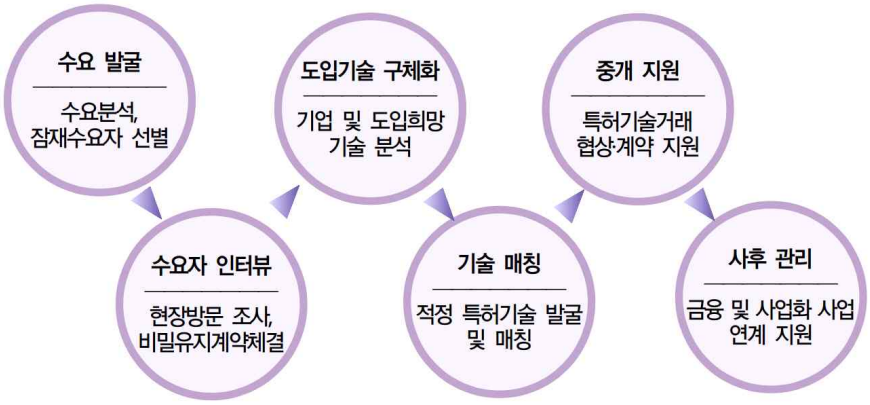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042)481-3478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 02)3459-2786, 2728 ■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www.ipmarket.or.kr ※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 지식재산권 거래 수요자와 공급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03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Ⅳ.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지원 사업

1. 국내 지원 사업 169
2. 해외 지원 사업 171

01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지원 국내 지원 사업

1.1.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와 영업비밀 관리역량 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학, 공공기관, 예비창업자(개인) 등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 제시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 법률전문가 등이 방문하여 기업 규모 및 현실에 맞춰 영업비밀 관리체계(인적·물적·제도적 관리방안)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 사내 영업비밀을 등록·보관하고 이용 가능자와 이용자별 권한을 차등부여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영업비밀 보호 교육·설명회	• 기업CEO·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관리방안 등을 교육하고, 지역 설명회 개최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지원

지원절차

-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 교육 및 설명회·유출분쟁 법률자문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042)481-5961 / 8210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1666-0521, www.tradesecret.or.kr

1.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산업재산권의 출원인,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영업비밀 보유자, 부정경쟁행위 분쟁당사자 및 해당 권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발명진흥법 제43조의2)
신청대상 분쟁	•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발명진흥법 제44조)

지원효과

■ 분쟁조정 신청 시, 전담 조정부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함

- 쟁송능력이 부족한 영세 산업재산권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조정이 잘 되었을 경우, 수년이 걸릴 분쟁이 수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음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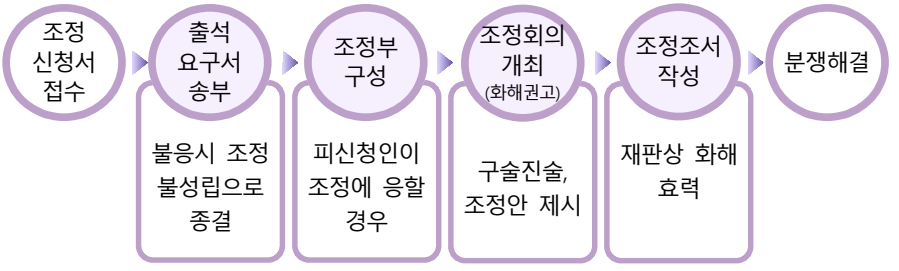

※ 조정절차는 3개월 이내에 종료됨(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 단위로 3회 연장가능)

※ 제시된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받아들일 경우 조정조서가 작성·발부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님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042)481-5925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6006-4300, www.pcc.or.kr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1670-9779, www.koipa.re.kr/adr

02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지원
해외 지원 사업

2.1.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을 위해 진출이 활발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IP-DESK를 설치(15개소)하여 각종 지재권 서비스를 지원

※ 중국(6), 미국(2), 태국, 베트남,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원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지재권 상담

- 내방, 전화, 이메일을 통해 우리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 해외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구 분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상표	$300 ($650)	$600	$500	$1,000	$550	$300	$300	$300	$300
디자인	$300 ($650)	$1,000	$500	$600	$550	$600	$200	$300	$300
지원비율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지원건	신청기업별 연간 8건(국가제한 없음)								

■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구 분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원내용	침해·피침해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								
지원한도	$10,000/건(피침해 실태조사만 진행 시 $6,000)								
지원비율	최대 50% 지원(중복지원 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50%→30%)								
지원건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지원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신청 시 선택한 법률사무소(침해조사기관)와 계약
신청기업	출원·침해조사 등	기업부담금 납부 및 출원·침해조사·법률검토 진행
KOTRA	비용지원	IP-DESK가 결과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지원금 지급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042)481-5992

■ KOTRA 해외지재권실 ☎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2.2.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국·ASEAN 등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지원
지원자격	■ 국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상표브로커 대응** :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통보, 피해기업 설명회,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연계 등

해외 상표선점 대응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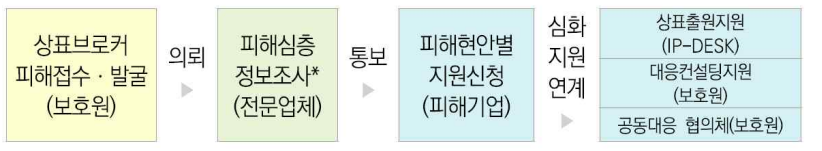

* 해외 출원상표 조사 및 국내 출원·등록 상표와의 비교 분석 후 무단선점 사실 확인

■ **온라인 모니터링**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를 통한 게시물 삭제지원,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교육 등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절차

①지원기업 선정	②모니터링	③기업검토·대리신고	④사후관리
■ 기업 신청접수 ■ 기업별 전담인력 배정, 연간 단속 지원	■ 위조상품 유통 정보(URL)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정보 제공	■ 신청기업 모니터링 결과 검토·신고진행여부 회신 ■ 해외 온라인 지재권 플랫폼 접속, 대리신고 진행	■ 신고 최종결과 및 결과분석 보고서 제공 ■ 연중 반복 재단속, 연간 단속리포트 제공

추진일정	■ 상시 지원 / 온라인 모니터링은 정기 모집(연간 3차 공고) ※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IP-NAVI(www.ip-navi.or.kr) 사업공고 페이지 통해 확인가능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042) 481-5999 / 5964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 02) 2183-5896, 5883

2.3.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개요

-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자격

-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내용** : 해외 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지원유형	지원내용
특허·실용신안	•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 분석 및 종합적 사전대응전략 제공 •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 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전략 제공
상표·디자인	•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제공 •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 **지원규모** : 대응전략 건당 10~60백만원*(지원유형별로 상이)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금+현물)

- **지원조건** : 기업 자부담 有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현 금	현 물 (기업 인력 참여)
스타트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중견기업	50%	30%	20%

※ 사업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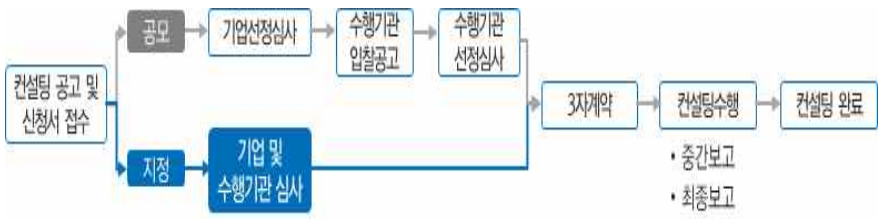

① **공고**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알림마당, 지식재산보호종합포탈(IP-NAVI)에 게시
② **신청** : IP-NAVI(www.ip-navi.or.kr)에서 신청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042) 481-3573 / 5925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 02) 2183-5871~5879

붙임

1. 자주 문의하는 서식 리스트 및 작성예제 175
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188
3. 특허청 지원기관 현황 195
4.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197
5. 주요 국가 특허청 인터넷 주소 198
6.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199
7.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201
8. 지원시책별 문의전화 안내 일람표 202
9. 출원·등록·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209

본 책자는 무료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01 붙임 자주 문의하는 서식 리스트 및 작성예제

1. 자주 문의하는 서식 리스트 및 기재요령

순번	서식명	법령별 서식번호	작성예제
1	명세서 등 보정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첨1
2	출원서 등 보정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첨2
3	도면 등 보정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첨3
4	기간연장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첨4
5	우선심사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서식]	별첨5
6	출원인 변경 신고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별첨6
7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첨7
8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별첨8
9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별첨9
10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별첨10

[별첨 1] 명세서 등 보정서

▶ 출원의 요약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보 정 서

【보정구분】 □ 출원서 등 보정(보완) ■ 명세서 등 보정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정정명세서 등 보정
【제출처】 □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10-2004-0012345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1-2004-000123-45
【보정(보충)할 서류】 특허출원서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청구항 5
【보정(보충)방법】 추가
【보정(보충)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기타사항】 □ 재심사청구 □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를 참조합니다)
【보정료】 14,000 원
(【추가심사청구료】 44,000 원)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 적용
【합계】 58,000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2호를 참조합니다)

[별첨 2] 출원서 등 보정서

▶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보정(보완)서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 상표견본의 보정 □ 시각적 표현의 보정
□ 수정정관(규약) 제출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절차보완

【제출처】 □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40-2004-0012345
(【출원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1-2004-000123-45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상표등록출원서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항목】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보정(보완, 보충)방법】 정정
【보정(보완, 보충)내용】
【보정 전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 제4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연극예약알선업, 학원경영업
【보정 후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 제4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미술학원경영업, 피아노학원경영업

(【그 밖의 사항】 □ 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보완)료】 14,000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1호 참조)

[별첨 3] 도면 등 보정서

▶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보정(절차보완)서

【보정 구분】 □ 출원서 등 보정 ■ 도면 등 보정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출원서 보완
【제출처】 □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30-2004-0012345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1-2004-000123-45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도면 1.1
【보정(보완, 보충)방법】 정정
【보정(보완, 보충)내용】

정정한 도면 1.1

(【그 밖의 사항】 □ 재심사청구 □ 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 (기재방법 제10호를 참조합니다)
【보정료】 14,000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12호를 참조합니다)

[별첨 4] 기간연장 신청서

▶ 특허청장 등이 정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신청구분】 ■ 지정기간연장 □ 지정기간단축
□ 디자인비밀기간연장 □ 디자인비밀기간단축
□ 법정기간연장 □ 기간경과구제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의 표시】

(【제출할 서류】) 보정서

(【접수(발송)번호】) 1-5-2004-000123-45

【연장이유(단축이유, 기간경과이유)】 출원인의 사정에 의함
또는 별지와 같음(구체적으로 적을 경우)

(【연장신청횟수】) 1회

【연장(비밀기간 단축)희망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 1월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 20,000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별첨 5] 우선심사 신청서

▶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음

[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구 분】 □ 심사청구 ■ 우선심사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 출원인 □ 제3자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16-0001234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전거용 표시램프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 ☒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
□ 선행기술조사의뢰된 출원으로 국가의 금융지원 등을 받은 녹색기술관련 특허출원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16. 4. 1.
(【국제특허분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기재요령 제6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심사청구료】 원)
(【우선심사신청료】 167,000 원) ☞ 실용신안등록출원인경우는 86,000원

【첨부서류】 1. 우선심사신청 설명서 1통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8호 참조

[별첨 6] 출원인 변경 신고

▶ 특허 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구 분】 ■ 출원인변경 □ 출원인지분변경 □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변경후 출원인(양수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성명(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4-2004-123456-1
【변경후】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변경원인】) 전부양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홍길동 (홍길동) 또는 서명

(【수수료】) 13,000 원 ☞ 상속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는 6,500원

【첨부서류】 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양도증 1통)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 양도증 작성의 예

【서류명】 양도증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취지】 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전부를 양도함
【양도일자】 2004.07.01
【양도인】
【성명】 홍길동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60101-1234567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양수인】
【성명】 김출원 (김출원)
(【주민등록번호】) 690102-1345678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00번지

2. 출원인변경 관련 구비서류

(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① 양도 - 양도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 등록한 인감날인. 출원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제출]

② 증여, 상속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③ 법인 분할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④ PCT 국제단계에서의 명의변경을 기초로 한 출원인변경 - 기록변경통지서

(2) 동의서

① 출원인중 일부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른 출원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별첨 7]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

▶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 인감. 전화번호 등(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영업소.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구 분】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 특허고객번호 정정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번호, 심판번호)】)

【변경(경정, 정정)내용】

(【변경(경정, 정정)항목】) 주소

【변경(경정, 정정)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변경(경정, 정정)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0번지

【변경(경정, 정정)원인】 이사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별첨 8]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 특허(등록)권의 전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대상권리】 ■ 특허(등록)권 □ 전용실시(사용)권 □ 통상실시(사용)권 □ 질권 □ 근질권
【신청구분】 ■ 전부이전 □ 일부이전 □ 지분전부이전 □ 지분일부이전
□ 분할이전 □ 분할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받을 지분】) (기재요령 제3호 라. 참조)

【등록의무자(양도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4-2004-123456-1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할 지분】) (기재요령 제4호 마. 참조)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10-0123456-00-00
(【권리의 표시】)
(【상품류, 서비스업류(디자인대상 물품)】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디자인 일련번호)】)

【등록원인】 전부양도

(【특약】)
(【가등록 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김출원	(대리인)	김출원 또는 서명
등록의무자	홍길동	(대리인)	홍길동 또는 서명
(대위신청인)		(대리인)	또는 서명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 변경된 등록권리자로 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만 작성
(【수령방법】) □전자문서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우편수령
(【수령인】)

【납부금액】(기재요령 제12호 참조)
【등록료】 53,000 원
(【등록세】) 21,600 원
(【인지세】) 20,000 원
(【특허(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합계】 94,600 원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4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서 오른쪽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

[별첨 9]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 상표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전액납부)

[별지 제23호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12134-5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번호】 40-0123456-00-00
【갱신등록 제외 대상】 ☞ 갱신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분류구분】 KR(NICE)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등록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분할납부 여부】 ■ 전액납부 □ 분할납부
【갱신등록료】 1개류 310,000 원
【등록세】 9,120 원
【합계】 319,120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첨부서류 및 견본】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서류명】)
(【출원번호(심판번호)】)

[별첨 10]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신청 구분】 ☐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전자문서) ☐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 특허(등록)증 재발급 ☐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 등록원부 발급 ☐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
☐ 자료열람 ☐ 자료복사 ☐ 서류등본(초본) 발급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특허청참조번호]】 10-0123456-00-00
【신청대상】 ☞ 특허(등록)증 발급인 경우 해당없음
【신청부수】 1부
(【신청이유】) 분실
(【수취방법】) 우편
(【수령인】) 김출원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 6,500 원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합니다)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0호를 참조합니다)

*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서 오른쪽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

02 붙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1. 전자출원(특허로) 서류작성 Tip

구 분		Tip
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	• 식별항목의 대항목과 소항목 사이에는 공백 또는 문자입력 불가 • 발명의 국문명칭 우측에 있는 { } 기호 안에 영문명칭 병기 • 【도】 항목 하단에 하나의 JPEG 또는 TIFF 형식의 도면 이미지만 입력
	디자인	• 디자인의 물품류(로카르노 분류) 필수 기재 • 【도면 1.1】...【도면 N.N】 순으로 식별항목 하단에 하나의 이미지만 삽입 • 입력 가능한 이미지 파일형식 : TIFF, JPEG, 3차원 모델링(3D), 동영상
	상표	• 상품류(NICE 분류)에 따라 제1류~제45류 중 해당하는 류 선택 기재 • 타인의 상표와 구분될 수 있는 상표견본을 A4용지에 작성 •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상표출원 가능
해외출원	PCT(특허)	• 출원언어가 국어인 경우 발명의 명칭은 국문만 입력 • 국내 선출원을 기반으로 우선권 주장에 의한 PCT 출원을 할 경우 지정국에서 '한국' 지정(자기지정) 제외 • 흑백 TIFF 형식의 이미지만 제출 가능
	헤이그(디자인)	• 국제출원서는 '영어'로만 기재 • 동일한 로카르노 분류 내에서 최대 100개까지 복수디자인 출원 가능(도면 개수 제한 없음) • 한국을 지정(자기지정)한 국제출원 가능(국내·국제출원 동시 진행)
	마드리드(상표)	• 표장은 반드시 JPEG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기초출원과 동일한 표장) • 상품(서비스)의 영문은 특허청 제공 '상품분류코드' 및 'WIPO'의 관련 사이트(https://webaccess.wipo.int/mgs)를 참고하여 작성

※ **관련 사이트 :** ① 특허로 : www.patent.go.kr ② 모바일 : www.patent.go.kr/smart

2. 키프리스 검색 Tip

구 분	Tip
특허·실용신안	•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이용하여 검색 시 동일한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문헌을 편리하게 검색 **① 키워드 입력** '(미세먼지+초미세먼지)*마스크'를 검색항목에 입력 ⇩ **② IPC 선택** **분류통계 메뉴에서 찾고자 하는 기술분야의 IPC 선택(예 : A62B)** ⇩ **③ 검색결과** **A62B와 관련된 특허문헌이 검색됨**
디자인	• 디자인 물품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세분화한 한국분류를 이용하면 검색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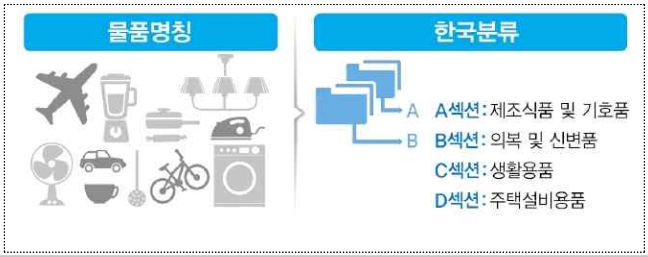
상표	• 상품명칭이 동일·유사한 경우라도 상품분류의 동일·유사 여부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상표명칭과 상품분류를 병행하여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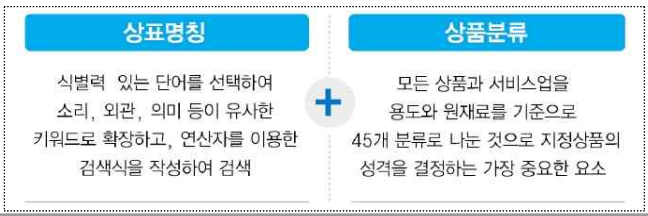

※ **관련 사이트 :** www.kipris.or.kr

3. 기타 제도별 유용한 정보

① 출원심사 청구기간

특허	**< 17. 3. 1. 이후 출원에 적용 >** •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특허법 제59조 제2항) • 특허출원이 분할·변경·이중출원인 경우 원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원출원일로부터 5년경과 후 분할/변경/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특허법 제59조 제3항, 구 특허법 제59조 제3항) • 국제특허출원의 국내특허진입시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17. 3. 1. 이전 출원에 적용 >** •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특허법 제59조 제2항) • 특허출원이 분할·변경·이중출원인 경우 원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 원출원일로부터 5년경과 후 분할/변경/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특허법 제59조 제3항, 구 특허법 제59조 제3항) • 국제특허출원의 국내특허진입시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실용신안	**< 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 •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실용신안법 제12조 제2항) • 실용신안출원이 분할·변경·이중출원인 경우 원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원출원일로부터 3년경과 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실용신안법 제12조 제3항) •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실용신안진입 시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② 보정기간

특허	**< 2001. 6. 30. 이전 특허출원 >** • 특허출원일, 우선권 주장의 최선일부터 1년3월 이내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 상기 1)의 해당일부터 1년3월을 경과한 후 특허결정등본의 송달 전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간(특허법 제47조) ① 출원심사의 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② 제3자로부터 출원심사청구가 있다는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③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지정기간) ④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 2001. 7. 1. 이후 2009. 6. 30 이전 특허출원 >**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특허법 제47조) ①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 (지정기간)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특허	**< 2009. 7. 1. 이후 특허출원 >**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특허법 제47조) ①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전(자진보정 기간),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지정기간, 통지보정 기간) ②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실용신안	**< 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 •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 (구 실용신안법 제13조 제1항, 구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9조) • 구 법 제12조(기초적요건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지정기간내 **< 2006. 10. 1. 이후 2009. 6.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 • 실용신안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의 기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실용신안법 제11조) ① 실용신안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지정기간) ②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2009. 7. 1. 이후 실용신안출원 >** • 특허법 준용
디자인	**< 2009. 6. 30. 이전 디자인출원 >** •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결정 또는 제26조 규정에 따른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통지서 송달전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5항) **< 2009. 7. 1. 이후 디자인출원 >** •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결정 또는 제62조 규정에 따른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통지서 송달전까지 가능 다만, 제64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보정 가능(디자인보호법 제48조)
상표	**<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상표법 제40조) >** • 출원공고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 때까지, 출원공고결정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가능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 **<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상표법 제41조) >** •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지정기간)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내(지정기간)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③ 변경출원 가능기간

특허·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 >** ※ 선출원이 2006. 10. 1이후출원에 적용 • 실용신안등록결정서 송달 후 설정등록료 납부 전 또는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53조) **<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 >** ※ 선출원이 2006. 10. 1이후출원에 적용 • 특허등록결젇서 송달 후 설정등록료 납부 전 또는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실용신안법 제10조)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출원대신 단독↔관련, 심사↔일부심사의 변경을 보정으로 진행
상표	•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상표법 제44조)

④ 분할출원 가능기간

특허	**< 2009. 7. 1. 이후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 •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특허법 제52조)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특허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
실용신안	**< 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 • 구법 제12조(기초적 요건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지정기간내 • 구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정 가능기간(출원일부터 2월)내(구 실용신안법 제16조) **< 2006. 10. 1. 이후 2009. 6.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 •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기간내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제48조에서 정한 보정기간내(디자인보호법 제50조)
상표	• 상표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한 보정기간내(상표법 제45조)

⑤ 출원공개 시점

특허·실용신안	• 특허출원일, 우선권 주장의 최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다만, 이 기간 전이라도 출원인이 신청한 때(특허법 제64조)(실용신안법 제15조)
디자인	•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 송달 전 출원인이 공개신청 한 때(디자인보호법 제52조)

⑥ 조기공개신청 취하가능기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⑦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관련 기간

특허·실용신안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기간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 (특허법 제54조 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 우선권 주장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특허법 제54조 제4항)(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상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기간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2항)(상표법 제46조 제2항)
	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 디자인(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상표법 제46조 제4항)

⑧ 등록료 납부기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정상납부기간 ※ 실용신안은 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특허법 제79조)(실용신안법 제16조)
	추가납부기간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기간경과 후 6월 이내에 추가납부 가능 (특허법 제81조)(실용신안법 제20조) ※ 정상납부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2개월 이내 6%, 3개월 이내 9%, 4개월 이내 12%, 5개월 이내 15%, 6개월 이내 18%의 가산료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
상표	•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월 이내 (상표법 제72조 제3항) ※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신청한 경우 1회 30일 연장(상표법 제74조)	

⑨ 존속기간

특허	• 특허권 설정등록 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특허법 제88조)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10년(실용신안법 제22조)
디자인	•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디자인출원일로부터 20년(디자인보호법 제91조)
상표	•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상표법 제83조 제1항), 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 가능

⑩ 기간의 연장

기간에는 지정기간과 법정기간이 있다. 지정기간은 출원 등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사관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기간을 말하고, 법정기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을 말한다.

가. 지정기간의 연장

구 분	기간연장 횟수			
특 허	방식심사		보정요구	• 4회 연장 (2008. 7. 1 이후 기간연장신청부터)
	실체심사		의견제출통지	• 4회 연장, 5회 이상 연장 시 소명필요
실용신안	방식심사		보정요구	• 4회 연장 (2008. 7. 1 이후 기간연장신청부터)
	선등록	기초적 요건심사	보정요구	• 1회 연장
		기술평가	의견제출통지	• 1회 연장 (정정불인정통지에 의한 보정기간도 1회 연장)
	실체심사		의견제출통지	• 4회 연장, 5회 이상 연장 시 소명필요
디자인	방식심사		보정요구	• 4회 연장 (2008. 7. 1 이후 기간연장신청부터)
	실체심사		의견제출통지	• 4회 연장
상 표	방식심사		보정요구	• 4회 연장 (2008. 7. 1 이후 기간연장신청부터)
	실체심사		의견제출통지	• 4회 연장

나. 법정기간의 연장

구 분	기 간		기간연장
이의신청이유 및 증거방법 보정기간	디자인일부심사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내자 1회 30일 • 재외자 1회 30일 2회 30일
	상표	이의신청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기간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특허·실용신안은 2007. 7. 1. 일 이후 이의신청 제도 폐지		
결정계 심판청구기간	거절(취소)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누구든지 30일 이내 연장승인		• 재내자 1회 30일 • 재외자 1회 30일 2회 30일
상표설정 등록기간	상표등록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1회(30일 이내)

03 붙임 특허청 지원 기관 현황

구 분	주요업무	주소 및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 지신재산 금융·사업화 • 특허기술거래평가 • 지역IP지원 • 국내발명 전시/행사 • 국제발명 전시/행사 • 학생 교원 전시/행사 • 미래형 발명인재 양성	• 주소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발명진흥회) • ☎ 02) 3459-2800 • FAX 02) 3459-2999 • 홈페이지 : www.kipa.org
한국특허정보원	• 지식재산정보 활용촉진 • 지식재산정보산업 육성/지원 • 특허행정 정보화 및 업무지원	• 주소 : [**본원**]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둔산동, KDB빌딩) [**서울지원**]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7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 02) 6915-1400 • FAX 02) 6915-1409 • 홈페이지 : www.kipi.or.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민간 R&D 전략지원 • 정부 R&D 전략지원 • 사업확산 전략지원 • 특허심사지원	• 주소 : [**본원**]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분원**] (0613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5 우신빌딩 8, 9층 • ☎ 02) 3287-4250(경영관리), 02) 3287-4350(사업정보) • FAX 02) 3287-4349 • 홈페이지 : www.kista.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 협력 및 교류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 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 주소 :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02) 2189-2600 • FAX 02) 2189-2694 • 홈페이지 : www.kiip.re.kr

구 분	주요업무	주소 및 문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 협력 및 교류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 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 주소 :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02) 2189-2600 • FAX 02) 2189-2694 • 홈페이지 : www.kiip.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 지식새산권보호 인식제고 • 국내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국제IP분쟁대응기반 구축 •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 K-브랜드 보호지원 •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 영업비밀 보호지원	• 주소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 02) 2183-5800 • FAX 02) 2183-5899 • 홈페이지 : www.koipa.re.kr
한국여성발명협회	• 여성발명창의교실 • 생활발명코리아 • 여성발명·기업인 사업화지원 • 발명정보 웹진발행	• 주소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 02) 538-2710 • FAX 02) 538-2714 • 홈페이지 : www.inventor.or.kr

04 붙임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센 터 명	운영기관	주 소	전 화
서울지식재산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3층	02) 2222-3860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032) 810-2882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031) 500-3043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031) 244-8321
부천지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070) 7094-5483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033) 749-3326
강원서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보듬관 403호	033) 264-6580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033) 552-4779
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033) 643-4413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043) 229-2732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043) 843-7005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 559-5746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	서산상공회의소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서림빌딩 4층	041) 663-0041
세종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402호	044) 998-1000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선화동), Doo-Station 15층	042) 251-2897
경북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33	054) 274-5533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054) 454-6613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054) 859-3093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055) 210-3085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5	055) 762-9411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053) 242-8079
부산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3층	051) 645-9683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052) 228-3087
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전북지부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 TP 벤처지원동	063) 252-9301
전남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 242-8587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7층	062) 954-3841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벤처마루 6층 603호	064) 755-2554

05 붙임

주요 국가 특허청 인터넷 주소

국 가	주 소
그리스	http://www.obi.gr
남아프리카공화국	http://www.cipc.co.za
뉴질랜드	http://www.iponz.govt.nz
덴마크	http://www.dkpto.dk
대만	http://www.tipo.gov.tw
독일	http://www.dpma.de
러시아	http://www.fips.ru
루마니아	http://www.osim.ro
말레이시아	http://www.myipo.gov.my
모나코	http://www.en.gouv.mc
모로코	http://www.ompic.org.ma
몽골	http://www.ipom.mn
미국	http://www.uspto.gov
벨기에	http://www.boip.int/en
브라질	http://www.inpi.gov.br
스웨덴	http://www.prv.se
스페인	http://www.oepm.es
스위스	http://www.ige.ch
싱가포르	http://www.ipos.gov.sg
걸프협력기구	http://www.gccpo.org
아일랜드	http://ie.espacenet.com
영국	http://www.ipo.gov.uk
유라시아	http://www.eapo.org
이탈리아	http://www.uibm.gov.it

06 붙임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기관(국가)	검색구분	주 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국제특허검색	http://patentscope.wipo.int/search/en/search.jsf
	국제상표검색	http://www.wipo.int/romarin
	디자인검색	http://www.wipo.int/designdb/hague/en/
미국 (USPTO)	특허검색	http://patft.uspto.gov/
	상표검색	https://www.uspto.gov/trademark
유럽 (EPO)	특허검색	http://worldwide.espacenet.com/?locale=en_EP
일본 (IPDL)	특허/상표/ 디자인 검색	https://www.j-platpat.inpit.go.jp
유럽지식재산청 (EUIPO)	상표검색	https://www.tmdn.org/tmview
	디자인검색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
호주 (AU)	특허검색	http://pericles.ipaustralia.gov.au/ols/auspat/
	상표검색	https://search.ipaustralia.gov.au/ trademarks/search
	디자인검색	http://pericles.ipaustralia.gov.au/adds2/adds.adds _simple_search.paint_simple_search
캐나다 (CA)	특허검색	http://ic.gc.ca/opic-cipo/cpd/eng/introduction.html
	상표/디자인 검색	http://www.ic.gc.ca/
중국	특허검색	http://211.157.104.77:8080/sipo_EN/search/tabSearch. do?method=int
	상표/디자인 검색	http://wsjs.saic.gov.cn
영국 (GB)	특허검색	http://www.ipo.gov.uk/types/patent/ p-os/p-find/p-ipsum.htm
	상표검색	https://trademarks.ipo.gov.uk/ipo-tmcase
	디자인검색	https://www.registered-design.service.gov.uk/find
홍콩	특허검색	http://ipsearch.ipd.gov.hk/patent/main.jsp?LANG=en
	상표검색	http://ipsearch.ipd.gov.hk/trademark/jsp/main.jsp

기관(국가)	검색구분	주 소
독일 (DE)	특허검색	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pat/uebersicht
	상표검색	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marke/uebersicht
	디자인검색	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gsm/uebersicht
뉴질랜드	특허검색	http://www.iponz.govt.nz/app/Extra/Default.aspx?sid=635296415025624841
	상표검색	http://www.iponz.govt.nz/app/Extra/Default.aspx?sid=635296414944036841
	디자인검색	http://www.iponz.govt.nz/app/Extra/Default.aspx?sid=635296414856832841
필리핀	특허검색	http://121.58.254.45/ipophilsearch/patentsearch.aspx
	상표검색	http://www.wipo.int/branddb/ph/en/
러시아	특허/상표/디자인 검색	http://www.rupto.ru/rupto/portal/96bb3146-3081-11e1-351c-9c8e9921fb2c?lang=en
덴마크	특허검색	http://onlineweb.dkpto.dk/pvsonline/Patent
	상표검색	http://onlineweb.dkpto.dk/pvsonline/Varemaerke
	디자인검색	http://onlineweb.dkpto.dk/pvsonline/Design
Thomson Reuters	MicroPatent	http://www.micropat.com/static/index.htm

07 붙임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기 관	주 소
특허청	http://www.kipo.go.kr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한국특허전략개발원	http://www.kista.re.kr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http://www.kaips.or.kr
국제지재권 분쟁정보포털	http://www.ip-navi.or.kr
영업비밀 보호센터	http://www.tradesecret.or.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www.koipa.re.kr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http://www.pcc.or.kr
표준특허센터	http://www.epcenter.or.kr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i.or.kr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http://www.pipc.or.kr
한국여성발명협회	http://www.inventor.or.kr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특허정보 활용서비스	http://plus.kipris.or.kr
지식재산능력시험	http://www.ipat.or.kr
직무발명제도	http://www.kipa.org/ip-job/index.jsp
디자인 맵	http://www.designmap.or.kr
IP-Market(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http://www.ipmarket.or.kr
지역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
D2B 디자인페어	http://www.d2bfair.or.kr
IP 캠퍼스	http://www.ipcampus.kr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http://www.ipacademy.net
한국반도체산업협회	http://www.ksia.or.kr
반도체설계재산유통센터	http://www.kipex.or.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www.kiip.re.kr

08 붙임 지원시책별 문의전화 안내 일람표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종합상담		특허넷 시스템 이용방법 및 오류조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절차 등 특허행정 전분야에 대한 상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지식재산창출	IP디딤돌 프로그램	개인 및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되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프로그램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8660 481-8653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38 3459-2860
	IP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 및 전환창업 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 지원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862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33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해외 수출(예정)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IP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산업재산권 획득, 맞춤형 특허맵,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등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3년간 지식재산 서비스 종합지원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5171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27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비용 지불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866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협력팀	02) 3475-133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중소기업이 R&D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현장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8184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02) 3287-4339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사업	업종별·분야별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애로기술에 대한 특허전략 지원을 통해 분야별 중소기업군 전체의 IP 경쟁력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8184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군성장팀	02) 3287-4268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특허 중심의 디자인·브랜드·서비스 융합개발을 통해 우리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R&D 전략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8184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창출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517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02) 3475-8560 3475-8553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사업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지재권 중심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지원하여 정부 R&D 특허성과 제고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8562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사업	미활용특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학·공공(연)이 활용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8499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정부 R&D 연구기획 및 단계평가 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분석을 통해 효율적 연구기획 및 R&D 예산의 중복적 투자를 방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856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동향팀	02) 3287-4303
	IP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	IP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IP서비스가 출시되도록 민간 IP정보서비스의 R&D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 481-5175
	생활발명코리아	창의적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을 발굴하고 출원·디자인·시제품제작 지원하여 지식재산 기반 여성창업 촉진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8498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02) 538-2710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GIFT) 제도	IP정보 서비스 분야 상품 개발에 필요한 IP데이터를 창업형 및 성장형으로 구분하여 최대 5년까지 무상 제공	특허청 정보관리과	042) 481-5121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팀	02) 6915-1508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서비스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5171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22
지식재산활용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제품의 품질 및 기술적 난제, 신제품 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에 대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	042) 481-5566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 지원실	02) 3459-2937 3459-2943
	지식재산 거래 지원	특허기술 도입 등 지식재산(IP)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에 특허거래전문관이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허거래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민간 중심의 IP 거래 활성화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 481-3478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	02) 3459-2882 3459-2896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활용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현물출자 등을 위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 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953
	아이디어 거래 지원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은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검토 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제공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	042) 481-8233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발명품을 특허청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판로개척 지원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	042) 481-5566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814
	지식재산서비스기업 해외시장 수요 창출 지원	지식재산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및 수요창출을 위해 해외 유명 IP전시회 등 국제 행사에 홍보부스 운영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 481-5175
			한국지식재산 서비스협회	02) 3789-0606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지원	수요기업이 있는 발명 및 우수 발명을 선별하여 출원하도록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화 유망특허는 기술이전까지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346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 3475-1304
	제품단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품별로 특허를 묶거나(포트폴리오) 기술 및 상용화 검증을 하여 기업에 효율적으로 특허를 이전하도록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517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 3475-8582
	특허갭펀드 조성 지원	대학·공공(연)이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인 특허갭펀드를 조성하도록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517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 3475-8582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517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성과팀	02) 3475-8546
지식재산보호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사업	대국민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영업비밀·기술 탈취 피해를 예방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 481-5961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보호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사업	해외 9개국 1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IP-DESK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에 기여하고, IP-DESK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 481-5992
			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실	02) 3460-3359 3460-3357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사업	중국・ASEAN 등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지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 481-599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02) 2183-5896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사업	해외 진출(준비)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대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 해결지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 481-521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	02) 2183-5898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우리기업에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제고 및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 481-357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02) 2183-5870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수출(예정) 콘텐츠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 481-596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문화팀	02) 2183-588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 481-5925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
지식재산금융	지식재산공제	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자금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 481-5309
			지식재산공제 안내 콜센터	1544-1120
	IP 담보대출 회수지원	중소기업에 대해 IP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채무불이행 발생시, 회수전문기관이 은행이 보유하게 된 부실 담보IP를 매입하여 은행의 손실을 경감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 481-8639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936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IP를 기반으로 보증·담보대출·투자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 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938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교육 · 컨설팅	지식재산(IP) 스마트교육 사업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사이트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무료로 제공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042) 601-4311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실	02) 3459-2765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대학의 자율적인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 481-3572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 3459-2804
	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	지자체-지역 대학-기업이 협력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지역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 481-8746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 3459-2818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통해 새로운 산업 흐름을 이끌어 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 481-5456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 3459-2835
	지식재산서비스기업 채용 연계 교육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기업체로의 채용연계교육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 481-5175
			한국지식재산 서비스협회	02) 3789-0607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창의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청소년을 선발하여 지식재산과 기업가정신 등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 481-8620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02) 3459-2756
	발명교육센터	전국 206개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까지 발명교육을 확산하고,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청소년에게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 481-8620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02) 3459-2747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산업현장의 현안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개선·권리화·기술이전하는 과정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원하는 예비 기술전문가로서의 성장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 481-8620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02) 3459-2749
	특허경영전문가 운영	특허경영전문가를 대학・공공연에서 파견 또는 운영지원하여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 지식재산전담부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함으로써 대학・공공연의 전반적인 지식재산 역량 수준을 제고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 481-346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 3475-1304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교육·컨설팅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계획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상규정 마련 및 운영상의 애로 해소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 481-3555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 3459-2847 3459-2793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식재산 분야에 재능을 가진 개인, 기업 또는 단체가 소기업, 예비창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845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25
	특허지원 상담창구 운영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전반에 대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대상으로 지식재산 애로 해결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8660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22 3459-2838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재권 권리 확보에서 분쟁대응에 이르는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 481-5085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 6006-4300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산업재산권의 활용 확산과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방법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 제공	특허청 정보시스템과	042) 481-5718
			한국특허정보원 정보인프라팀	02) 6915-1552
지식재산관련행사	발명의 날 행사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과 발명가의 사기앙양을 위해 측우기를 발명한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 등 발명행사를 개최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8496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950 3459-279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우수 지식재산 관련 제품·기술의 유통을 촉진하고, 최신 기술 동향 공유를 통한 지식재산의 대국민 인식제고 추진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8496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950 3459-2793
	IP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	IP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대회로 우수팀 시상, 데이터 무상제공,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등에 추천	특허청 정보관리과	042) 481-5121
			한국특허정보원	02) 6915-1495 6915-1508
	D2B (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젊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권리화·사업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기업 등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공급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 481-3572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산업계에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 481-3572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 3459-2813

분야		사업 개요	부서명	전화번호
지식재산 관련 행사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학생들의 발명아이디어를 발굴·시상하여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 481-8620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실	02) 3459-2752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발명인재의 발굴 및 시상을 통해 학생 발명문화 확산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 481-8620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실	02) 3459-2753
	특허기술상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발명을 발굴하고 발명자에게 시상하여 수상발명의 사업화를 지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 481-5402
기타 지원제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 481-3555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 3459-2847 3459-2793
	지식재산 경영인증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성 제고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8653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 3459-2829
	수수료 감면제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70% 감면, 4년차 ~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50% 감면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 481-5587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및 직무발명 확산을 위한 세제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 481-5175
	특허심판-국선대리인 제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특허청 심판정책과	042) 481-5583
	산업재산권 등록마크 발급	제품에 적용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사항 및 상세내용을 QR코드가 결합된 마크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	042) 481-8233

09 붙임 출원·등록·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1. 출원

① 권리별 출원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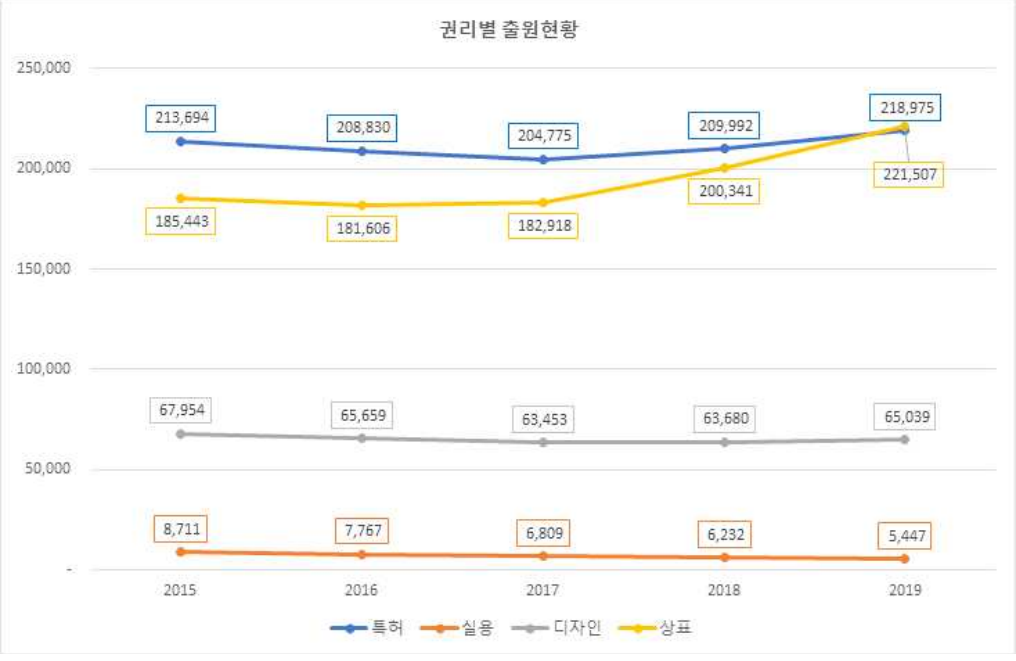

② 출원인 국적별 출원현황('19)

(단위: 건)

국 가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미국(US)	13,111	46	1,491	6,925	**21,573**
일본(JP)	14,990	30	1,087	3,858	**19,965**
중국(CN)	3,723	173	885	7,643	**12,424**
독일(DE)	4,222	11	223	1,972	**6,428**
한국(KR)	171,603	4,975	59,946	190,201	**426,725**
기 타	11,326	212	1,407	10,908	**23,853**

※ 국제특허, 상표, 디자인(지정관청, 지정국 기준) 출원건수 포함

③ PCT 국제출원 현황

가. 수리관청

(단위: 건)

구 분	국 어	영 어	일 본
2015년	12,522	2,070	2
2016년	13,760	1,832	3
2017년	14,131	1,659	0
2018년	15,086	1,904	1
2019년	166,640	2,245	0

나. 지정관청

(단위: 건)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계
2015년	37,170	56	**37,226**
2016년	37,093	65	**37,158**
2017년	37,248	77	**37,325**
2018년	38,239	101	**38,340**
2019년	39,021	94	**39,115**

④ 주요국 PCT 국제출원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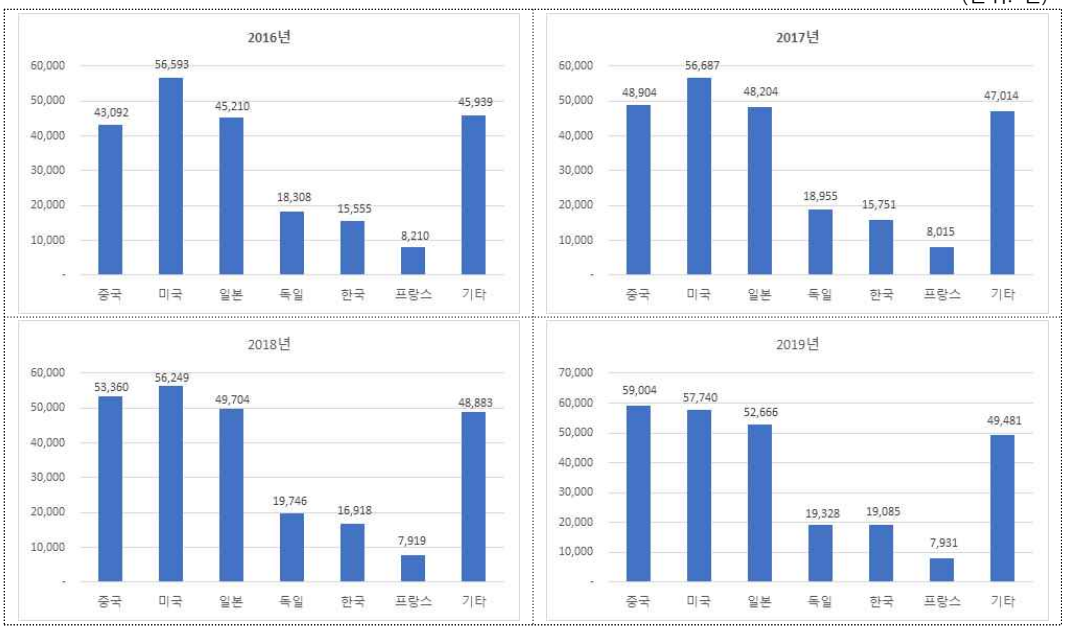

※ 출처 : WIPO Statistics Data Center

2. 등록

① 권리별 등록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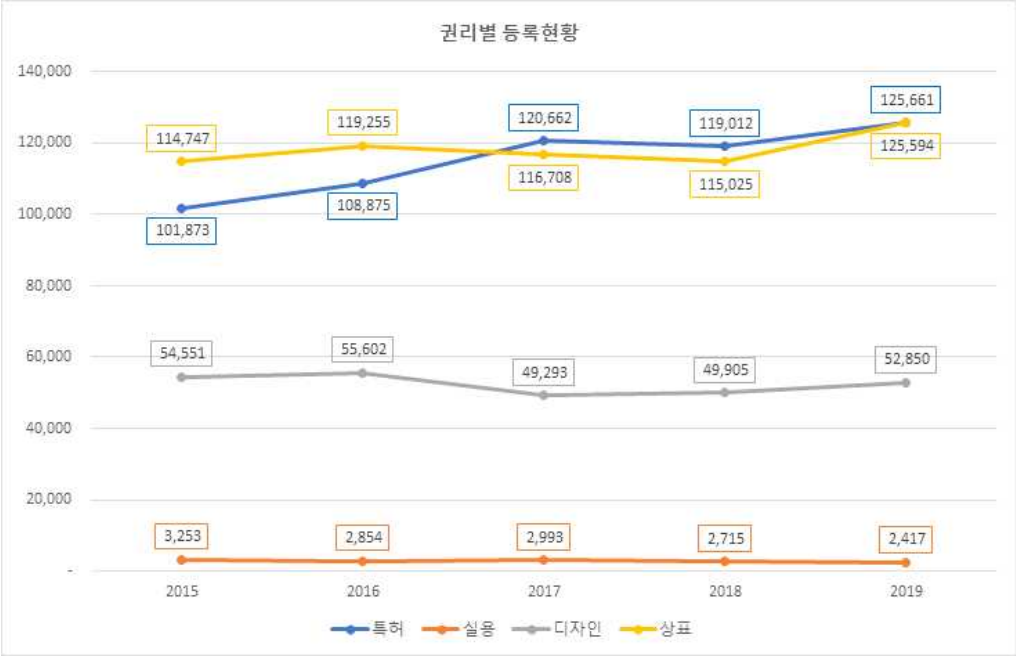

② 권리자 국적별 등록현황('19)

(단위: 건)

국 가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미국(US)	8,171	30	2,059	5,388	**15,648**
일본(JP)	11,351	14	1,553	3,137	**16,055**
중국(CN)	2,032	34	793	4,687	**7,546**
독일(DE)	2,858	3	558	1,827	**5,246**
한국(KR)	94,852	2,238	46,011	102,333	**245,434**
기 타	6,397	98	1,876	8,222	**16,593**

3. 심사

① 연도별 특허 심사청구 현황

출원연도 및 출원건수	심사청구연도 및 심사청구건수							출원연도별 심사청구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3년 204,589	125,393	5,333	3,625	10,315	8,170	20,646	-	173,482
	(61.3%)	(2.6%)	(1.8%)	(5.0%)	(4.0%)	(10.1%)	-	(84.8%)
'14년 210,292	-	130,327	5,586	2,996	11,493	8,310	19,636	178,348
	-	(62.0%)	(2.7%)	(1.4%)	(5.5%)	(4.0%)	(9.3%)	(84.8%)
'15년 213,694	-	-	132,625	4,499	3,676	11,830	9,122	161,752
	-	-	(62.1%)	(2.1%)	(1.7%)	(5.5%)	(4.3%)	(75.7%)
'16년 208,830	-	-	-	130,962	4,525	4,859	10,828	151,174
	-	-	-	(62.7%)	(2.2%)	(2.3%)	(5.2%)	(72.4%)
'17년 204,775	-	-	-	-	127,442	5,084	5,279	137,805
	-	-	-	-	(62.2%)	(2.5%)	(2.6%)	(67.3%)
'18년 209,992	-	-	-	-	-	129,951	5,688	135,639
	-	-	-	-	-	(61.9%)	(2.7%)	(64.6%)
'19년 218,975	-	-	-	-	-	-	133,263	133,263
	-	-	-	-	-	-	(60.9%)	(60.9%)

② 주요국 특허심사 처리기간('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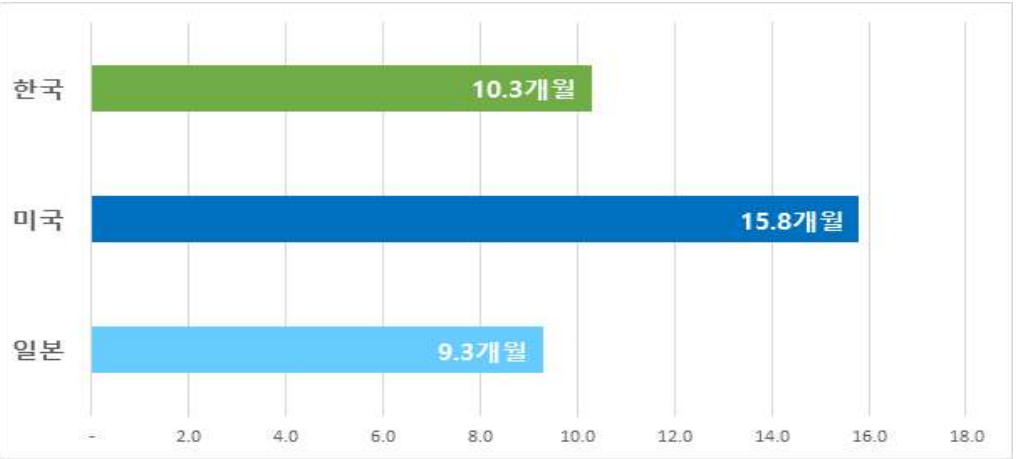

③ 우리나라 심사처리기간 추이

(단위: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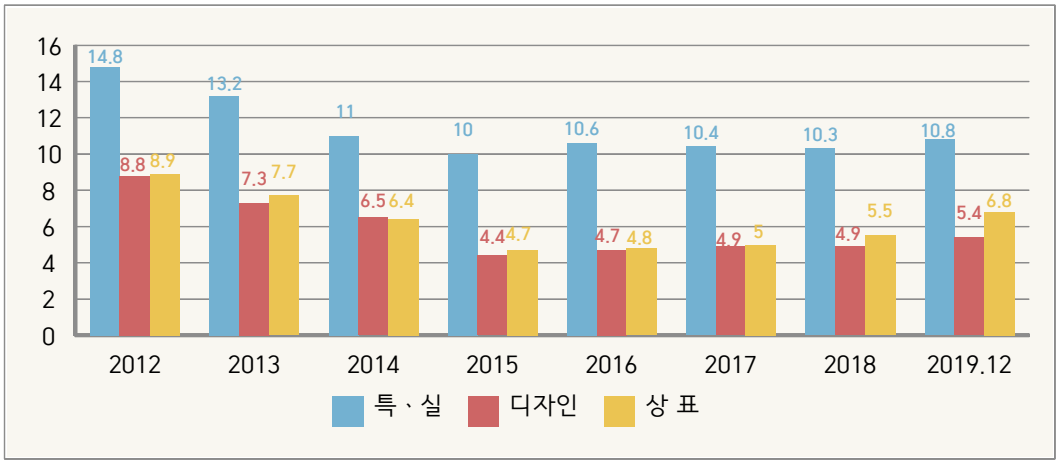

4. 심판

① 심판청구 현황

2017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합 계
특 허	4,597	1,201	**5,798**
실용신안	185	56	**241**
디자인	92	330	**422**
상표	1,569	2,647	**4,216**
소계	**6,443**	**4,234**	**10,677**

2018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합 계
특 허	3,903	973	**4,876**
실용신안	166	41	**207**
디자인	103	375	**478**
상표	1,437	3,153	**4,590**
소계	**5,609**	**4,542**	**10,151**

2019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합 계
특 허	3,121	826	**3,947**
실용신안	131	36	**167**
디자인	61	351	**412**
상표	1,333	3,149	**4,482**
소계	**4,646**	**4,362**	**9,008**

② 심판처리 현황

2017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기 타	합 계
특 허	3,561	1,333	379	**5,273**
실용신안	127	82	4	**213**
디자인	136	390	11	**537**
상표	1,105	3,120	60	**4,285**
소계	**4,929**	**4,925**	**454**	**10,308**

2018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기 타	합 계
특 허	4,407	1,124	177	**5,708**
실용신안	195	54	2	**251**
디자인	102	412	28	**542**
상표	1,759	2,493	179	**4,431**
소계	**6,463**	**4,083**	**386**	**10,932**

2019년				(단위: 건)
구 분	결정계	당사자계	기 타	합 계
특 허	5,453	1,222	149	**6,824**
실용신안	198	45	1	**244**
디자인	83	294	9	**386**
상표	1,842	3,721	97	**5,660**
소계	**7,576**	**5,282**	**256**	**13,11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발행일 | 2020년 9월
발행인 | 특허청장 김용래
발행처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 481-5225
FAX. (042) 472-3460